

발 간 등 록 번 호

11-1192000-001259-14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 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역 -

2020. 2.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해양수산부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역-

2020. 2.



해양수산부

목 차 ●●●

제1장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2. 목적 및 성격	4
1) 계획의 목적	4
2) 계획의 성격	4
3. 범위	5
1) 시간적 범위	5
2) 내용적 범위	5
3) 공간적 범위	6
4. 수립 절차	7
제2장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 방향	11
1. 환경적·생태적 특성	11
1) 조석 및 조류	11
2) 해안선	12
3) 유·무인도서	13
4) 연안습지	14
5) 연안·해양보호구역	14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21
1) 인구	21
2) 사업체수	22
3) 수산	24
4) 광업권	29
5) 해양관광	29
6) 항만·항행	33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44
1) 분석 개요	44
2) 분야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47

4. 해양공간관리 현안	66
1) 일반주민 설문조사	66
2) 해양공간관리 현안	76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78
제3장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83
1. 해양공간특성평가	83
1)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요	83
2) 기초자료 조사·수집	85
3) 평가항목	87
4) 해양공간특성평가	89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96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10
1) 어업활동보호구역	112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18
3) 해양관광구역	121
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125
5) 연구·교육보전구역	130
6) 항만·항행구역	132
7) 군사활동구역	137
8) 안전관리구역	139
9) 에너지개발구역	141
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45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145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149
1)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업무협의회('18.4.17~18.)	149
2)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협의회('18.5.18.)	149
3)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18.8.10.)	150
4)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18.11.1.)	151
5)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8.11.30.)	152
6)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제도 설명회 및 지역협의회('19.5.14.)	152
7) 2019년 제1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8.6.)	153
8) 2019년 제2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9.4.)	153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154
1)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154
2) 해양공간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156
부록 : 1. 부산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수요	161
2.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165
3. 부산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175
4. 부산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176
1)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업무협의회('18.4.17~18.)	176
2)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협의회('18.5.18.)	177
3)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18.8.10.)	179
4)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18.11.1.)	180
5)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8.11.30.)	186
6)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설명회('19.5.14.)	187
7) 2019년 제1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8.6.)	189
8) 2019년 제2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9.)	191
9)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관련 공청회 개최('19.10.)	191
5. 공청회 결과	193
6. 관계기관 의견조회('19.10.16.~11.27.)	200

표 목 차

〈표 2-1〉 부산광역시 해안선 길이(2014년)	12
〈표 2-2〉 부산광역시 자연·인공 해안선 길이 현황(2014년)	12
〈표 2-3〉 부산광역시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	13
〈표 2-4〉 부산광역시 절대보전 무인도서 현황	13
〈표 2-5〉 부산광역시 연안습지 면적 변화	14
〈표 2-6〉 부산광역시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14
〈표 2-7〉 부산광역시 특정도서 지정 현황	15
〈표 2-8〉 부산 해역의 해양환경(WQI, COD, DO, TN, TP) 현황	20
〈표 2-9〉 부산연안 인구 수(명)	21
〈표 2-10〉 부산연안 사업체 현황	23
〈표 2-11〉 부산연안 면허어업현황(면적)	26
〈표 2-12〉 부산 국가 및 지방 어항 현황	27
〈표 2-13〉 부산 어촌정주어항 현황	27
〈표 2-14〉 부산 미지정 소규모 어항	27
〈표 2-15〉 부산연안 인공어초 설치현황	28
〈표 2-16〉 부산 해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	28
〈표 2-17〉 부산연안 채굴권 설정 현황	29
〈표 2-18〉 부산 해수욕장 2017년 방문객 수	29
〈표 2-19〉 부산연안 연안 및 해양 관광객 현황	30
〈표 2-20〉 부산 운영 중인 마리나 항만	31
〈표 2-21〉 부산연안 마리나항만 개발 및 예정구역	31
〈표 2-22〉 부산연안 어촌체험마을 현황	32
〈표 2-23〉 부산연안 유어장 현황	32
〈표 2-24〉 부산연안 해안누리길 현황	32
〈표 2-25〉 부산항 현황	33
〈표 2-26〉 부산남항 현황	33
〈표 2-27〉 부산항 화물 입출항 추이	33
〈표 2-28〉 부산항 선박 입출항 추이	34
〈표 2-29〉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실적	34
〈표 2-30〉 부산항 및 부산남항의 비전 및 목표	35
〈표 2-31〉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개요	39

〈표 2-32〉 해군훈련구역 및 해양경찰청훈련구역 지정 개요	40
〈표 2-33〉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41
〈표 2-34〉 부산지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현황	43
〈표 2-35〉 부산지역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현황	43
〈표 2-36〉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연안·해양 이용·개발 관련 주요 계획	44
〈표 2-37〉 부산 연안·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45
〈표 2-38〉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지정 현황	47
〈표 2-39〉 부산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58
〈표 2-40〉 부산연안 해역이용협의 실적 현황	59
〈표 2-41〉 부산연안에 위치하는 항만개발수요	59
〈표 2-42〉 어항 개발	61
〈표 2-43〉 부산연안 해양관광 및 레저 개발계획	61
〈표 2-44〉 부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	62
〈표 2-45〉 해양환경 보호 및 복원 수요 상세 현황	63
〈표 2-46〉 해양활동 간 상충 매트릭스 : 지역주민	71
〈표 2-47〉 해양활동 간 상충 매트릭스 : 공무원	72
〈표 3-1〉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목록	85
〈표 3-2〉 특성평가 평가항목	87
〈표 3-3〉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98
〈표 3-4〉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	98
〈표 3-5〉 「해양공간계획법」의 해양용도구역과 「연안관리법」의 연안해역기능구 비교	102
〈표 3-6〉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시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경과조치	102
〈표 3-7〉 항만·항행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03
〈표 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05
〈표 3-9〉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06
〈표 3-10〉 해양관광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07
〈표 3-1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07
〈표 3-12〉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110
〈표 3-13〉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의 우선순위	117
〈표 3-14〉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120
〈표 3-15〉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124
〈표 3-16〉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129
〈표 3-17〉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136
〈표 4-1〉 부산 및 경남 지역협의회 1차 구성(안)(2018)	147

〈표 4-2〉 부산 및 경남 지역협의회 2차 구성(안)(2018)	147
〈표 4-3〉 부산 및 경남 지역협의회 최종 구성(2019)	148
〈표 4-4〉 부산시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149
〈표 4-5〉 경상남도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149
〈표 4-6〉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 협의회 주요내용	150
〈표 4-7〉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 주요내용	150
〈표 4-8〉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 주요내용	151
〈표 4-9〉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 주요내용	152
〈표 4-10〉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제도 설명회 및 지역협의회	152
〈표 4-11〉 2019년 제1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153
〈표 4-12〉 2019년 제2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153
〈표 4-13〉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	156
〈표 4-14〉 자체평가 보고서의 목차	157
〈부록표 1-1〉 부산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162
〈부록표 1-2〉 부산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해역)	164
〈부록표 3-1〉 2019년도 부산 지역협의회 위원	175

그림 목 차

<그림 1-1>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범위 6

<그림 1-2> 관리계획 초안 작성 및 수립 절차 7

<그림 2-1> 낙동강 하구 일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15

<그림 2-2> 남해안 일부해역의 조간대 및 조하대 Taxonomic distinctness index($\Delta+$) 현황
(법정자료 및 해역이용협의 취합자료) 18

<그림 2-3> 핵심공간의 해양생태등급 현황 18

<그림 2-4> 부산 연안 인구 현황 및 변화 22

<그림 2-5> 부산 어업생산량 변화 24

<그림 2-6> 고등어 어획량 분포 및 집중 해역 25

<그림 2-7> 어업권 현황 비교 26

<그림 2-8> 해운대구 송정 및 해운대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지정 현황 30

<그림 2-9> 부산항 계획도 37

<그림 2-10> 부산남항 계획평면도 38

<그림 2-11> 부산 해역 지정항로 현황 39

<그림 2-12> 부산 해역 해상사격 훈련구역 분포 40

<그림 2-13> 부산연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현황 41

<그림 2-14> 부산연안 안전관리 필요 해역 42

<그림 2-15> 부산 해역 화물선·탱커선 밀집도 42

<그림 2-16> 부산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위치 46

<그림 2-17> 부산광역시 연안용도해역 지정 현황 48

<그림 2-18> 부산광역시 연안해역기능구 지정 53

<그림 2-19> 부산연안 공유수면 매립수요 현황 58

<그림 2-20> 항만별 개발계획도 60

<그림 2-21> 부산항 신항만 건설 개요 60

<그림 2-22> 부산 해상 풍력발전단지 위치 62

<그림 2-23> 부산 해역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64

<그림 2-24>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좌)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우) 64

<그림 2-25> 낙동강 하굿둑 현황 65

<그림 2-26> 지역 주민 및 공무원의 거주 만족도, 부산 바다 이용현황 67

<그림 2-27> 부산 바다 고유 자원 및 바다공간 혜택 인식도 67

〈그림 2-28〉 부산 바다와의 유대감 및 이용·개발을 통한 생태계 변화 의견	68
〈그림 2-29〉 지역주민 및 공무원에게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68
〈그림 2-30〉 10년전 대비 바다이용 및 복잡화 정도 변화	69
〈그림 2-31〉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지역주민	70
〈그림 2-32〉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공무원	70
〈그림 2-33〉 해양공간계획제도 인지 여부 및 갈등 해결 기여 여부	72
〈그림 2-34〉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 위한 필요요소 중요도	73
〈그림 2-35〉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가치	73
〈그림 2-36〉 10년전 대비 부산 바다 이용활동 갈등 변화 정도 및 향후 해양공간 관리 의견	74
〈그림 2-37〉 부산 바다 향후 지향 발전 양상 및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 현안	75
〈그림 2-38〉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 위한 우선 해결 현안	75
〈그림 2-39〉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 도출 과정	78
〈그림 3-1〉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및 방법	83
〈그림 3-2〉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84
〈그림 3-3〉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89
〈그림 3-4〉 일반격자(영해내측: 3'×3', 영해외측: 15'×15')만 적용한 격자 구성	89
〈그림 3-5〉 특성평가를 위한 GIS 분석 과정	90
〈그림 3-6〉 부산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 결과	91
〈그림 3-7〉 부산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91
〈그림 3-8〉 부산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92
〈그림 3-9〉 부산 연구·교육보전구역 특성평가 결과	92
〈그림 3-10〉 부산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 결과	93
〈그림 3-11〉 부산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 결과	93
〈그림 3-12〉 부산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94
〈그림 3-13〉 부산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94
〈그림 3-14〉 부산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 결과	95
〈그림 3-15〉 해양활동 별 보전·이용·개발 특성 개념도	96
〈그림 3-16〉 해양용도구역 지정 절차	101
〈그림 3-17〉 용도구역별 1:1 공간분석을 통한 중첩 공간	108
〈그림 3-18〉 용도구역별 관리구역 도출 결과	109
〈그림 3-19〉 부산 해양용도구역 내 관리구역 현황	111
〈그림 3-20〉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현황	116
〈그림 3-2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분포	119
〈그림 3-22〉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분포	124
〈그림 3-23〉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분포	128

〈그림 3-24〉 GICOMS 데이터를 활용한 화물선 및 탱크선 밀집 공간 133

〈그림 3-25〉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분포 135

〈그림 4-1〉 부산·경남 지역협의회 추진 일정 146

〈그림 4-2〉 현장답사 코스 151

〈부록그림 4-1〉 경상남도 해양수산물 업무협의회('18.4.18) 177

〈부록그림 4-2〉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협의회('18.5.18) 178

〈부록그림 4-3〉 부산경남지역 제2차 사전협의회('18.8.10.) 180

〈부록그림 4-4〉 현장답사 코스 182

〈부록그림 4-5〉 오륙도 전경(좌)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지역(우) 182

〈부록그림 4-6〉 광안대교 전경(좌) 및 수영만요트경기장지구(우) 183

〈부록그림 4-7〉 가덕도 북측 신항만 건설 예정지 현황 및 계획도 183

〈부록그림 4-8〉 진동만 해역 전경 184

〈부록그림 4-9〉 부산 남외항 선박 운항·묘박 해역 184

〈부록그림 4-10〉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 185



제1장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및 성격
3. 범위
4. 수립 절차



제1장 /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양 이용개발의 다양화, 부처별 해양공간 선점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해양생태계 가치저하 및 이용-보전 간, 이용 간 갈등 심화
 - 해양자원은 공유재로 비합리적 입지선정은 타분야 활용 가능성 훼손
 - 바다골재 채취와 어민과 갈등, 선박 통행과 양식해양에너지 단지조성으로 어장 축소, 양식어장과 선박 운항 간 갈등, 어로활동과 해양레저 활동 간 충돌 등 해양공간 이용의 갈등 광범위
- 해양생태계의 가치, 개발잠재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핵심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 설정하는 실효적 계획체제 도입 필요
 - '17년 EU 해양수산국과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는 Marine Spatial Planning(이하 "MSP")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MSP 목표(전 세계 해양의 1/3, 2025년까지 MSP를 통해 관리)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 우리나라도 '18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계획체제를 도입·시행
- 「해양공간계획법」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공간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명시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관리함.
 - 해양수산부 장관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시·도지사 : 그 외 해양공간(영해 내)
 - 다만, 법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5조)

-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용도구역제 등 해양공간의 객관적 평가 수단 도입 및 적용 필요
 - 해양용도구역제 도입으로 해양공간의 용도를 미리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의 핵심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보호
 -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목적 및 성격

1) 계획의 목적

- 해양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개발·보전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
- 해역의 특성과 다양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현재 활동 및 미래 수요에 맞는 계획의 수립
-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민·관·산·학·연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 및 참여의 장 마련

2) 계획의 성격

- 법정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해양공간의 체계적·통합적 보전 및 이용·개발하기 위한 법정계획임.
- 실천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용도구역을 결정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실천계획임.
- 협력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민·관·산·학·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협력계획임.

3. 범위

1)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적용 :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수시 변경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여건 변화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
 - 향후 발생하는 해양공간에 대한 보전 및 이용·개발에 대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
 - * 「해양공간계획법」제7조제7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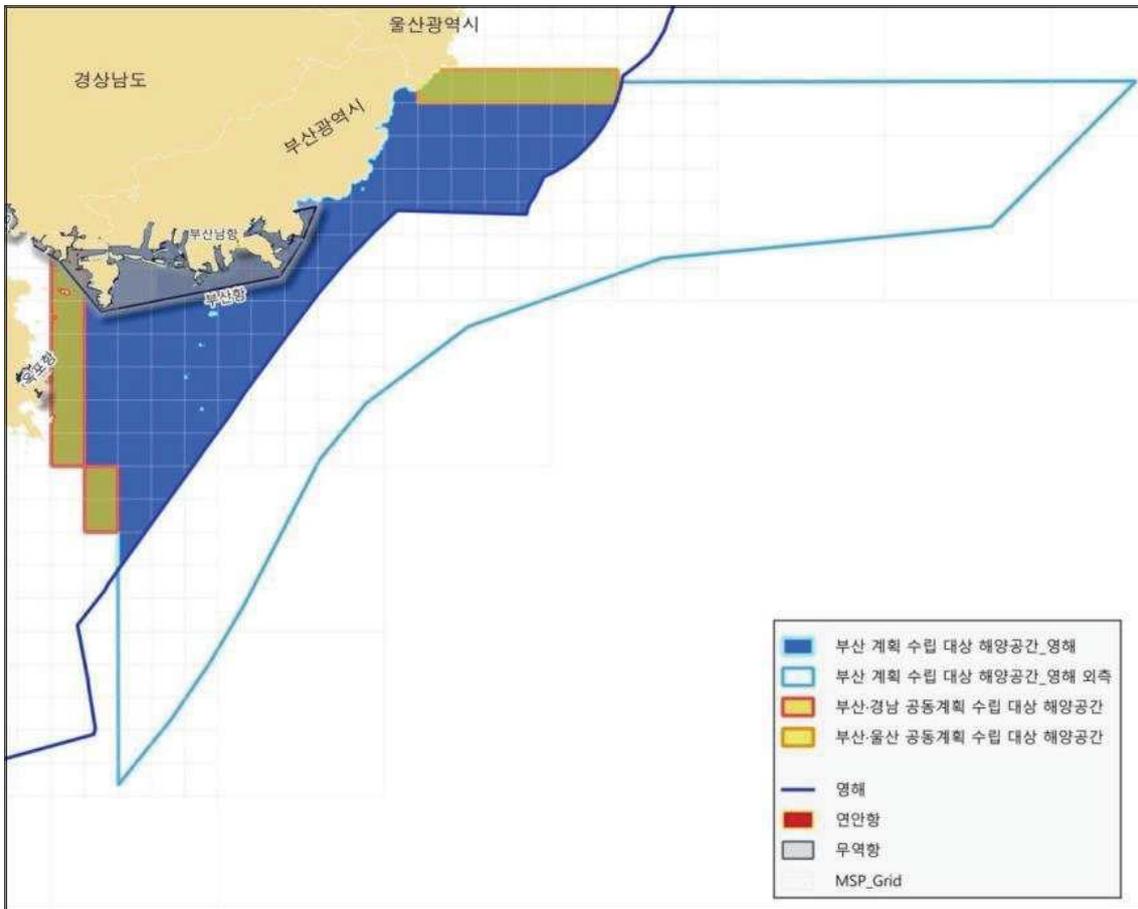
2) 내용적 범위

-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이하, 대상 해양공간)
-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3항
 -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3) 공간적 범위

- 대상 해양공간의 면적은 5,526.44km²(영해 2,361.54km², EEZ 3,164.90km²)임.
 - 영해 중 항만구역 내 면적은 409.88km²이고, 항만구역 외 면적은 1,951.66km²임.
 - * EEZ, 대륙붕, 항만구역 등 대한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변경하고, 그 외 해양공간(영해 내)은 시·도지사가 수립·변경(「해양공간계획법」 제7조)
- 대상 해양공간의 서-북측 경계는 3분 단위 격자*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해안선에서 영해까지의 해역임.
 - * 해양공간 분할은 국립해양조사원의 계층화된 정방형 격자에 기반(3분, 약 5.5km)
- 대상 해양공간이 인접한 시·도에서 관할하는 해역과 중첩되는 경우 그 중첩된 해양공간에 해당하는 격자를 포함하여 대상 해양공간의 범위를 설정
 -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2항)

〈그림 1-1〉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범위



4.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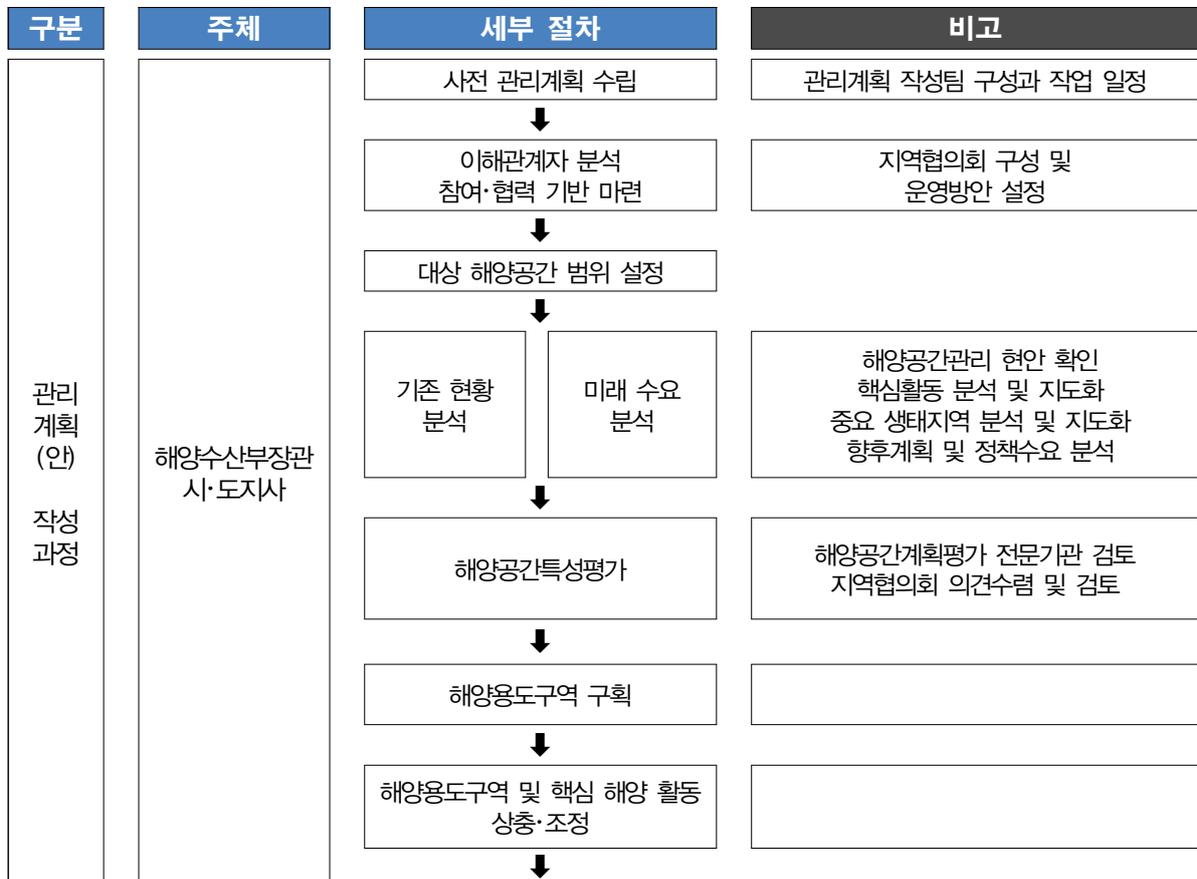
□ 관리계획의 초안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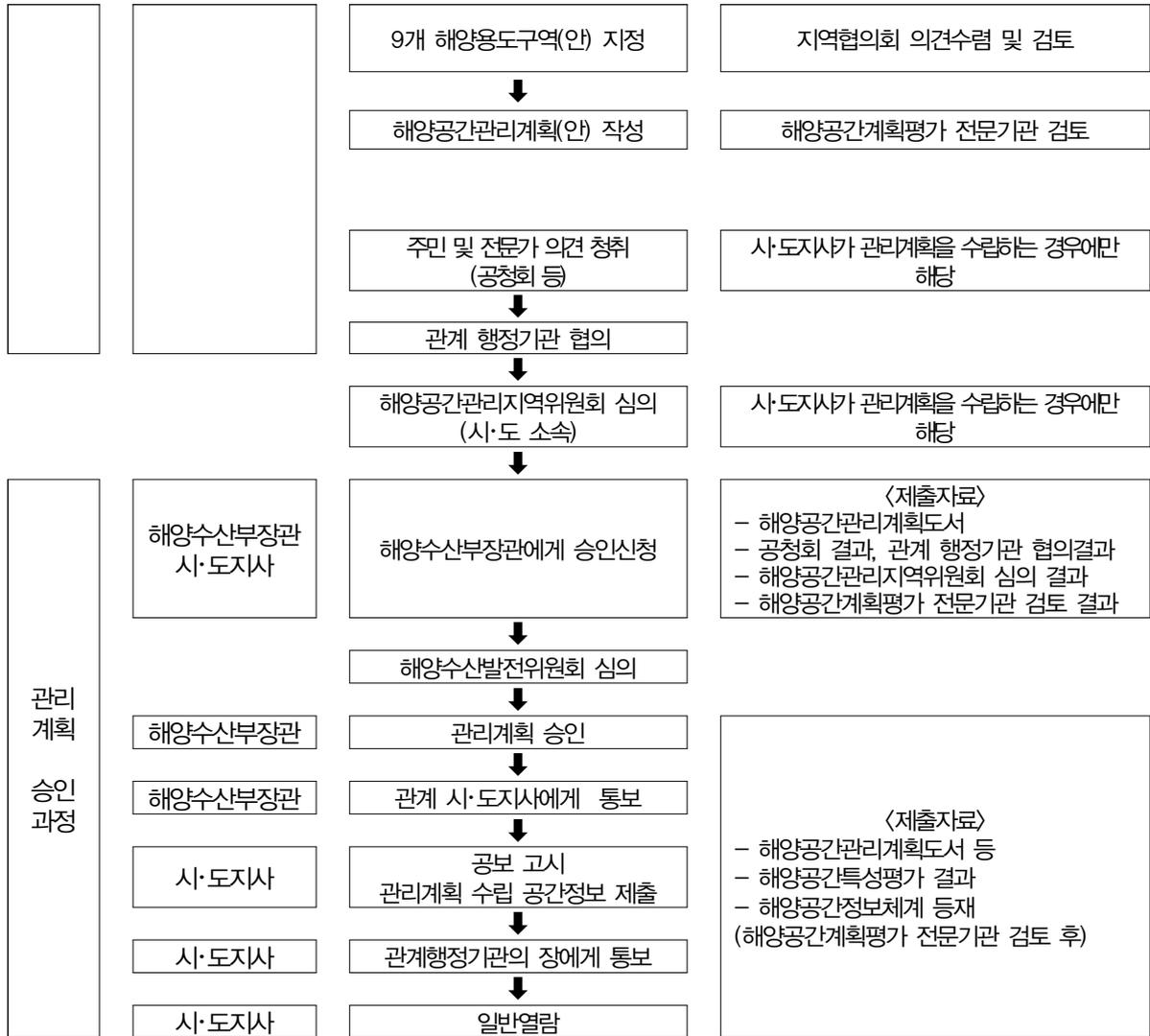
-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협의회를 통해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계획(안) 마련
- 관리계획(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

□ 관리계획의 승인 과정

- 이후 관리계획(안)은 시·도지사 소속의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게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신청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승인

〈그림 1-2〉 관리계획(안) 초안 작성 및 수립 절차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3호)



제2장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 방향

1. 환경적·생태적 특성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4. 해양공간관리 현안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제2장 /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 방향



1. 환경적·생태적 특성

1) 조석 및 조류

- 부산을 포함하는 남해안은 많은 유·무인도서가 존재하며, 반도와 만이 연속해서 분포하여 해안선이 복잡함.
 - 황해와 마찬가지로 대륙붕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심분포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갈수록 깊어짐. 낙동강으로부터 공급된 퇴적물이 두텁게 쌓여 삼각주가 넓게 발달함 (국립해양조사원, 2016)
 - 을숙도, 대마등, 장자도, 신자도, 진우도, 백합등, 도요등 등의 다양한 사주섬 또는 울타리 섬들이 하천 유수의 직각 방향(동-서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음.
 - 이들 섬들은 태풍, 파랑, 조류, 그리고 낙동강의 범람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형태가 변하고 있음¹⁾. 울타리섬 이외에 다대포, 송도, 해운대 등 크고 작은 해빈들이 분포함.
- 황해보다 작고, 동해보다 크게 나타나며 동쪽으로 갈수록 조차는 점차 작아짐.
 - 부산항에서 M_2 분조와 S_2 분조의 반조차는 각각 40.0cm와 18.9cm이고, 대조차는 117.8cm, 소조차는 42.2cm임. 일주조성분인 K_1 과 O_1 분조의 반 조차는 각각 4.4cm와 1.6cm임. 조석형 태수는 0.10으로 반일주조형으로 통상적으로 1일 2회조이고 일조부등은 매우 작음²⁾.
- 부산항을 포함하는 남해 동부 해역은 조류 타원의 반장축과 반단축의 차이가 매우 작은 왕복성 조류가 주를 이룸. 일부 해역에서는 유속이 약하며 복잡하게 나타남.
 - 창조류는 대체로 서향 또는 북서향하고 낙조류는 남향 또는 남동향함. 최강 창·낙조류는 약 1.2~1.3m/s 속도로 흐름 (국립해양조사원, 2016).

1) 반, 1986

2) 김과 강, 2002

2) 해안선

- 부산광역시의 해안선 길이는 총 379.82km이며 육지부 해안선이 78.6%로 우세
 - 부산광역시의 해안선 길이는 총 379.82km로 전국 해안선의 2.54%를 차지
 - 기초지자체별로는 강서구(113.69km), 사하구(74.92km), 기장군(61.01km) 순이며, 동구, 수영구, 중구에는 각각 10.0km 미만의 해안선이 분포
 - 육지부 해안선이 78.6%(298.43km)로 도서부(81.39km)에 비해 발달해 있으며 전국 육지부 해안선 비율(51.8%)을 크게 상회

〈표 2-1〉 부산광역시 해안선 길이(2014년)

(단위 : km, %)

구분	총 해안선 길이		육지부		도서부	
	길이	비율	길이	비율	길이	비율
전국	14,962.81	100.0	7,752.51	51.8	7,210.30	48.2
부산광역시	379.82	100.0	298.43	78.6	81.39	21.4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14년 해안선 통계 공표 자료

- 인공해안선 비율이 45.2%로 전국 평균(34.0%)보다 높으며, 인공해안선의 대부분(98.1%)은 육지부에 분포
 - 부산광역시 인공해안선의 길이는 총 171.81km로 전체 해안선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34.0%)보다 높은 인공화 경향을 보임
 - 기초지자체별로는 중구 및 동구(100.0%), 수영구(81.1%) 순으로 인공해안선 비율이 높으며, 강서구(32.7%), 사하구(30.2%), 기장군(46.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 인공해안선 중 육지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98.1%로 전국 평균(78.3%)을 크게 상회

〈표 2-2〉 부산광역시 자연·인공 해안선 길이 현황(2014년)

(단위 : km, %)

구분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육지부	도서부	소계	비율	육지부	도서부	소계	비율
전국	3,770.10	6,107.03	9,877.13	66.0	3,982.41	1,103.27	5,085.68	34.0
부산광역시	129.89	78.12	208.01	54.8	168.54	3.27	171.81	45.2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14년 해안선 통계 공표 자료

3) 유·무인도서

- 부산의 유·무인도서는 총 77개소, 이 중 유인도서는 4개소³⁾, 무인도서는 73개소이며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는 39개임.
- 개소 수를 기준으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중 절대·준보전 유형이 23%, 이용·개발가능 유형이 76.9%를 차지
- 면적을 기준으로 절대·준보전 유형이 88.5%, 이용·개발가능 유형은 11.5%

〈표 2-3〉 부산광역시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

구분	개소	비율(%)	면적(m ²)	비율(%)
절대보전	7	17.95	3,422,035	88.25
준보전	2	5.1	8,372	0.2
이용가능	23	59	254,078	6.55
개발가능	7	17.95	193,307	5
총계	39	100	3,877,792	100

자료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2017.12.31. 기준);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통계
http://uui.mof.go.kr/UUI/mn/mng_card/stat.do

〈표 2-4〉 부산광역시 절대보전 무인도서 현황

순번	무인도	시군구	지번	토지소유자	지정고시일
1	대마등도	강서구	명지동 산1외 9필지	국유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2010.10.08.
2	맹금머리도 (맹금머리등)	사하구	장림동 1150	국유지(문화재청)	2010.10.08.
3	진우도	강서구	신호동 179-1외 127필지	국유지(문화재청)/공유지 (부산광역시)/사유지	2010.10.08.
4	신자도	강서구	명지동 3225	국유지(기획재정부)	2010.10.08.
5	장자도(흐름등,옥림등)	강서구	명지동 2985	국유지(기획재정부)	2010.10.08.
6	백합등	사하구	다대동 1597	국유지(문화재청)	2010.10.08.
7	도요등(철새등)	사하구	사하구 다대동 1597-1	국유지	2015.12.31

3) 국가통계포털 내 부산광역시 기본통계(2019.6.21. 기준)

4) 연안습지

- '18년 연안습지 면적은 총 20.1km²로 '13년에 비해 13.7% 감소

〈표 2-5〉 부산광역시 연안습지 면적 변화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전국	2,489.4	100.0	2,487.2	100.0	2,482.0	100.0
부산광역시	24.2	1.0	23.3	0.9	20.1	0.8

자료 : 해양수산부, 2013·2019, 전국 갯벌면적조사; 2015, 연안기본조사

5) 연안·해양보호구역

- 해양보호구역이 3개소 지정·관리 중

- 오륙도 및 주변해역, 나무섬 주변해역, 남형제섬 주변해역 등 총 3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이 부산 해양공간에 분포

〈표 2-6〉 부산광역시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구분	위치	지정년도	면적(km ²)	목적
오륙도 및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 구역)	남구	2003	0.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성 : 오륙도 주변 바닷속에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 • 서식생물 : 여러해살이 풀로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게바다말 • 서식형태 : 수심 3m 지역의 개방된 해안의 암반에 주로 서식
나무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 구역)	사하구	2013	0.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성 : 유일한 아열대 생태계 보유 • 서식생물 : 다양한 해양보호생물 중 주로 밤수지맨드라미 • 서식형태 : 수심 5~25m에 해류의 흐름이 강한 청정 지역에서 서식
남형제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 구역)	사하구	2013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성 : 유일한 아열대 생태계 보유 • 서식생물 : 다양한 해양보호생물 중 주로 밤수지맨드라미 • 서식형태 : 수심 5~25m에 해류의 흐름이 강한 청정 지역에서 서식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현황(2018.6. 기준)

- 특정도서 총 3개소를 지정·관리

- 전국 특정도서 249개소 중 남형제섬, 북형제섬, 주전자섬(생도)이 부산광역시에 위치

〈표 2-7〉 부산광역시 특정도서 지정 현황

구분	위치	지정년도	면적(㎡)	지정 사유
남형제섬 (특정도서)	사하구	2004	10,382	• 시스택, 해식애, 해식동 등 지형·경관 우수
북형제섬 (특정도서)	사하구	2014	11,352	• 해식애, 해식동 및 시스택 등 지형·경관 우수 • 칼새 서식지
주전자섬(생도) (특정도서)	영도구	2014	8,088	• 시스택 등 지형·경관 우수 • 식생 보존상태 양호 • 칼새 집단서식지

자료 : 환경부, 특정도서 지정현황(2018.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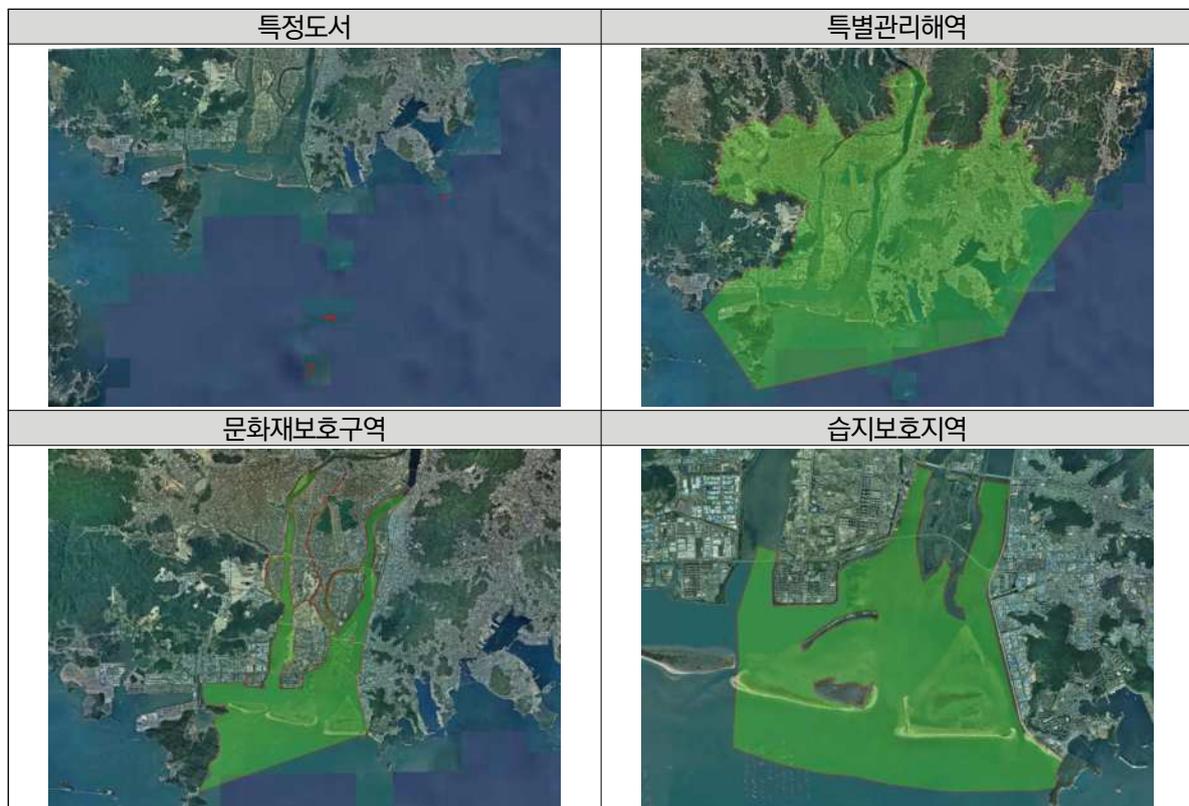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은 총 3개소 지정·관리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1966년 지정), 물운대(부산광역시 기념물 제27호, 1972년 지정), 오륙도(명승 제24호, 2007년 지정)임.

- 낙동강 하구 일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별관리해역(「해양환경관리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으로 지정되어 있음.

* 낙동강 하구 해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되었으나 습지보호지역으로도 지정되어 효과적 관리와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해제

〈그림 2-1〉 낙동강 하구 일원 보호구역 지정 현황



자료 : 국가공간정보포털의 해당보호구역 공간정보와 바이월드 항공영상을 활용해 작성

6) 해양생태계 현황

□ 해양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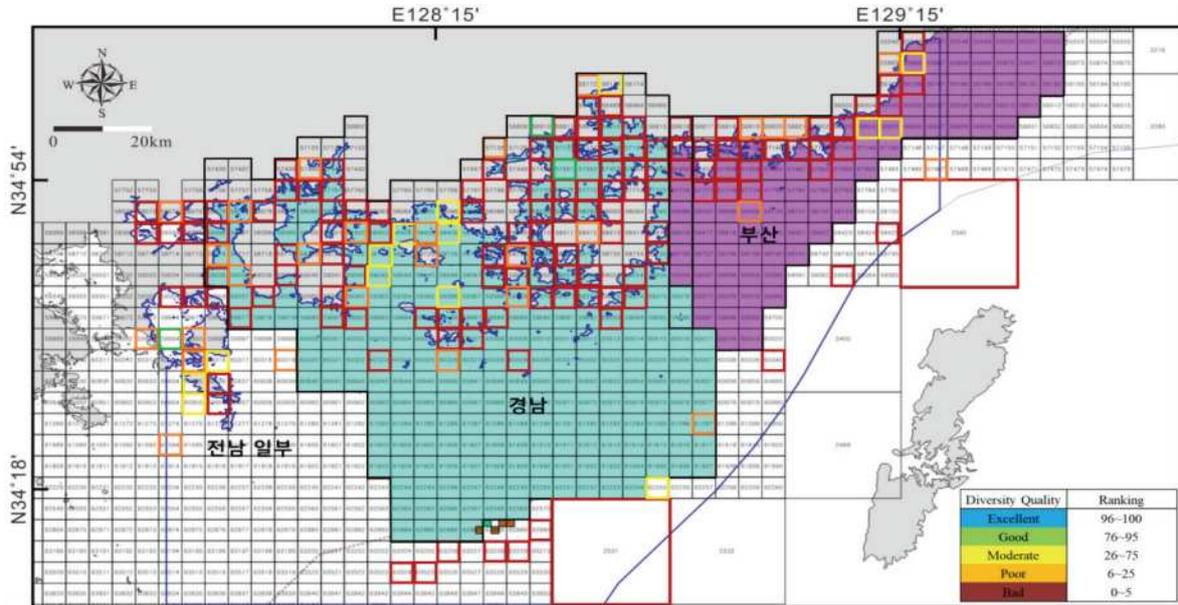
- 해양환경공단(2016)의 해양생태계 조사에 따르면 남해안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에 따라 소해역 생태계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부산에 해당하는 해역은 남해동부 내만해역, 남해동부 하구영향권역, 대마난류 영향권임
 - 소해역 생태계는 진도-완도 외해역, 고흥반도 주변해역, 남해 서부 외해역, 남해동부 내만해역, 남해동부 하구영향권역, 대마난류 영향권임.
- (남해동부 내만해역) 심각한 부영양화 및 적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해역이며, 특히, 여름철 저층수괴에 빈산소 또는 무산소 현상이 나타나 저서해양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해동부 하구영향권역) 섬진강·남강 및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담수의 영향은 인근 양식어장에 영향을 미쳐 양식생물 폐사 등이 보고되어 왔으나 여기에 대한 조사와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여름철 홍수기에는 섬진강과 낙동강의 담수가 외해역 방향으로 약 70km 이상 확산되며, 낙동강 담수는 외해역뿐만 아니라 서쪽의 가덕수로를 따라 마산-진해만 그리고 동쪽 방향으로 기장해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 강에는 다목적댐 및 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개방 시 많은 양의 담수가 일시에 방류되어 생태계 교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방류조절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 (대마난류 영향권역) 대마난류를 따라 난류성 종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임. 해양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아열대성 종의 출현을 조사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변동과 기후변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해양생물다양성

- 부산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출현종수는 표층 25~56종, 저층 8~25종의 범위를 보이며, 현존량은 표층 45,885~556,352 cells/ℓ, 저층 5,554~118,673 cells/ℓ의 범위를 보임
 - * 법정조사인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2016) 자료의 5월, 8월 평균을 분석한 결과임

- 동물플랑크톤의 출현종수는 25~43종, 현존량은 2,753~5,926 ind./m³의 범위를 보임
 - * 법정조사인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2016) 자료의 5월, 8월 평균을 분석한 결과임
- 조하대 저서동물의 출현종수는 39~84종, 서식밀도는 546.2~811.8 개체/m², 생물량은 39.1~324.1 g/m²의 범위를 보임
 - * 법정조사인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2016) 자료의 5월, 8월 평균을 분석한 결과임
- 조간대 저서동물의 출현종수는 12~27종, 서식밀도는 145.0~1,343.3 개체/m², 생물량은 1.1~116.2 g/m²의 범위를 보임
 - * 법정조사인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2016) 자료의 격자별 평균을 분석한 결과임
- 부산 해역의 생물다양성 진단을 위해 조간대와 조하대를 대상으로 수집된 저서대형동물 출현종자료를 이용하여 Taxonomic distinctness index ($\Delta+$, 델타플러스)를 구하였음
- Taxonomic distinctness index ($\Delta+$)는 출현종들의 진화적 유연관계를 거리로 환산하여 이를 생물다양성에 반영하는 지수임
 - 생물다양성을 나타내는 index의 한 종류로 영국 Plymouth Marine Laboratory 소속의 Clarke and Warwick 박사가 1998년 발표한 지수임.
 - 지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출현 종 목록이며, 개체수나 생물량 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채집면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해양생물다양성을 파악하는데 적합
 - Taxonomic distinctness index ($\Delta+$)는 국가/지역간 생물다양성 비교가 가능함
- 부산 해역의 조간대, 조하대 저서생태계(법정조사, 해역이용협의) Taxonomic distinctness index($\Delta+$)를 분석한 결과 총 112개 격자(부산과 경남이 중복되는 격자 포함) 중 34개의 격자에 자료가 존재함
 - * 법정조사인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2016) 자료와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해역이용협의 보고서(2014-2017)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임
 - 델타플러스로 판정한 생물다양성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아래 그림에 제시함
 - 자료가 존재하는 34개 격자 중에서 1등급은 0개(0%), 2등급은 0개(0%), 3등급은 2개(5.9%), 4등급은 4개(11.8%), 5등급은 28개(82.4%)로 나타남
 - 저서생태계 생물다양성을 5등급으로 나눈 결과(생태계 종합조사 자료* 기준), 조간대는 4등급, 조하대는 3등급이 주로 분포함
 - * 다만, 계획수립 대상지역의 분석격자(112개, 3분 격자)의 자료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큼
 - ** 1등급(탁월), 2등급(좋은), 3등급(보통), 4등급(빈약), 5등급(나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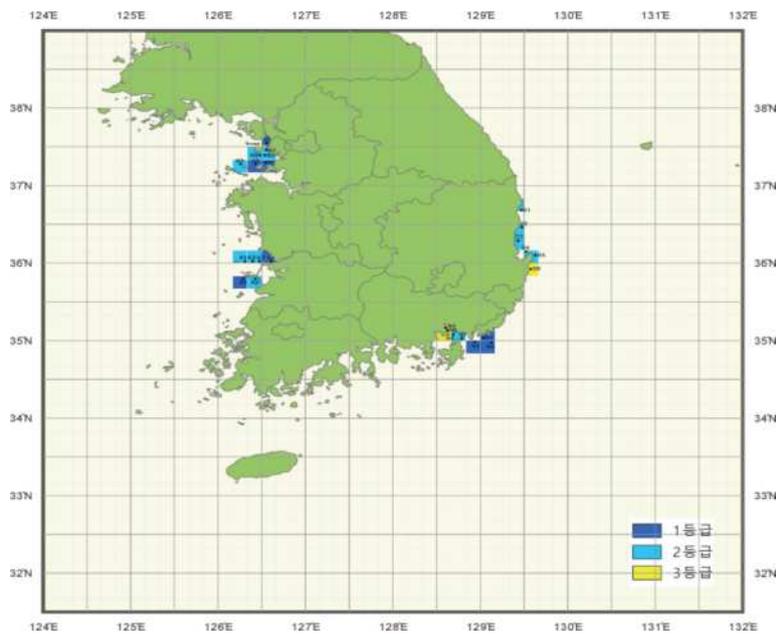
〈그림 2-2〉 남해안 일부해역의 조간대 및 조하대 Taxonomic distinctness index(Δ+) 현황 (법정자료 및 해역이용협의 취합자료)



자료 :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2016), 해역이용협의 자료(2014-2017)

-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 의한 한반도 해양의 핵심 공간은 한강하구, 금강하구, 낙동강 하구, 동해연안용승해역으로 제시되며, 이에 해당하는 해양생태등급은 아래의 그림과 같음.
- 이 중 낙동강 하구 주변해역은 해양생태등급 1~2등급에 해당하며, 서식지 연계 측면에서 보호가 필요

〈그림 2-3〉 핵심공간의 해양생태등급 현황



7) 해양수질 현황

- 부산 해역의 수질 현황을 살펴보면, 낙동강 하굿둑 전면 해역의 수질이 다소 떨어지며, 항만 내측에 수질환경은 외해에 비해 좋지 않음
- 부산 해역의 해수수질평가지수(WQI)⁴⁾는 전반적으로 I~II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낙동강 하구와 항만 해역의 수질환경이 다소 좋지 않음.
 - COD는 낙동강 하구둑 주변 해역과 대변항(기장군)에서 높은 값을 보이거나 2.0 mg/L 미만
 - DO는 전체 해역의 표층과 저층에서 모두 7 mg/L 이상으로 매우 양호함
 - TN과 TP는 부산신항 내측해역, 낙동강 하구, 대변항에서 다소 높은 값을 보임
- 부산 해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격자별 COD⁵⁾ 농도는 표층 0.89~1.59 mg/L, 저층 0.78~1.45 mg/L, DO⁶⁾ 농도는 표층 8.03~8.86 mg/L, 저층 7.04~8.14 mg/L, TN⁷⁾ 농도는 표층 0.207~0.416 mg/L, 저층 0.240~0.349 mg/L, TP⁸⁾ 농도는 표층 0.018~0.036 mg/L, 저층 0.023~0.039 mg/L의 범위를 보임

4) 해수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는 우리나라 종합적인 해역수질상태를 알기 위해 해역을 해류, 조석, 탁도, 수심 등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의 생태구(동해, 대한해협, 서남해역, 서해중부, 제주 생태구)로 구분하고 부영양화의 원인항목(용존 무기질소(DIN), 용존 무기인(DIP)과 일차반응항목(클로로필(Chl-a), 투명도(SD))과 이차반응항목(저층 용존산소 포화도(DO))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으로 계산

※ 생태계기반 해수수질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

등급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
I(매우 좋음)	23 이하
II(좋음)	24 ~ 33
III(보통)	34 ~ 46
IV(나쁨)	47 ~ 59
V(아주 나쁨)	60 이상

- 5)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 또는 mg/l로 나타낸 것임
- 6) 용존산소(DO)는 물 속에 용해해 있는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으로 유기물에 의하여 오염된 수역일수록 낮은 농도를 보임
- 7) 총질소(TN)는 유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및 질산성 질소 등 수중에 포함된 모든 질소화합물의 총량으로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과 같은 인위적인 유입에 따라 증가함
- 8) 총인(TP)은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함

〈표 2-8〉 부산 해역의 해양환경(WQI, COD, DO, TN, TP) 현황

Grid*	측정망 정점	WQI		COD		DO		TN		TP	
				(mg/L)							
		점수	등급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59056	거제도 동안03	30	II	0.96	0.92	8.21	7.04	0.207	0.254	0.018	0.029
58416	거제도 동안04	30	II	1.24	1.02	8.75	7.36	0.27	0.246	0.021	0.026
57456	진해01	20	I	1.35	1.05	8.73	7.55	0.262	0.266	0.026	0.030
57137	신항01	26	II	1.48	1.25	8.08	7.59	0.416	0.308	0.036	0.036
57136	신항02	23	I	1.54	1.45	8.55	8.01	0.319	0.296	0.030	0.030
57459	낙동강01	20	I	1.59	1.03	8.65	7.43	0.337	0.255	0.025	0.027
57780	낙동강02	30	II	1.32	0.89	8.70	7.07	0.255	0.256	0.019	0.028
57779	낙동강03	30	II	1.44	0.97	8.57	7.34	0.352	0.244	0.025	0.025
57778	낙동강04	30	II	1.41	1.02	8.66	7.36	0.350	0.250	0.025	0.027
56822	부산H01	20	I	1.05	0.85	8.60	8.01	0.333	0.325	0.029	0.031
57141	부산H02, H03	20	I	1.18	0.95	8.86	8.14	0.258	0.256	0.022	0.023
56824	부산01	20	I	0.89	0.79	8.21	7.81	0.272	0.240	0.021	0.023
56823	부산02,03	20	I	1.03	0.87	8.39	8.03	0.384	0.266	0.032	0.024
57142	부산04	20	I	1.03	0.78	8.27	7.91	0.271	0.275	0.026	0.025
57461	부산05,06	20	I	1.09	0.83	8.38	7.53	0.255	0.249	0.023	0.027
56185	기장H01	20	I	1.58	1.45	8.03	7.68	0.340	0.349	0.036	0.039
55866	기장01,04	20	I	0.98	0.96	8.21	7.58	0.220	0.245	0.021	0.029
56505	기장02	20	I	0.99	1.09	8.09	7.56	0.224	0.247	0.020	0.030
55546	기장03	20	I	0.99	0.89	8.16	7.59	0.214	0.243	0.021	0.026

주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측정 자료가 있는 정점만 활용, 신규정점 제외, *:격자번호
 자료 : 해양환경측정망 자료(2008-2017)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1) 인구

- 부산연안의 인구는 2018년 기준 1,841천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05%임
 - 2018년 부산연안은 전국 인구의 3.55%인 1,841천명이 거주하며, 2008년 1,832천명에 비해 0.5% 증가함
 - 부산연안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기장군의 인구수는 지난 10년동안 각각 135.7%, 103.1%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비해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의 인구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인구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부산연안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05%로, 전국 연평균 인구증가율(0.46%)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표 2-9〉 부산연안 인구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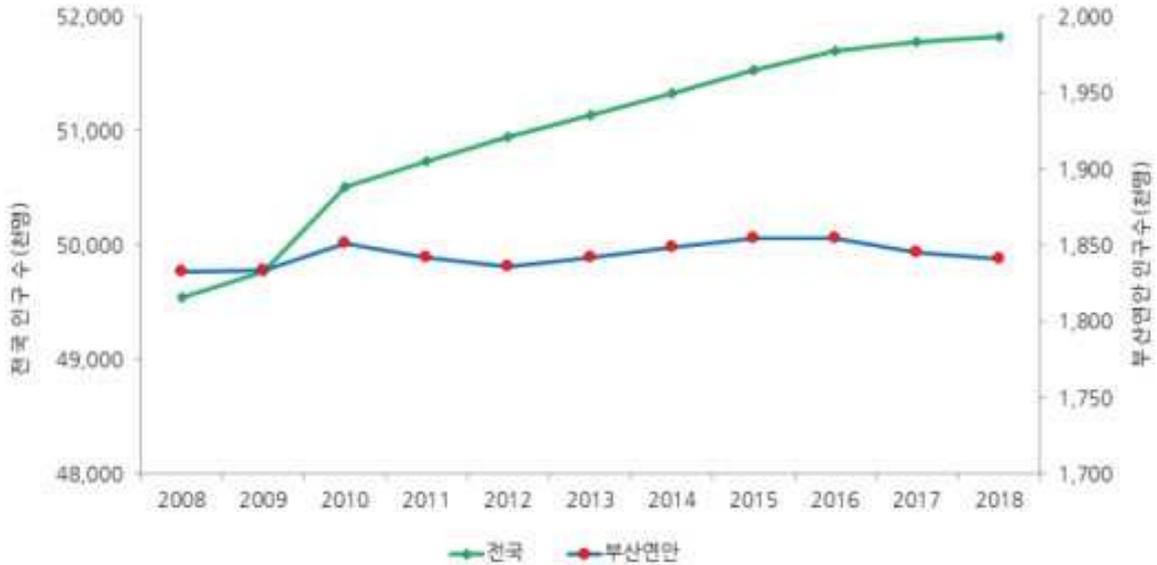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인구 증가율	
전국	49,540	49,773	50,516	50,734	50,948	51,141	51,328	51,529	51,696	51,779	51,826	0.46	
연안인구	12,066	12,172	13,424	13,533	13,795	13,896	13,983	14,108	14,203	14,294	14,407	1.94	
부산광역시	3,565	3,543	3,568	3,551	3,538	3,528	3,519	3,514	3,499	3,471	3,441	-0.35	
부산연안	1,832	1,834	1,851	1,842	1,836	1,842	1,848	1,854	1,854	1,845	1,841	0.05	
부산	중구	50	49	49	49	48	47	47	46	45	44	43	-1.37
	서구	129	126	126	124	121	119	118	116	113	110	111	-1.46
	동구	103	101	102	100	99	96	95	92	90	89	87	-1.54
	영도구	152	148	147	143	140	136	132	129	126	124	120	-2.10
	남구	298	298	298	295	291	292	287	283	279	274	280	-0.62
	해운대구	424	425	427	426	428	426	424	423	420	412	409	-0.36
	사하구	365	360	359	355	353	349	343	338	335	333	328	-1.03
	강서구	52	60	63	65	66	70	80	95	109	117	123	13.57
	수영구	177	177	178	177	177	175	178	180	179	180	176	-0.05
	기장군	81	89	103	108	115	133	145	153	159	162	165	10.31
부산연안/전국	3.70	3.68	3.66	3.63	3.60	3.60	3.60	3.60	3.59	3.56	3.55		

자료 : 통계청, 2019

〈그림 2-4〉 부산 연안 인구 현황 및 변화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2019

2) 사업체수

□ 부산연안의 사업체 수는 2017년 기준 154,148개로 전국 사업체 수의 3.8%를 차지

○ 전국 대비 부산연안의 산업별 비율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4.3%)을 보였으며, 광업에서 가장 낮은 비율(0.6%)을 나타냄

* 도소매업 28.3%, 숙박·음식점업 18.1%, 제조업 11.2%, 운수업 9.8%, 기타 32.6%

○ 2007년에 비해 2017년의 부산연안 사업체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강서구, 해운대구, 기장군의 사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전국의 사업체 수에 대한 부산연안의 각 산업별 비율의 경우 농·임·어업의 감소 외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표 2-10〉 부산연안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 산업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2007	2017	2007	2017	2007	2017	2007	2017	2007	2017	2007	2017	2007	2017	2007	2017
전국	3,262,925	4,019,872	2,263	3,880	1,778	2,001	332,617	433,684	867,784	1,022,739	338,812	386,919	623,064	747,577	1,096,607	1,423,072
부산광역시	262,906	286,571	100	79	9	18	27,285	31,012	76,377	80,645	28,768	27,227	48,585	51,352	81,782	96,238
부산연안	132,835	154,148	97	73	5	13	12,817	17,249	38,252	43,668	15,470	15,078	24,991	27,881	41,203	50,186
중구	15,102	15,170	38	21	1	1	916	685	5,851	6,082	2,212	2,154	2,584	2,771	3,500	3,456
서구	9,963	9,480	29	23	-	3	541	498	3,570	3,616	1,003	739	1,985	1,795	2,835	2,806
동구	14,337	13,890	3	5	-	1	1,223	1,227	5,140	4,857	1,330	1,156	2,454	2,228	4,187	4,416
영도구	9,688	9,282	5	3	-	-	993	1,573	2,462	2,131	1,312	1,097	1,842	1,759	3,074	2,719
남구	16,485	16,061	2	-	1	-	1,062	975	4,239	3,689	2,423	2,116	3,137	3,096	5,621	6,185
해운대구	20,449	27,430	1	-	-	2	895	856	5,358	7,622	2,646	2,657	3,985	5,006	7,564	11,287
사하구	21,414	22,243	7	8	2	-	3,158	3,339	4,990	5,099	2,624	2,538	4,102	4,184	6,531	7,075
강서구	6,820	16,437	7	8	-	6	2,653	6,339	1,623	4,200	405	818	845	1,814	1,287	3,252
수영구	12,797	13,443	-	-	1	-	733	593	3,598	3,543	1,115	1,031	2,582	2,880	4,768	5,396
기장군	5,780	10,712	5	5	-	-	643	1,164	1,421	2,829	400	772	1,475	2,348	1,836	3,594
부산연안/전국	4.1	3.8	4.3	1.9	0.3	0.6	3.9	4.0	4.4	4.3	4.6	3.9	4.0	3.7	3.8	3.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7, 201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사업체조사(2007, 2017)

3) 수산

□ 부산 어업 생산량은 285,016톤으로 전국 어업 생산량의 30.1%를 차지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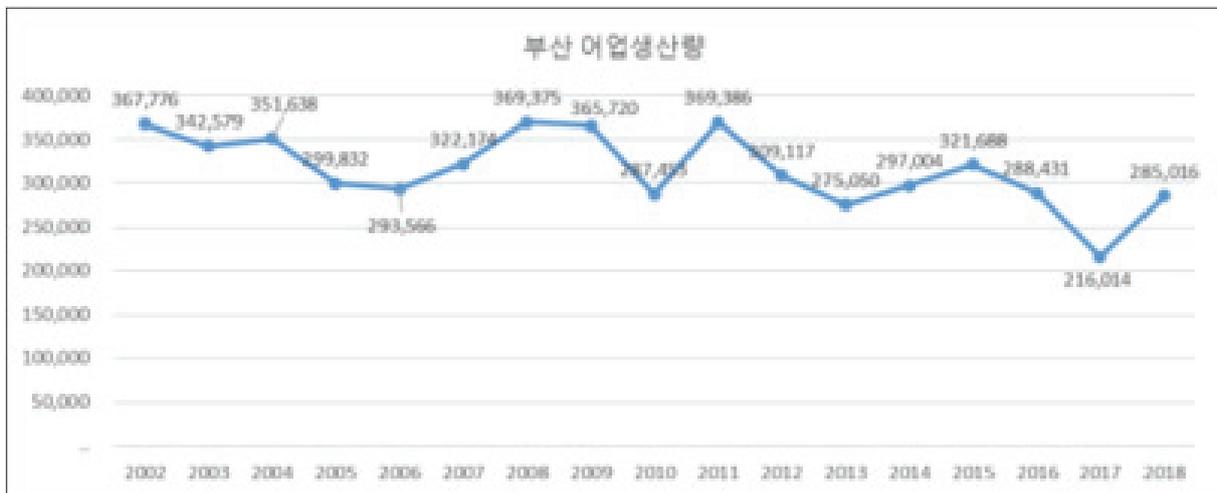
○ 어종별로 고등어가 부산 어업 생산량의 약 38.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망치고등어, 멸치, 살오징어 순임.

○ 어업방식별로 대형선망어업*이 76.2%, 대형트롤어업이 13% 차지

* 대형선망은 연근해 어업 중 규모가 큰 업종에 속하고, 50~139톤급 어선 이용(주로 고등어 대상으로 연중 조업)

〈그림 2-5〉 부산 어업생산량 변화

(단위: 톤)



주 : 일반해면어업 기준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2018 수산해양환경통계; 수산정보포털 내 어업생산통계(<https://www.fips.go.kr/>)

○ 수협이 연근해 어획실적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5년간('13~'17) 고등어 어획량 분포와 시계열 변화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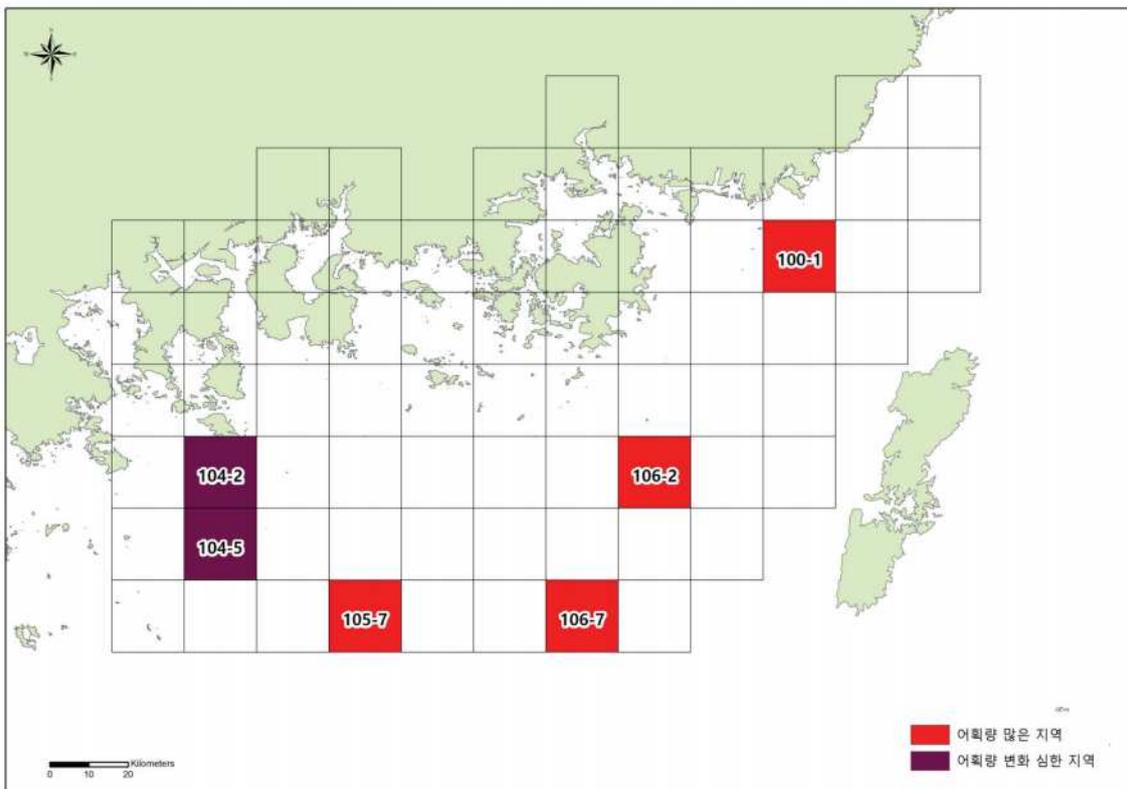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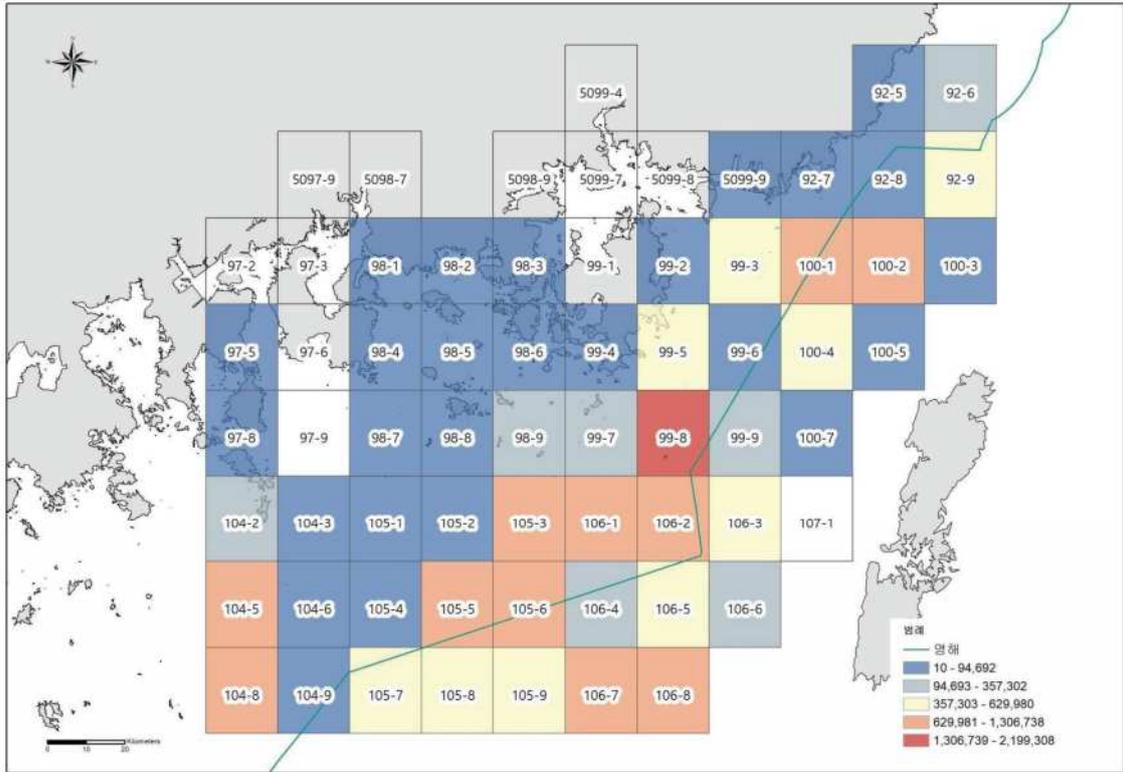
* 이 자료는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연근해어선의 선장이 조업일마다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을 연근해어업보고서에 기록한 데이터임.

- 고등어 어획량은 99-8 소해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0-1, 100-2, 105-3, 105-5, 105-6, 106-1, 106-2, 106-7, 106-8 소해구에서 고등어 어획량이 높음 (〈그림 2-6〉 상단 참고).

- 특히, 100-1, 105-7, 106-2, 106-7 소해구는 꾸준히 고등어 어획량이 높음(〈그림 2-6〉 하단 참고).

9) 해양수산부, 2018, 수산포털 내 어업생산통계(<https://www.fips.go.kr/>)

<그림 2-6> 고등어 어획량 분포 및 집중 해역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해당년도, 연근해 어획실적 정보

□ 부산연안의 어업권 중 마을어업이 가장 많은 면적(50.3%)을 차지

○ 부산연안의 면허어업권은 149개, 면적은 2,470.2ha임. 이중 마을어업이 가장 많은 면적(50.3%)을 차지함

* 마을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일정한 수심이내의 패류·해조류·정착성 수산 동물을 관리하여 포획

○ 해조류양식(33.9%)과 복합양식(15%)이 마을어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1〉 부산연안 면허어업현황(면적)

(단위 : ha, %)

구분		마을	어류양식	해조류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	합계	비율(%)
부산	강서구	61.4	0.0	337.7	232.5	0.0	631.6	23.9
	기장군	461.6	9.6	252.7	98.2	11.4	833.5	31.5
	남구	49.2	0.0	0.0	0.0	0.0	49.2	1.9
	사하구	519.4	0.0	187.3	0.0	0.0	706.7	26.7
	서구	28.8	0.0	6.0	0.0	0.0	34.8	1.3
	수영구	15.2	0.0	0.0	0.0	0.0	15.2	0.6
	영도구	106.4	0.0	4.0	0.0	0.0	110.4	4.2
	해운대구	172.2	0.0	50.0	38.8	0.0	261.0	9.9
합계	1,414.2	9.6	837.7	369.6	11.4	2,642.4	100.0	
비율(%)	53.5	0.4	31.7	14.0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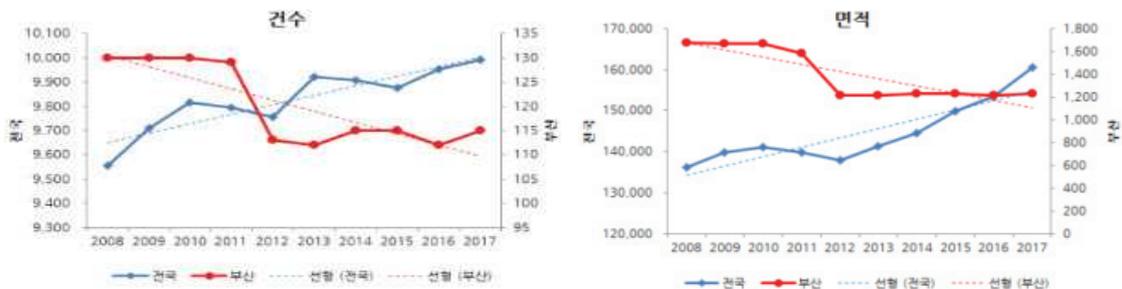
자료 : 부산광역시, 2018

○ 전국과 부산광역시에 대한 어업권 현황 비교는 아래와 같음

- 건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전국과 비교한 결과, 전국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부산광역시는 감소함

〈그림 2-7〉 어업권 현황 비교

(단위 : 건, ha)



주 : 마을어업을 포함한 어업권 현황임, 자료 : 천해양식어업권통계, 통계청, 2018

□ 부산에는 총 48개의 어항이 입지하고, 기장군과 강서구에 다수 분포

- 지정어항인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13개소, 어촌정주어항이 10개소가 있고, 미지정 소규모어항이 22개소가 있음.

〈표 2-12〉 부산 국가 및 지방 어항 현황

(단위 : 개소)

군·구	국가어항		지방어항
	연안	도서	
해운대구	-	-	송정, 우동, 청사포
사하구	다대포	-	-
강서구	-	천성	늘차, 대항
수영구	-	-	민락
기장군	대변	-	동백, 두호, 신암, 월내, 이동, 칠암, 학리
어항수	2	1	13

주 : 2018.12월 기준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2018 수산해양환경통계

〈표 2-13〉 부산 어촌정주어항 현황

군·구	구분	어항수	어촌정주어항
서 구	육지	1	안남
사하구	육지	1	장림
강서구	육지	4	대항 새바지항, 순아항, 신전항, 신호항
기장군	육지	4	공수항, 동암항, 증동항, 이천항
합계		10	

〈표 2-14〉 부산 미지정 소규모 어항

군·구	구분	어항수	소규모 어항
영도구	육지	2	중리항, 하리항
남구	육지	1	용호항
해운대구	육지	2	구덕포항, 미포항
사하구	육지	2	하단항, 홍치항
강서구	육지	9	녹산항, 동리항, 동선항, 두문항, 명지항, 선창항, 외늘항, 외양포항, 정거항
사상구	육지	1	엄궁항
기장군	육지	5	길천항, 서암항, 신평항, 월전항, 임랑항
합계		22	

□ 부산 해역의 인공어초는 3,153개, 면적은 144.97km²임. 이중 해운대구가 59.96km²이 가장 많은 면적(41.4%)을 차지함

○ 남구, 사하구,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9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어초 사후관리사업이 시행됨

〈표 2-15〉 부산연안 인공어초 설치현황

(단위 :개, ha, 백만원)

구분	인공어초 설치		인공어초 사후관리 사업		
	설치량	설치면적	설치량	사업비	
부산	강서구	36	135		
	기장군	471	3,165		
	남구	656	3,518	341	333
	사하구	1,010	990	291	328
	서구	4	100		
	수영구	32	6		
	영도구	64	587		
	해운대구	880	5,996	491	487
합계	3,153	14,497	3,445	9,643	

자료 : 부산광역시·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 부산 기장연안 해수면에 수산자원관리수면이 1개소 분포

〈표 2-16〉 부산 해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

(단위 :ha)

구분	위치	개소	면적	지정사유	비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1	170	바다목장	최초지정
합계	1개소		170		

자료 : 해양수산부, 2018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2018, pp. 31-33.

4) 광업권

- 부산연안에는 총 6개 광구에 대하여 채굴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광업권 및 탐사권은 없음.
이 중 광구 내 사업범위가 해양에 인접한 경우는 총 2건임
- 부산시 수영구 및 강서구 소재 광구의 경우 광구내 사업범위가 해양에 인접하며, 총 면적은 417ha임.

〈표 2-17〉 부산연안 채굴권 설정 현황

지적명	지적호수	등록번호	면적(ha)	존속기간	소재지	광종
가덕	098	046662	185	2019.07.28.~2039.07.27.	부산시 강서구	고령토, 납석
부산	081	100485	232	2018.09.29.~2038.09.28.	부산시 수영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주 : 2019년 기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9. 광업등록사무소 내부자료

5) 해양관광

- 부산연안에는 7개 해수욕장이 운영 중이며 연간 48,556천명이 방문
- 부산연안에 위치한 7개 해수욕장 중 해운대·광안리·송도해수욕장의 2017년 방문객이 총 36,388천명으로 부산연안 해수욕장 방문객의 75%를 차지

〈표 2-18〉 부산 해수욕장 2017년 방문객 수

구분	관광지	2017년 방문객수	비율(%)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277,650	0.6
		임랑해수욕장	265,700	0.5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7,320,000	15.1
	서구	송도해수욕장	10,551,000	21.7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12,128,000	25.0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4,305,000	8.9
		해운대해수욕장	13,709,000	28.2
합계	7개	48,556,350	100.0	

자료 : 부산광역시·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관리·운영 중
- 해운대구는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구역 50m를 포함하여 100m 이내 해상 수상레저활동 접근 금지¹⁰⁾

〈그림 2-8〉 해운대구 송정 및 해운대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지정 현황



자료: 해운대구, 2019, 「2019년 해운대구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지정 고시」

□ 해수욕장외에도 연간 6,275천명이 부산연안 관광지를 방문

- 7개 해수욕장 외에도 부산연안에 위치한 연안 및 해양관광지 8개소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총 6,275천명이 방문
- 부산연안 연안 및 해양관광지 중 태종대유원지가 관광객이 2017년 기준 2,150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오륙도 스카이워크, 국립해양박물관 순임

〈표 2-19〉 부산연안 연안 및 해양 관광지 현황

구분		관광지	2017년 관광객수	비율(%)
부산	기장군	공수어촌체험마을	55,215	0.9
	남구	오륙도 스카이워크	1,728,614	27.5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709,200	11.3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1,082,378	17.2
		동삼동패총전시관	90,832	1.4
		태종대유원지	2,150,000	34.3
		현여울문화마을	170,696	2.7
	해운대구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287,989	4.6
합계	8개	6,274,924	100.0	

자료 : 부산광역시·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10) 해운대구, 2019, 「2019년 해운대구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지정 고시」

□ 마리아항만 중 개발·운영 중인 곳은 4개소, 예정구역은 3개소임.

- 마리아항만구역으로 개발·운영 중인 곳은 해운대구 운촌 마리아항만구역, 수영만 마리아항만구역, 남천마리아항만구역, 북항 마리아항만구역(개발 중)이 있으며, 예정구역은 동암 마리아항만, 다대포마리아항만, 백운포마리아항만임.

〈표 2-20〉 부산 운영 중인 마리아 항만

마리아명	위치 (항명)	마리아 항만 구역	계류선석			개발 및 운영주체	개발비(억원) 개발근거법	개발 년도
			계	해상	육상			
The bay 101	운촌	거점 마리아	61	6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 (주)동백섬마리아 • 운영 : (주)동백섬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민간) •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 례법등 	'14
수영만	수영만		448	293	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 (주)대우 • 운영 : 부산 시설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1(대우→부산 기부채납) • 공유수면매립법 	'86
남천	남천		36	3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 (주)진일월드 마린 • 운영 : (주)진일월드 마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진일→부산 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14

주 : 노란색은 제1차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반영 지역임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대상지는 마리아의 접근성, 시장성, 이용성, 해상조건, 자연조건 등을 기준으로 선정)

자료 : 해양수산부, 2018

〈표 2-21〉 부산연안 마리아항만 개발 및 예정구역

구분	마리아 항만	위치	예정면적 (육·해상포함, m ²)	단계	규모(척)
부산	운촌마리아	부산 해운대구	141,120m ²	개발 중	250
	북항마리아	부산 동구	85,375m ²	개발 중	200
	수영만마리아	부산 해운대구	234,516m ²	개발 중	448
	동암마리아	부산 기장군	35,290m ²	예정	200
	다대포마리아	부산 사하구	135,400m ²	예정	300
	백운포마리아	부산 남구	88,750m ²	예정	100
합계	6		720,451m ²		1,498

자료 : 부산광역시·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 부산연안 어촌체험마을은 총 3개소임

- 부산연안 어촌체험마을은 2001년 이후 공수, 대항, 동삼어촌체험마을 등 총 3개소임

〈표 2-22〉 부산연안 어촌체험마을 현황

구분	마을명	주소	선정연도	체험 종류	지원사업비 (백만원)	
부산	강서구	대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안로1207번길 9-2	2005	민박시설, 체험시설 등	500
	기장군	공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2001	해조류말리기 체험장, 종합안내소, 체험어장 진입도로, 파고라 등	881
	영도구	동삼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리해안길 17-5	2015	체험마을 안내센터	215
합계	3				1,596	

자료 : 부산광역시·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 부산연안에는 총 1개소의 유어장이 있으며 연간 5,789명이 이용

○ 부산연안 유어장은 동삼동 하리항 인근 동삼어촌계 유어장 1개소가 운영중에 있음

〈표 2-23〉 부산연안 유어장 현황

구분	유어장명	주소	면적(ha)	면허 또는 허가 어업의 종류	이용료(원)	이용객(명)
부산	영도구 동삼어촌계 유어장	동삼동 하리항 인근 마을어장 내	16.4	마을어업 제1호	20,000	5,789
합계	1					5,789

자료 : 부산광역시·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 부산연안에는 해안누리길 4개소가 조성되었고 총연장 33.6km임

〈표 2-24〉 부산연안 해안누리길 현황

구분	명칭	위치	총연장(km)	소요시간	
부산	사하구	갈맷길(물운대길)	사하구 물운대~다대포해수욕장	4	120분
	영도구	갈맷길(절영해안로)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남향대교)	10.6	240분
	해운대구	갈맷길(해운대삼포길)	해운대구 우동~송정동(동백섬~송정)	7	180분
	기장군	갈맷길(해안산책길)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일원	12	240분
합계	4		33.6		

자료 : 부산광역시·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6) 항만·항행

(1) 항만

□ 항만법상 지정항만은 무역항인 부산항과 연안항인 부산남항이 입지하고 있음

○ 항만관리기관은 부산항의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고, 부산남항은 부산광역시임.

〈표 2-25〉 부산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창원시 • 항종 : 무역항(국가관리항) • 항만구역 : 현면적 220,959천㎡ (수상 : 212,675천㎡, 육상 : 8,284천㎡) 					
안벽(m)	물양장(m)	잔고(기)	방파제(m)	창고(동)	야적장(천㎡)
31,085	9,034	6	6,216	9	2,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능력 : 137선석(여객 및 유류 포함) • 하역능력 : 354,015천RT/년 (19,131천TEU/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16,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16~'20)

〈표 2-26〉 부산남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서구 남부민동, 영도구 남항동 일원 • 항종 : 연안항(지방관리항) • 항만구역 : 현면적 1,400천㎡ (수상 : 1,304천㎡, 육상 : 96천㎡) 			
물양장(m)	방파제(m)	파제제(m)	호안(m)
4,194	558	198	1,414
• 접안 및 하역 능력 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2016,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16~'20)

□ 부산항 화물량 및 선박 입출항 추이

○ 2018년 기준 부산항 연간 화물 물동량은 총 461백만 RT이고, 부산항을 통해 입출항한 선박 수는 94,816척임

〈표 2-27〉 부산항 화물 입출항 추이

단위 : 1,000RT

부산항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입항	119,536	107,257	124,806	140,978	147,951	153,945	166,300	176,797	174,705	187,787	224,419
출항	122,147	118,925	137,264	153,356	164,090	170,914	180,340	182,879	187,665	213,445	237,042
합계	241,683	226,182	262,070	294,335	312,041	324,858	346,640	359,676	362,369	401,232	461,461

자료 : 해양수산개발원, 2018, 2018 해운통계요람,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표 2-28〉 부산항 선박 입출항 추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입항	외항선	No.	27,798	26,155	27,051	27,906	28,008	27,309
		1,000GT	548,792	537,077	607,087	644,696	648,299	657,158
	연안선	No.	21,790	21,563	21,996	22,183	21,834	20,036
		1,000GT	19,091	20,096	20,848	21,348	20,834	19,683
	소계 (a)	No.	49,588	47,718	49,047	50,089	49,842	47,345
		1,000GT	567,883	557,173	627,935	666,044	669,137	676,842
출항	외항선	No.	27,821	26,106	27,065	27,930	28,036	27,381
		1,000GT	540,828	529,331	598,700	636,769	641,861	648,490
	연안선	No.	21,840	21,554	21,975	22,178	21,809	20,090
		1,000GT	19,541	20,530	21,244	21,760	21,263	19,851
	소계 (b)	No.	49,661	47,660	49,040	50,108	49,845	47,471
		1,000GT	560,370	549,861	619,944	658,529	663,124	668,341
합계 (a+b)	No.	99,249	95,378	98,087	100,197	99,687	94,816	
	1,000GT	1,128,253	1,107,035	1,247,878	1,324,573	1,332,261	1,345,183	

자료 : 해양수산개발원, 2018, 2018 해운통계요람,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실적

- 2018년 부산항은 21,662천TEU를 처리하여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 지위를 유지

〈표 2-29〉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실적

단위 : 천TEU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3,261	13,453	11,980	14,194	16,185	17,046	17,686	18,683	19,469	19,456	20,493	21,662

자료 : 해양수산개발원, 2018, 2018 해운통계요람,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 부산 내 무역항 및 연안항의 비전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2-30〉 부산항 및 부산남항의 비전 및 목표

항만	비전	세부 육성 목표
부산항	고부가가치 환적 컨테이너 허브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적컨 처리규모(연안 포함)세계 2위권 유지 • 신항의 국제적 항만비즈니스 클러스터화 (부두+배후단지+산업단지+수리조선+병커링 등) • 북항의 물류기능과 국제해양관광 기능간 균형 확보
부산남항	연안어업 거점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과 도심을 연계한 수산물 유통 지원 • 국내 최대 연안어업 거점항 기능 강화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 p.95, p.98

□ 부산항 항만 육성의 기본 방향¹⁾

- ‘컨’물동량의 단계적 신항 일원화 및 운영효율 극대화를 통해 세계 2대 환적 거점항으로 육성
- 유희부두의 특화 발전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
- 다양한 항만 서비스 산업 도입을 통한 종합서비스 항만으로 도약
- 선박의 초대형화에 안정적 대응을 위해 준설, 토도 제거 등 입항환경 개선

□ 부산항 항만기능 재정립

- 북항재개발(2단계)에 따라 양곡부두 및 자성대부두는 도심기능으로 전환
- 우암부두는 운영사 통합 등에 따른 유희화에 따라 잡화부두로 기능 변경
- 물동량 전망을 고려하여 감천항 제5부두 중 일부선석의 향후 철재 처리 기능 도입
- 잡화 부두인 신항 다목적부두의 경우 북컨~신항간 ITT운명을 위해 부두기능 중지 및 대체입지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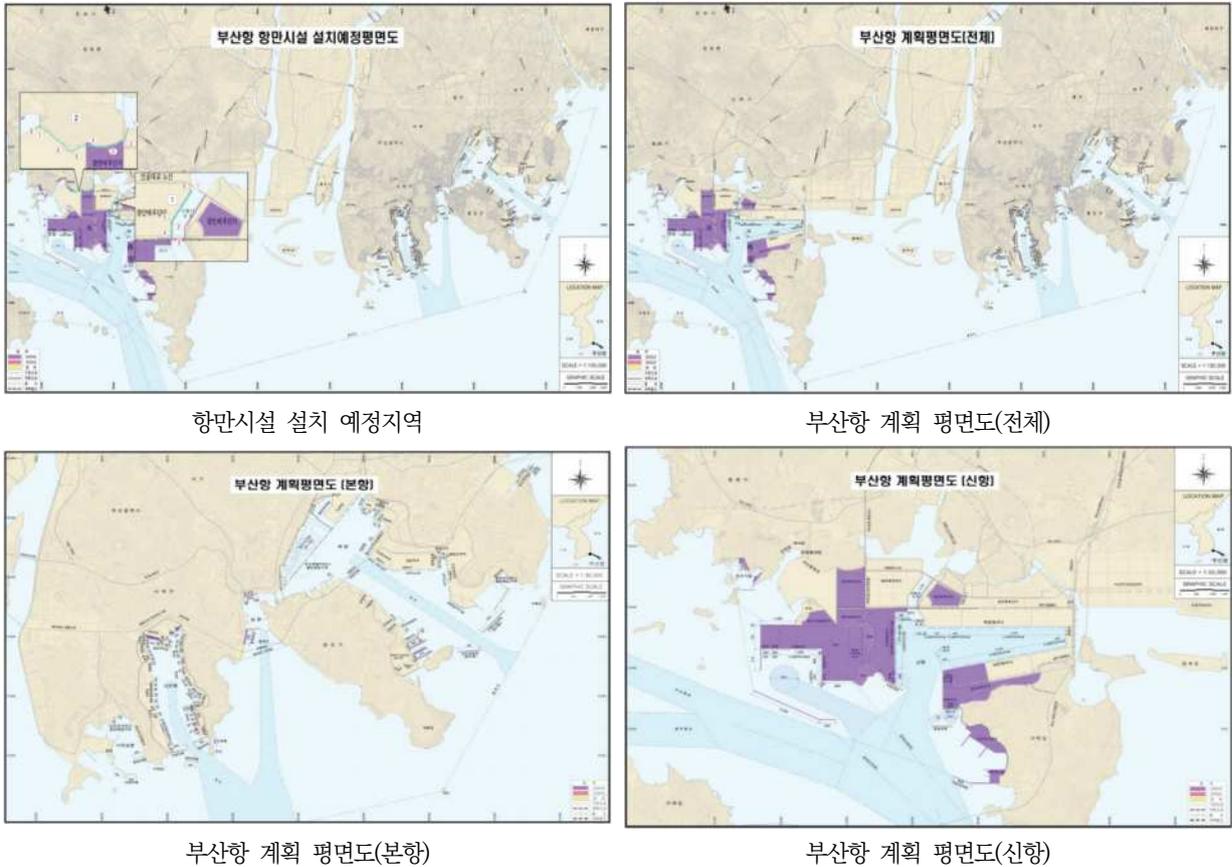
□ 부산항 항만 운영 및 관리

- 북항은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전용선, 피더선, 재래정기선 등 잡화 및 컨테이너 중심 기능 유지 및 일부 구역 항만재개발 등 기능 전환
 - 단계별 항만 재개발(1단계 공사중, 2단계(자성대) 예정), 해양산업클러스터 등으로 기능 전환
 - 용호부두는 어항과 상생가능, 해양관광자원과 연계 가능한 시설 도입

11)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참고

- 감천항은 잡화, 원목화물을 취급, 제4부두는 수산물부두로 기능 특화
 - 신항은 기존 2단계 및 3단계 사업 적기 추진을 통해 지속적 '컨'처리 기능 강화
 - 증가 물동량 수용 및 북항 '컨'기능의 단계적 일원화를 위해 2단계(2-4,2-5)사업 총 8선석 가속화
 -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산항 '컨'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서'컨'지구에 개발 예정인 3단계 사업에 타당성 검토 추진
 - 국적 아시아 역내운항(Intra-Asia) 전문선사 신항 기항 기반 확충
 - 신항 내 ITT 효율화를 위해 다목적부두 기능 변경
 - 종합서비스 항만 조성 및 글로벌 물류기업 배후단지 유치
 - LNG병커링, 대형수리조선단지 등의 조성 및 민자 유치 추진
 - 해외유수 물류기업과의 MOU 체결, 서'컨' 및 남'컨' 배후단지 신규 기업 입주 추진
 - 신항 남컨항만배후단지 구역에 위치한 LNG병커링 터미널과 잡화부두는 선박통항 및 항만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 부산항 항만 환경개선
- 양곡, 시멘트, 모래 등 분진·소음 발생화물의 환경적 악영향에 대비한 하역 및 유통 시설 확보
 - 북항, 감천항 등 노후화 부두 대상으로 분진막, 오염방지 펜스 등 설치
 - 항만 주변 및 입·출항 화물차량 관리 강화로 환경영향 확산 범위 최소화
 - 항내 수질관리 강화를 통해 이용 여건 개선
 - 부두별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어망, 산업폐기물, 생활오폐수의 유입억제
 -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및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그림 2-9〉 부산항 계획도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

부산항 계획 평면도(전체)

부산항 계획 평면도(본항)

부산항 계획 평면도(신항)

자료 : 해양수산부, 2016,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p.363

□ 부산남항 항만 육성의 기본 방향¹²⁾

- 항만시설용 부지확충, 물양장 정비를 통해 수산물 유통 지원 기능 강화, 연안어업거점 항만의 경쟁력 제고
- 배후지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 안전성 확보

□ 부산남항 항만 기능 재정립

- 현재 추진중인 친수공간 정비 및 남항해역 안전도 확보 필요
- 부산남항의 집결어선 증가로 야기될 수 있는 대형 및 소형선박의 안전 확보와 입·출항 편의를 위해 접안구역의 효율적 분리 배치 필요

12)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참고

□ 부산남항 항만 운영 및 관리

- 부산남항의 관계기관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운영·관리
- 어선 입출항 시스템 구축 및 기존 정보 통합 및 연계 추진
- 물양장 확충으로 항만이용성 및 편의성 기능 강화
- 배후부지 정비를 통해 기타시설과의 연계성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 부산남항 항만 환경개선

- 항만시설 보호지구 내 좌판 정비를 통한 클린 항만 조성
- 관광항만 조성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제공
- 항내 설치된 수산물 폐수 처리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항내 수질 개선 유지 및 강화
- 정기적인 항내 유지준설로 해양오염 저감 계획 수립

〈그림 2-10〉 부산남항 계획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16,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p.663

(2) 항로

□ 부산연안에 총 2개 지정항로와 1개 교통안전특정해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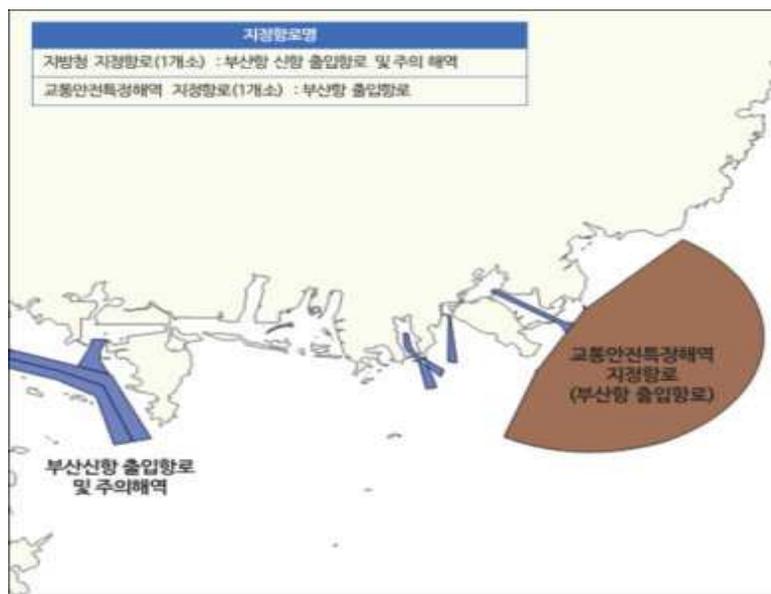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신항 항로지정 및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신항항로는 중앙분리선, 입항항로, 출항항로로 구분하여 지정
 - 동 규정에 따라 선박은 신항 지정항로를 따라 입항 또는 마산, 진해, 충무항 방면으로 항해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 또는 가덕도 등대 방면으로 항행하는 선박은 출항항로로 항행하여야 함.
 - 길이 30미터 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입출항로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해 할 수 있으나, 지정항로를 이용하여 항해할 경우에는 출항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됨.
- 부산연안에는 「해사안전법」 제10조 별표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 1개소 있으며,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항로 1개가 지정되어 있음.

〈표 2-31〉 부산 교통안전특정해역 개요

면 적(km ²)	길 이(해리)	폭(해리)	지정항로 폭(km)	속력(노트)
215	12	6	0.5~1.4	10

자료 : 해양수산부, 2015, 2015년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 연구(연안통항로 안전성 평가) 요약보고서, p.9.

〈그림 2-11〉 부산 해역 지정항로 현황



자료 : 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http://www.khoa.go.kr/komc/>) 내 항로표지 설치해역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

7) 군사활동

- 부산 해상에 해군 훈련구역 1개소, 해양경찰청 훈련구역 1개소 지정되어 있음

〈그림 2-12〉 부산 해역 해상사격 훈련구역 분포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개방해(<http://www.khoa.go.kr/oceanmap>)의 해상훈련/사격구역 공간정보

〈표 2-32〉 해군훈련구역 및 해양경찰청훈련구역 지정 개요

구분	사격장 명	구역 (좌표WGS-84)
해군훈련구역	R-100 남해안 남형제도부근 (South Coast ~ Namhyeongjedo)	34-53-00.0N, 128-57-00.0E (남형제도)를 중심으로 반경 4마일
해양경찰청훈련구역	R-143 남해안 부산연안 (South Coast ~ Busan)	아래 4개 지점 선내해면 35-07-10.0N, 129-17-00.0E 35-04-25.0N, 129-20-40.0E 34-58-20.0N, 129-14-10.0E 35-01-10.0N, 129-10-25.0E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18, 항행통보연보

- 부산 연안에 부산 기지, 진해 군항¹³⁾ 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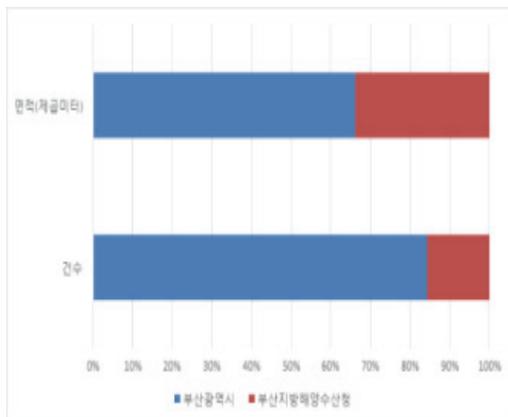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별표 1(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

8) 공유수면 점용·사용

□ 부산연안에서 허가된 점용·사용은 총 1,702건으로 면적은 6.31km²에 달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허가된 점·사용은 총 267건으로 면적은 2.14km²이고, 부산광역시에서 허가된 점용·사용은 1,435건으로 면적은 4.17km²로 대부분이 부산광역시 허가해역에서 발생하였음

〈그림 2-13〉 부산연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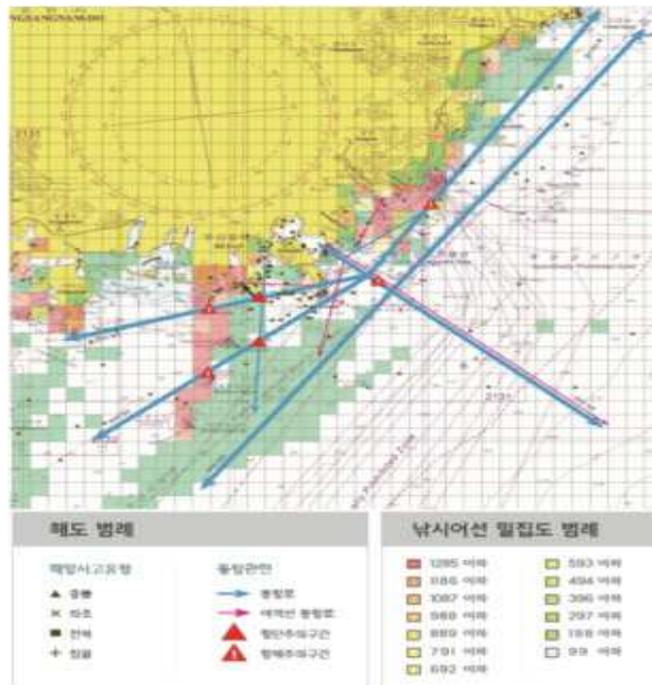
〈표 2-33〉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시군구	건수	면적(m ²)
강서구	96	841,678
기장군	367	2,706,827
남구	267	68,420
동구	447	7,982
사하구	55	770,300
서구	53	420,364
수영구	91	193,596
영도구	86	462,553
중구	26	47,332
해운대구	214	789,642
합계	1,702	6,308,694

9) 안전관리

- 부산항 항계 인근에는 통항로가 집중되어 있으며,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으로 여객선 통항로가 밀집되어 있어 안전관리 필요
- 또한, 화물선과 탱커선 등 대형선박 밀집도가 높으며 소형 선박과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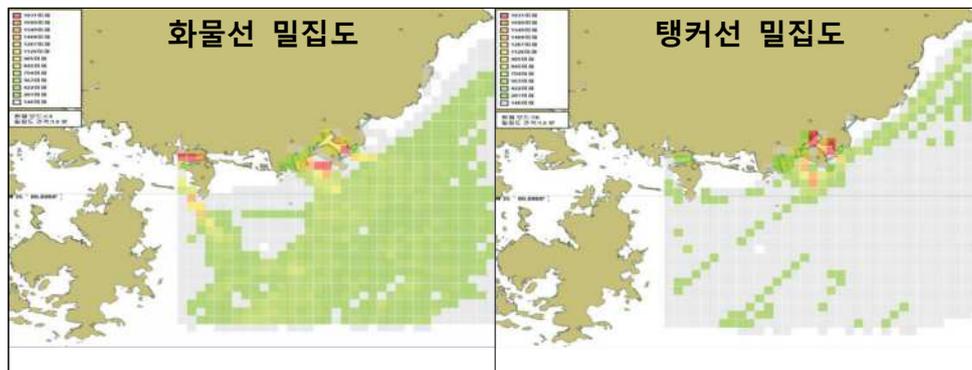
〈그림 2-14〉 부산연안 안전관리 필요 해역



〈부산 해역 부근〉

자료 : 해양수산부, 2018, 2018년 해양공간계획체계 구축사업

〈그림 2-15〉 부산 해역 화물선·탱커선 밀집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18, 2018년 해양공간계획체계 구축사업, 00p

- 부산지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총 5곳으로, 송정,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임
- 수상레저활동 금지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이며, 금지대상은 모든 수상레저기구임
 - 금지구역은 해수욕장안전수역 및 레저활동금지구역 부표이내 해역임(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다대포는 120m이내 해상)

〈표 2-34〉 부산지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현황

구분	총계	장소	금지기간	금지구역 지정 세부구역	비 고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
해수욕장	5	송정·해운대·광안리· 송도·다대포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수욕장 안전수역 및 레저활동금지구역 부표 이내 해역 (해안선으로부터 100m이내 해상, 다대포는 120m이내 해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 부산지역 해양레저활동 금지대상수역은 없으며, 허가대상수역은 10곳임

〈표 2-35〉 부산지역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현황

고시번호	담당	시행	항구명	소재지 주소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4-3호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2015.1.7	대변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5-7호	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2015.1.23	부산항	부산시 동구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5-7호	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2015.1.23	송정항	부산 해운대구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5-7호	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2015.1.23	청사포항	부산 해운대구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5-7호	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2015.1.23	우동항	부산 수영구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5-7호	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2015.1.23	민락항	부산 수영구
창원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5-3호	창원해양경비안전서	2015.2.12	천성항	부산시 강서구
창원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5-3호	창원해양경비안전서	2015.2.12	대항항	부산시 강서구
창원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5-3호	창원해양경비안전서	2015.2.12	눌차항	부산시 강서구
창원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5-3호	창원해양경비안전서	2015.2.12	부산신항	부산시 강서구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1) 분석 개요

(1) 분석 방법 및 절차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대상으로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과 수요 조사
 - 국가계획 : 국토종합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부산 북항 등 마리나항만에정구역 지정 6개소, 기장군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부산항 신항 개발 및 부산북항재개발계획 등임.
 - 광역시 및 도 계획 : 광역시 및 도 종합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수요 중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사업만 선별
 - 공유수면매립, 점용사용 등을 기반으로 해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를 확인
 - 도서관관광개발사업은 직접적인 이용 대상을 해양공간으로 하지는 않지만, 도서로 접근을 위해서 해양공간을 활용하게 되므로 해양공간 이용·개발 수요로 반영
 - 다수의 계획에 중복적으로 반영된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는 가장 최근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

〈표 2-36〉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연안·해양 이용·개발 관련 주요 계획

기관명	계획명	근거법령
국가계획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2010-2019)	연안관리법 제21조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제3차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2014-2018)	수산업법 제50조

기관명	계획명	근거법령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항만법 제5조
	제1차(2015-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마리나항만법 제4조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8)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부산광역시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권역계획	관광진흥법 제51조
	도서개발사업계획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도시·군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시도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업법제4조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법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부산해양관광실행계획	-	
기초 자치단체	도시·군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업법제4조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관리법
	지난 3년간(2016~2018) 업무계획	-

(2) 수요 분석 결과

- 수산 관련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가 전체 24건 중 10건으로 가장 많고, 소요예산은 항만이 4조 3,54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표 2-37〉 부산 연안·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구분		해양관광	마리나	수산	에너지 개발	항만개발	환경 관리	기타	총합계
사업특성	개수	5	1	10	1	1	4	2	24
	면적(km ²)	30.03	0.09	45.95	불명	5.59	0.84	불명	52.50
	예산(백만원)	167,400	162,300	449,019	750,000	4,354,000	18,500	148,400	6,049,619

2) 분야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1) 연안관리

- 10개 연안 시·군·구 모두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완료¹⁴⁾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지정은 관리해역이 882.01km²로 가장 많고 이용 연안해역이 86.94km² 두 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기능구는 해양수질관리구가 243.96km²로 가장 많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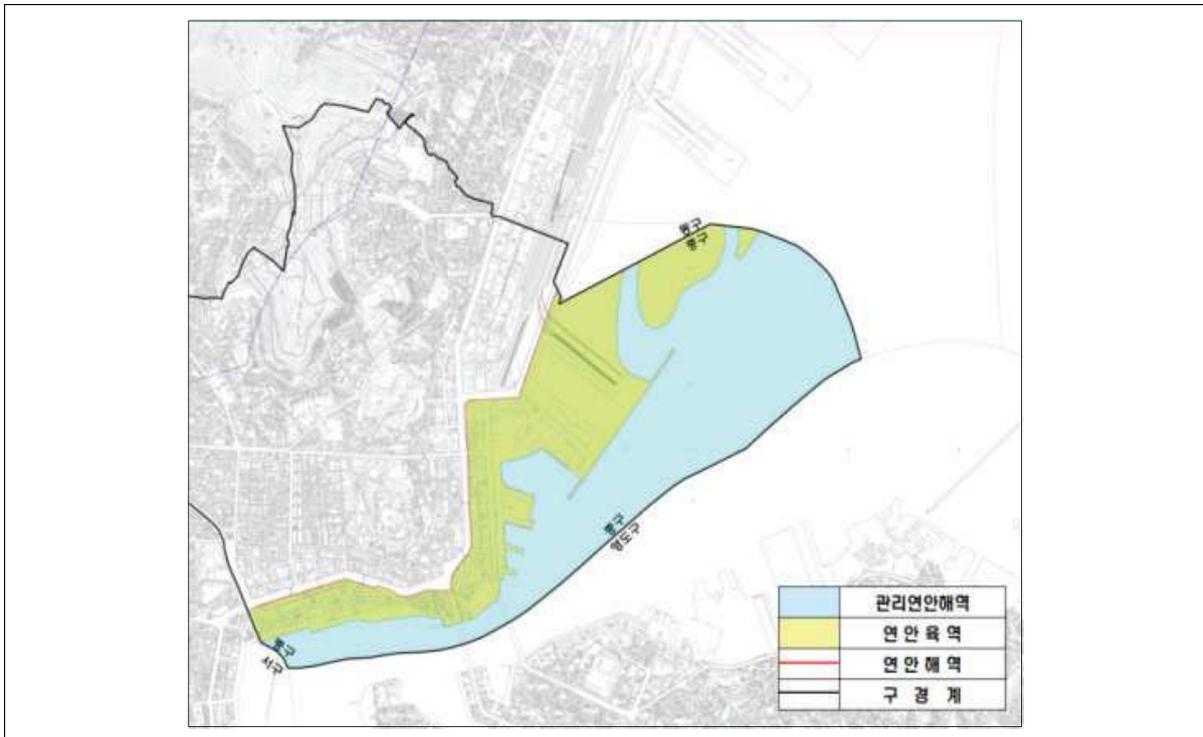
〈표 2-38〉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지정 현황

연안용도해역	면적(km ²)	기능구	면적(km ²)
이용연안해역	86.94	항만구	248
		어항구	1.48
		항로구	13
		해수욕장구	0.37
		레저관광구	0.28
		광물자원구	72.8
		해중문화시설구	-
보전연안해역	27.44	수산생물자원보호구	-
		해양생태계보호구	-
		경관보호구	-
		공원구	-
		어장구	25.27
특수연안해역	11.26	해양수질관리구	243.96
		군사시설구	-
		산업시설구	-
관리연안해역	882.0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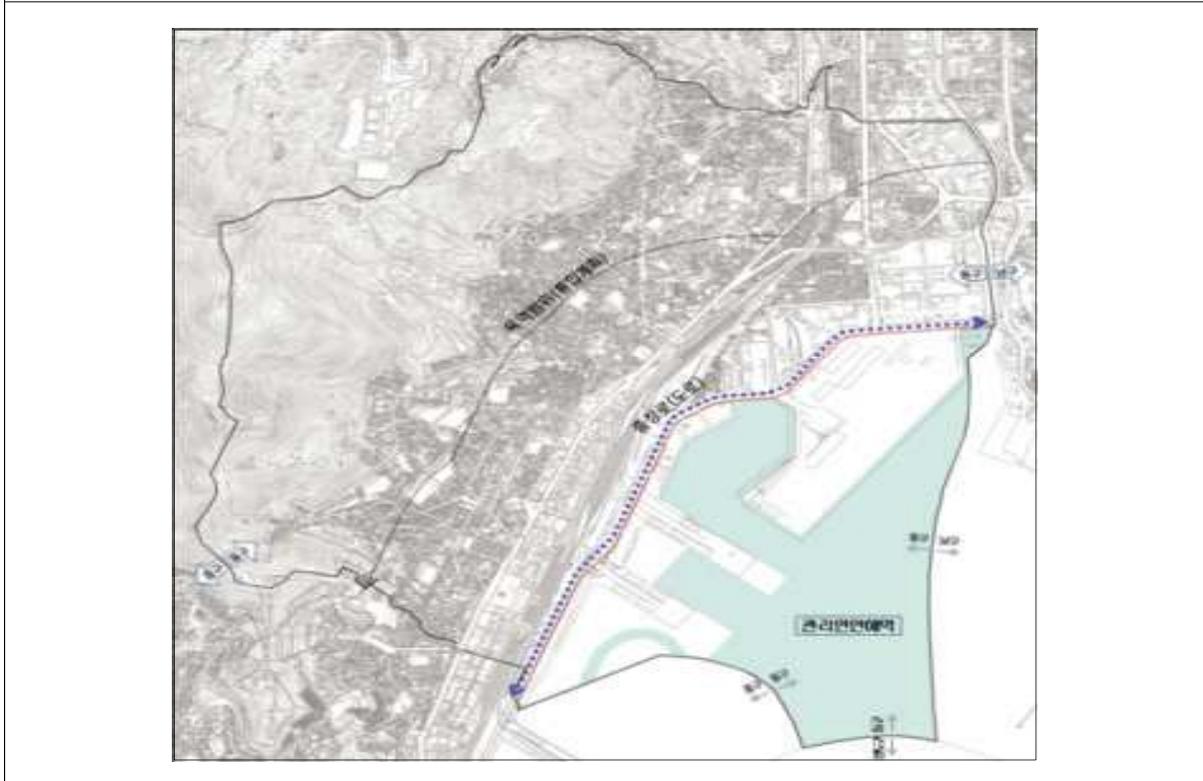
주 : 기능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고 기능구가 지정되지 않은 해역이 있어 기능구 면적 합과 연안용도해역 면적 합이 일치하지 않음.

14) 남구 미고시

〈그림 2-17〉 부산광역시 연안용도해역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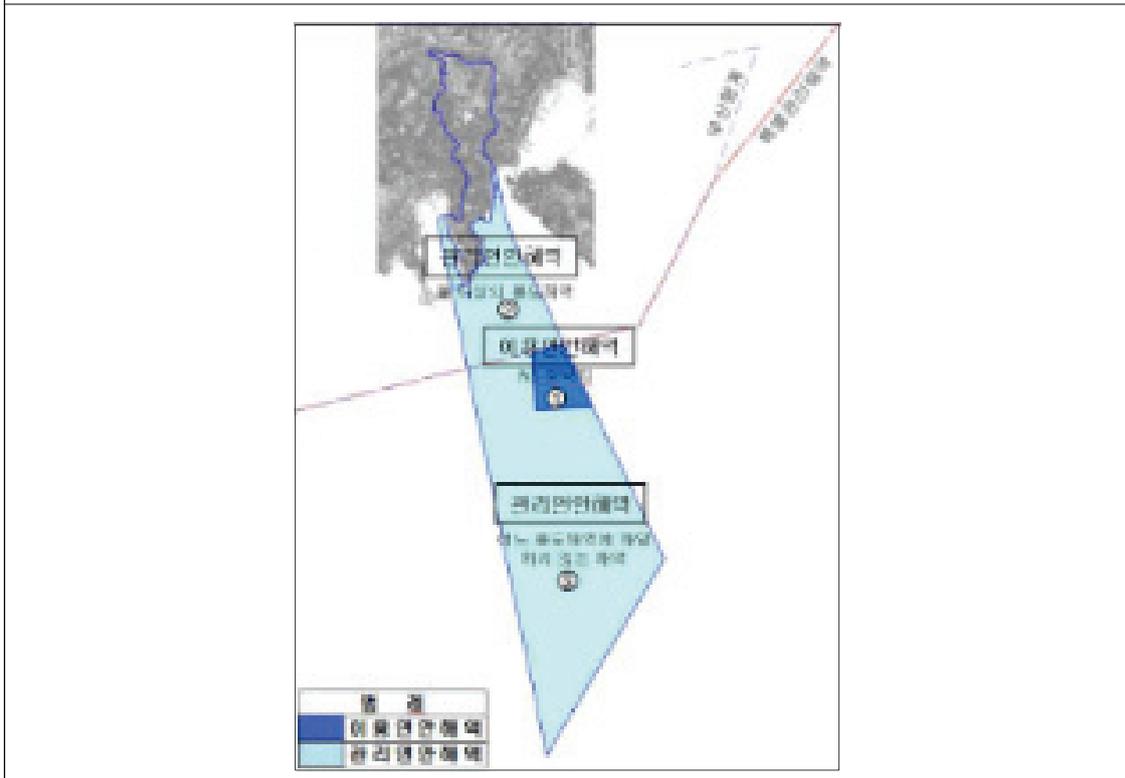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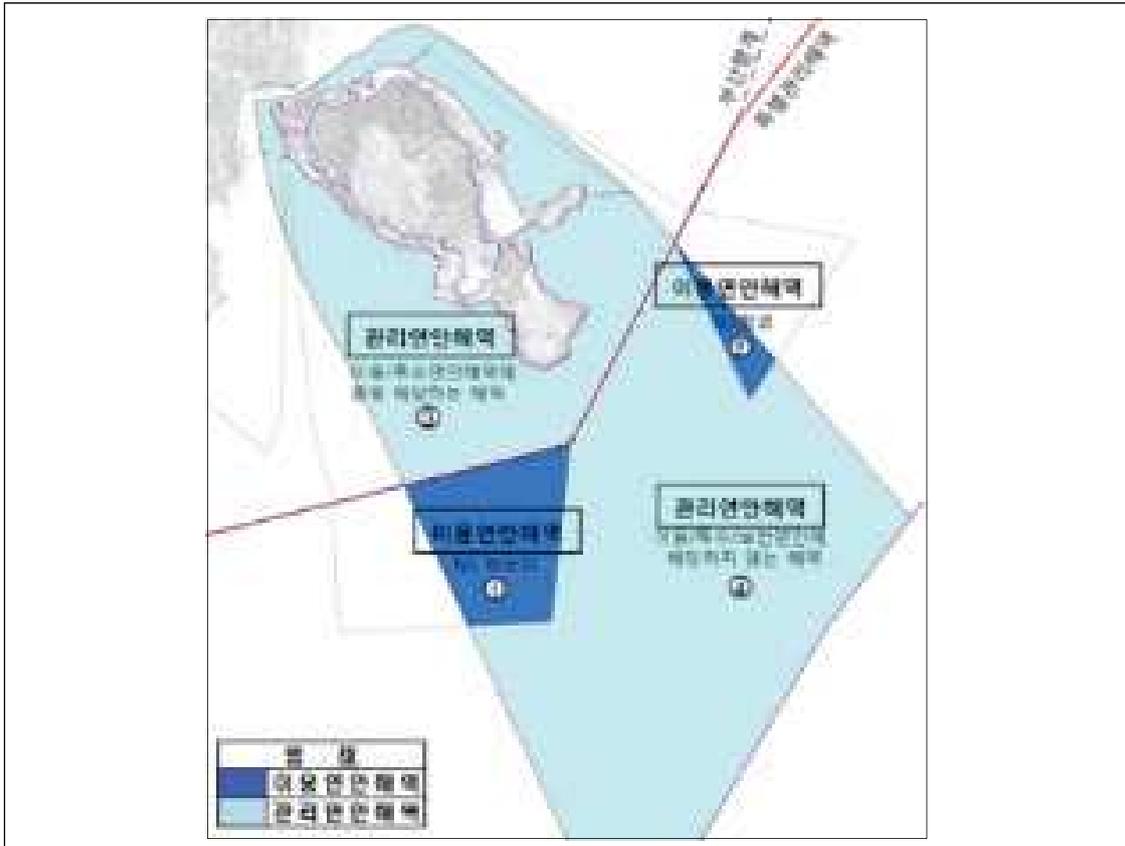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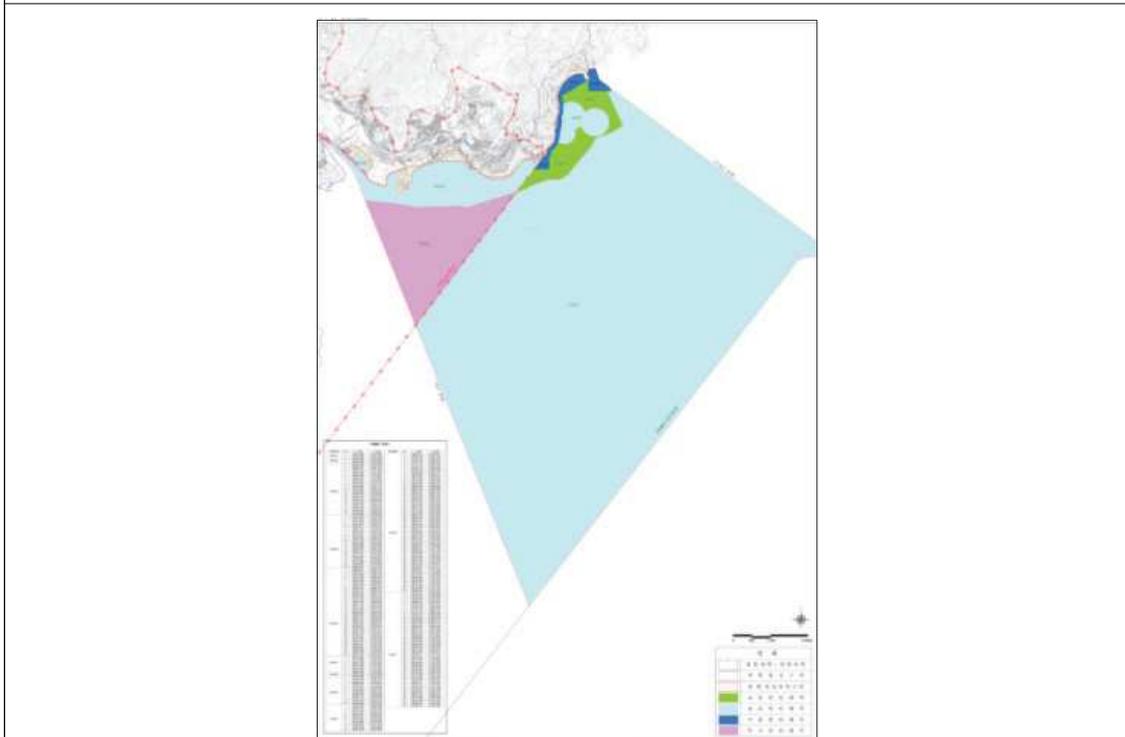
(기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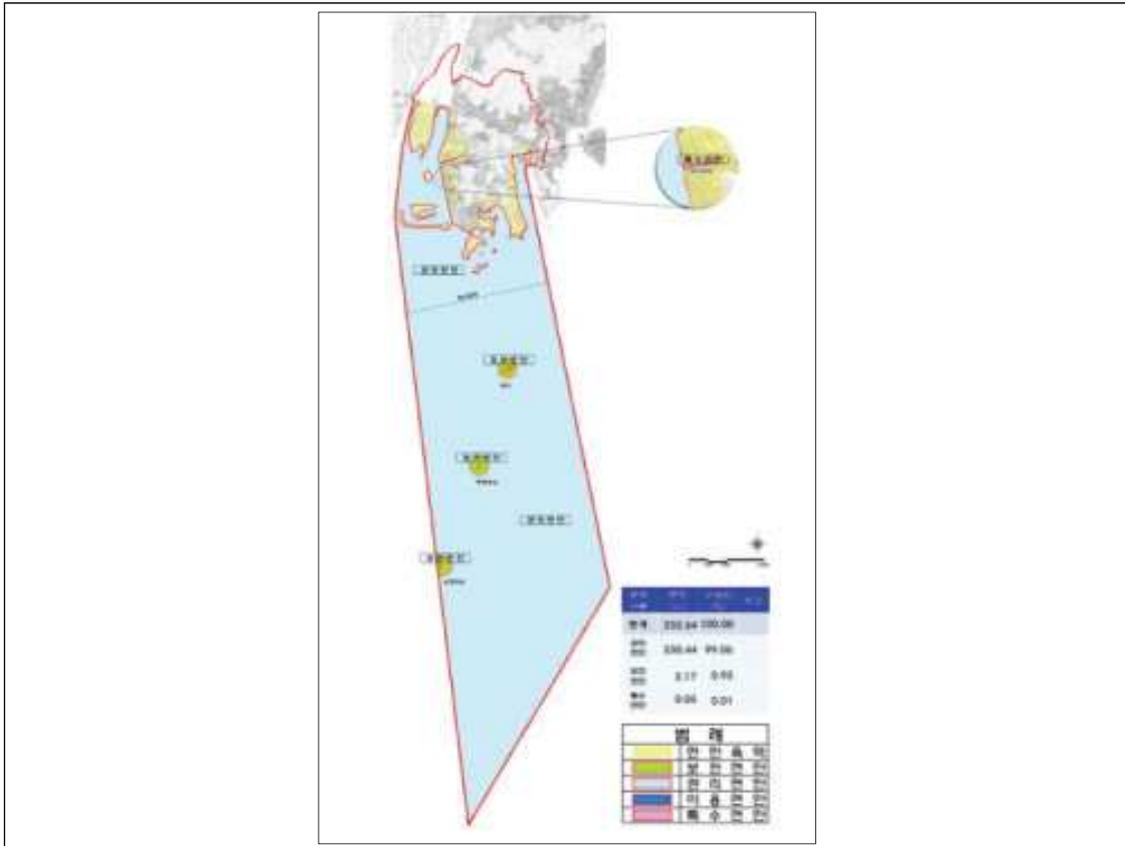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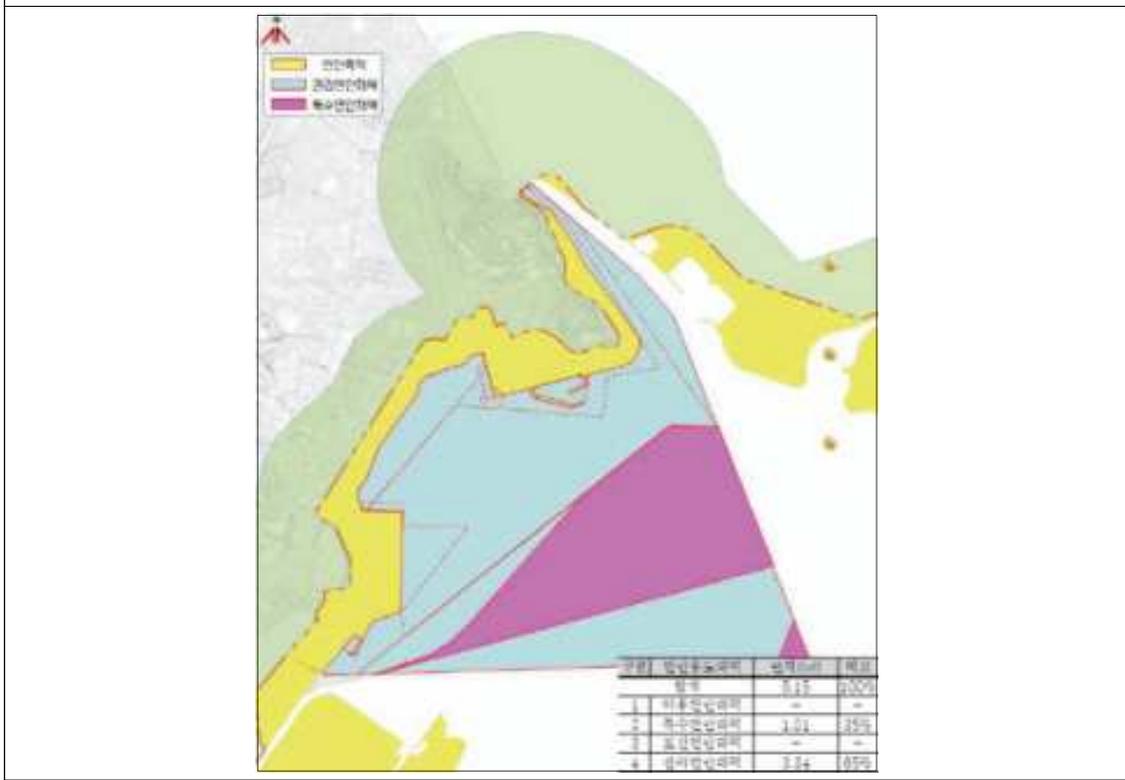
(영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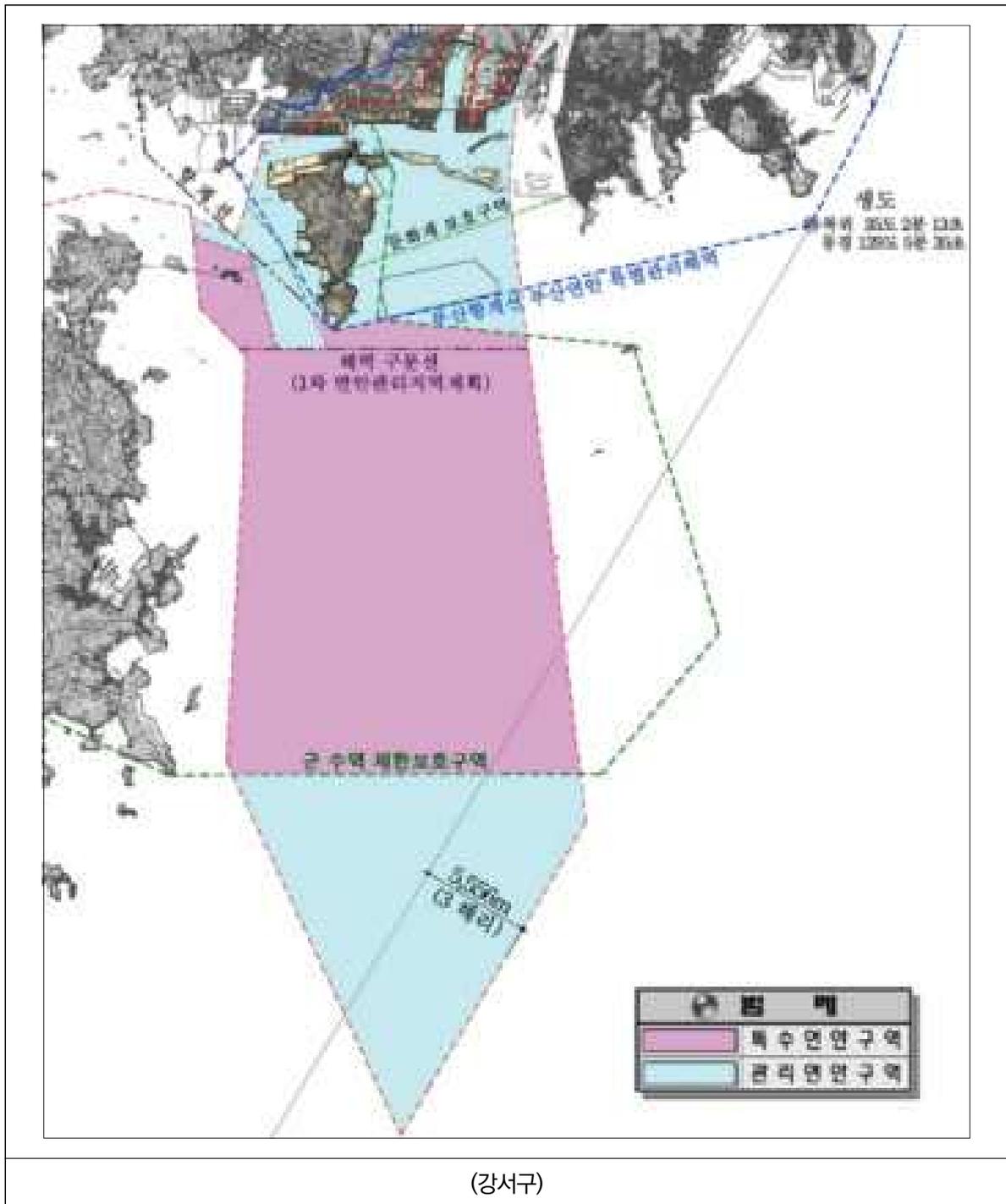
(해운대구)



(사하구)



(수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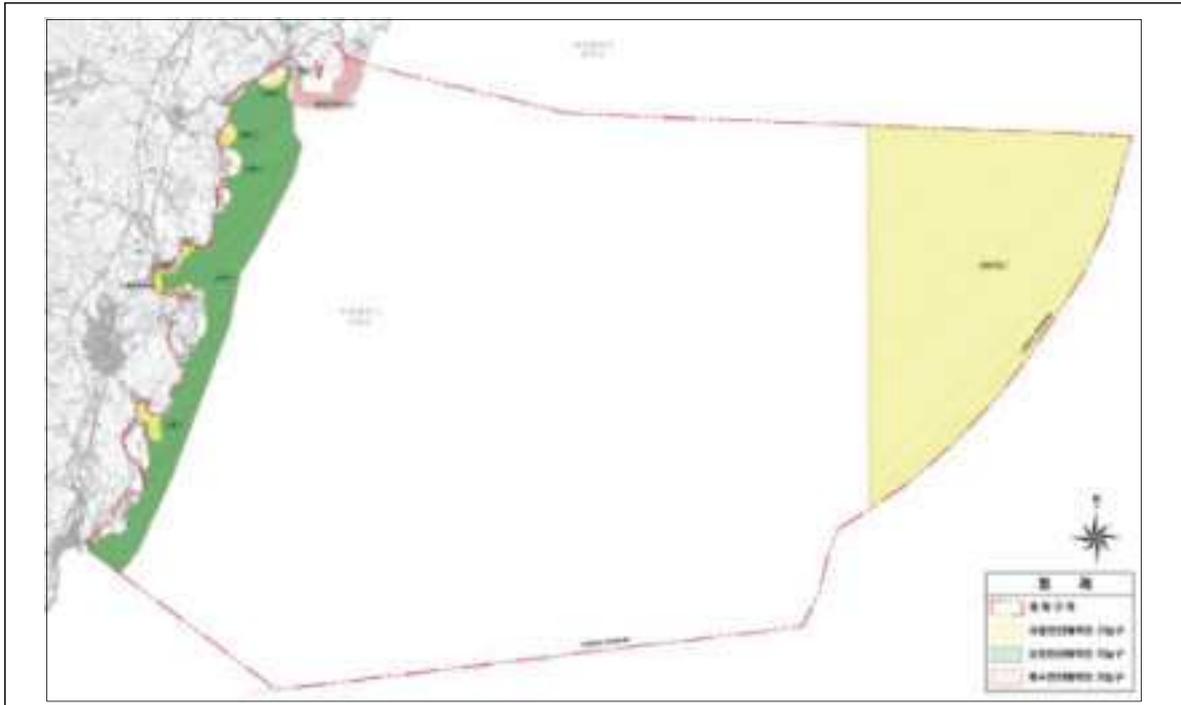
〈그림 2-18〉 부산광역시 연안해역기능구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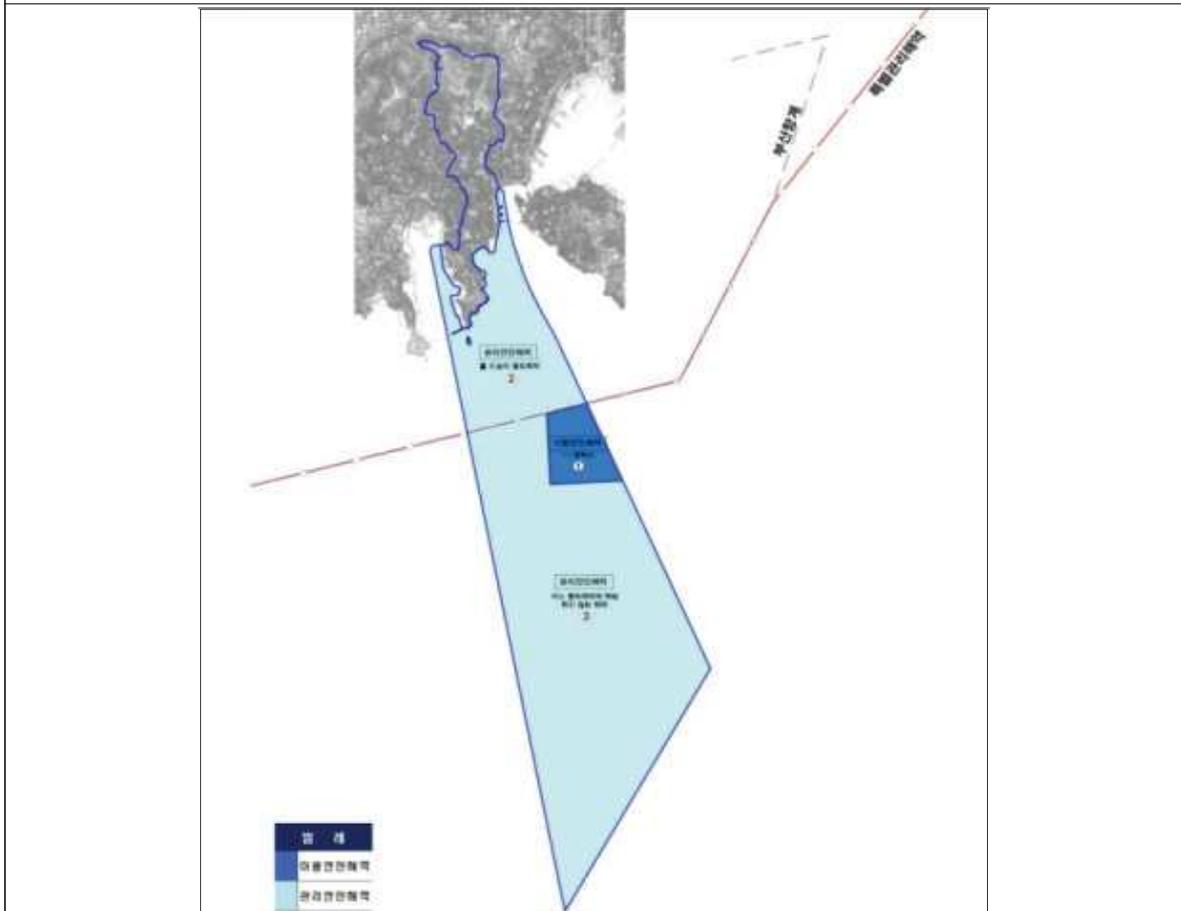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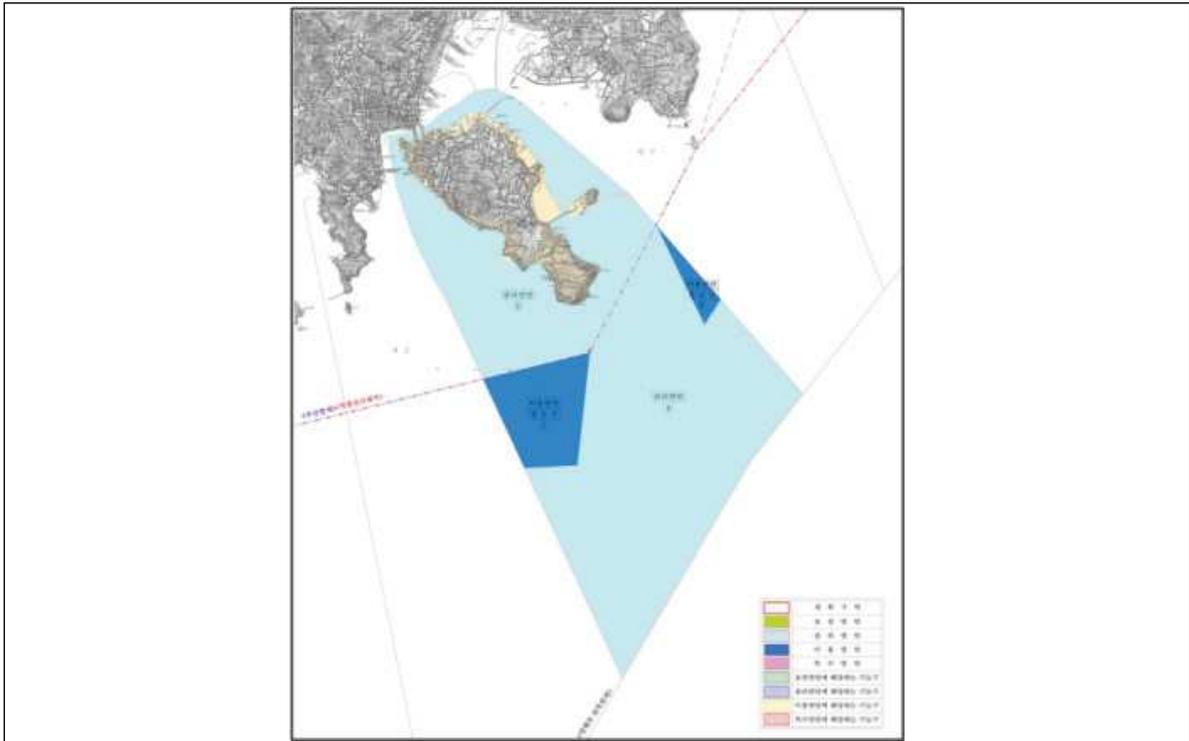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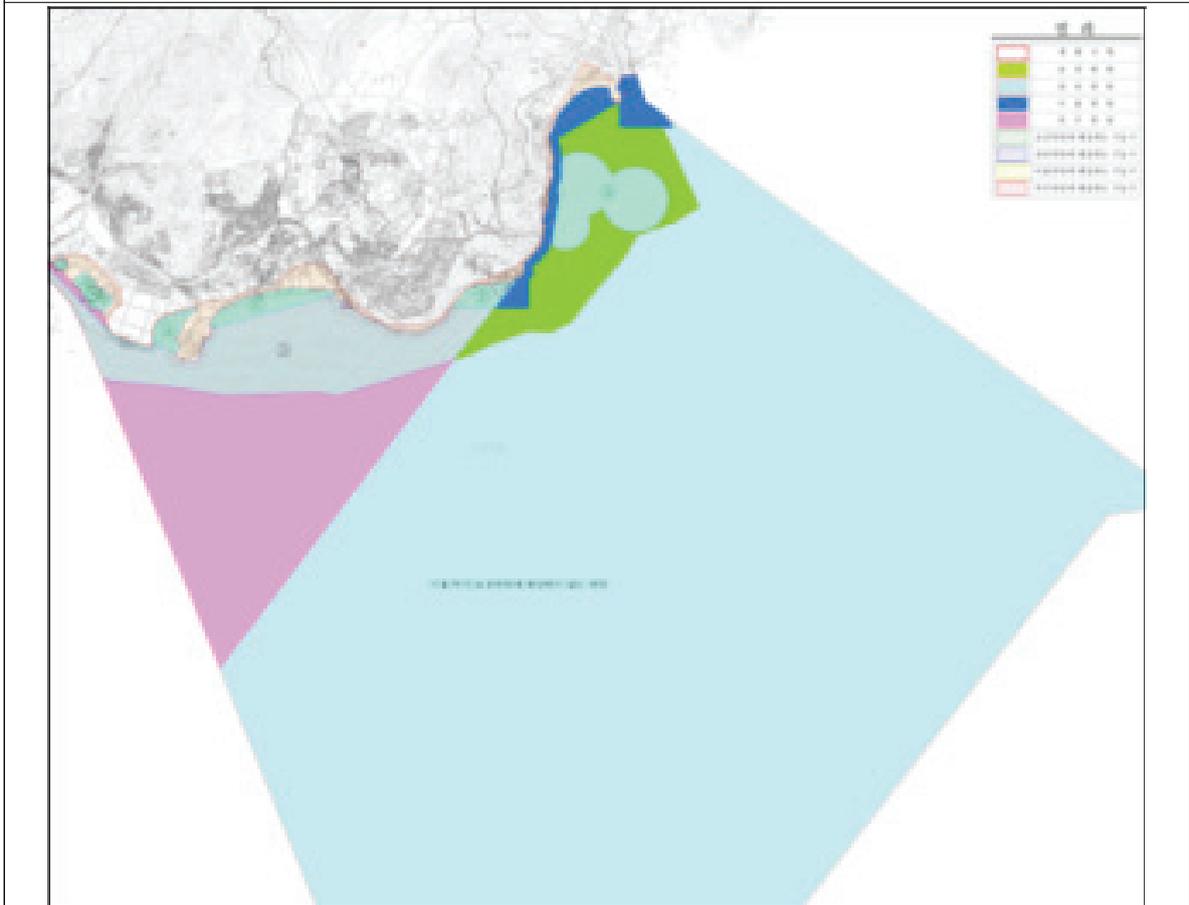
(기장군)



(서구)



(영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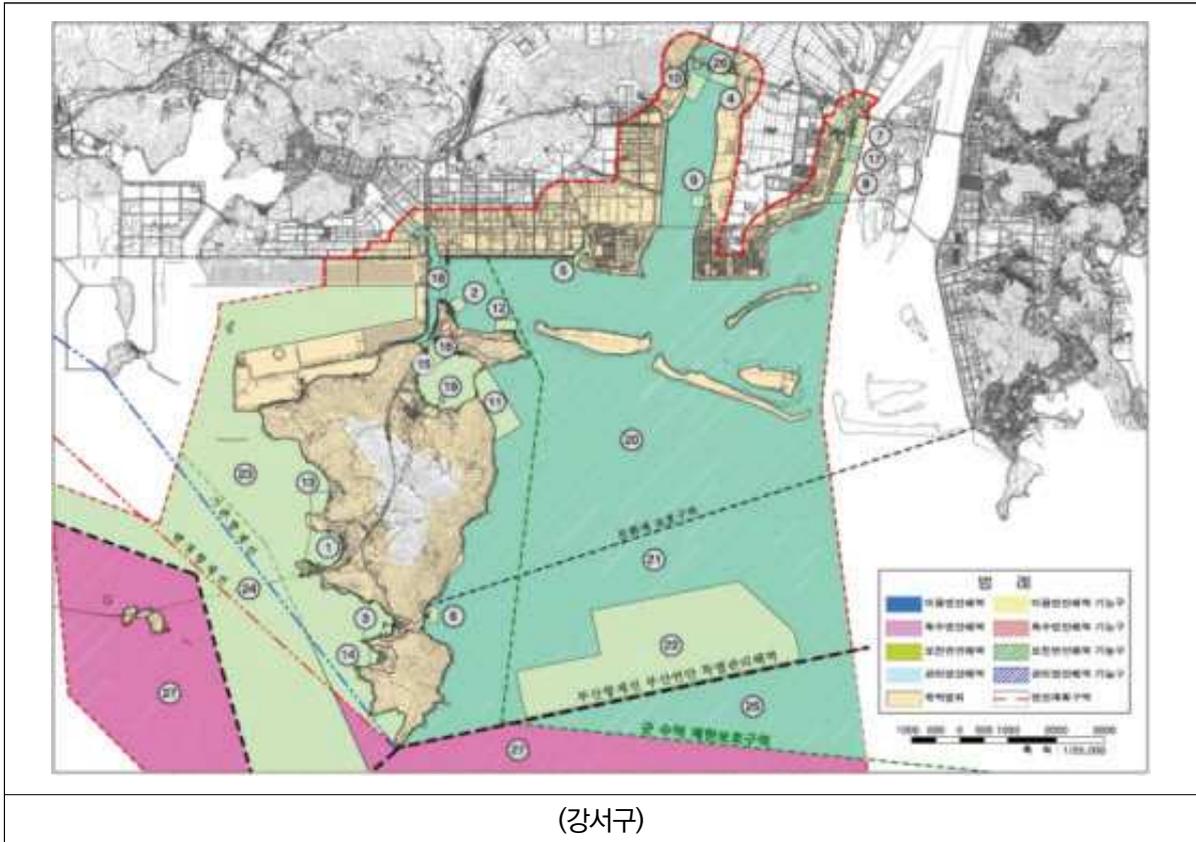
(해운대구)



(사하구)



(수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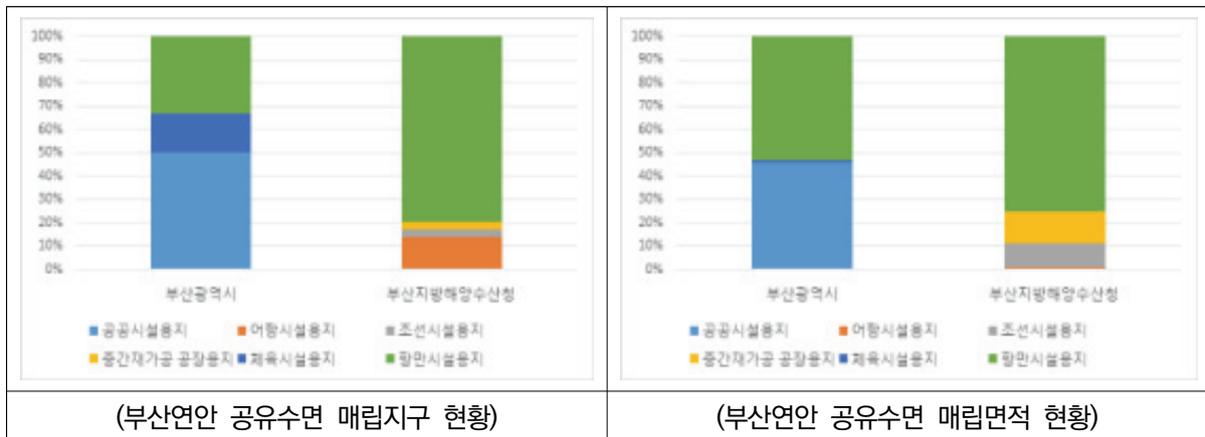
(2) 공유수면 매립

- 부산연안에 예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매립수요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11~'21)에 따르고 있으며, 반영지구수는 35개소, 매립예정면적은 5,98km²에 달함.
 - 35개소 중 기본계획 반영지구는 7개소, 0.09km²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28개소, 5.89km²가 타 법 의제를 통해 진행되는 매립사업임.
 - 항만구역내에 위치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매립면허를 관리하는 매립예정지구는 총 29개소로 5.91km²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구역 외에서는 6건 0.07km²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표 2-39〉 부산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매립목적	면허관청					
	부산광역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합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공공시설용지	3	31,790	-	-	3	31,790
어항시설용지	-	-	4	77,153	4	77,153
조선시설용지	-	-	1	583,489	1	583,489
중간재가공 공장용지	-	-	1	796,000	1	796,000
체육시설용지	1	645	-	-	1	645
항만시설용지	2	37,020	23	4,449,051	25	4,486,071
총합계	6	69,455	29	5,905,693	35	5,975,148

〈그림 2-19〉 부산연안 공유수면 매립수요 현황



(3) 해역이용협의

□ 2013년 이후 부산연안에서 이루어진 해역이용협의는 총 99건으로 이중 약 62%에 해당하는 61건이 항만구역에 해당

○ 전체 99건 중 일반이용협의는 61건이고 간이협의는 38건임.

〈표 2-40〉 부산연안 해역이용협의 실적 현황

구분		항만구역	항만구역 외	전체
2013년		17	10	27
2014년		8	7	15
2015년		15	4	19
2016년		14	8	22
2017년		7	9	16
합계	소계	61	38	99
	간이	22	16	38
	일반	39	22	61

(4) 항만 개발

- 부산연안에는 무역항 1개소, 연안항 1개소, 마리나항 1개소, 신항만 1개소 등 총 4개소에서 항만개발이 추진 중
 - 부산연안에는 국가관리 무역항인 부산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인 부산남항, 운영 중인 마리나항만으로 남천, 해운대(거점마리나), 수영만 등 3개소가 있고 이중 운촌마리나항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 현재 건설 중인 부산 신항만과 더불어 부산 제2신항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음
 - 북항 재개발 및 이와 연계한 부산항 기능 재정립, LNG 병커링 및 대형수리조선단지 조성 등을 통한 종합서비스 항만 도모

〈표 2-41〉 부산연안에 위치하는 항만개발수요

항 구분	항명	개발규모(㎡)		
		합계	해상	육상
무역항	부산항	220,959,000	212,675,000	8,284,000
무역항	부산항(신항)			
연안항	부산남항	1,400,000	1,304,000	96,000
마리나항만	해운대항	141,120	90,558	50,562
합계		222,500,120	214,069,558	8,430,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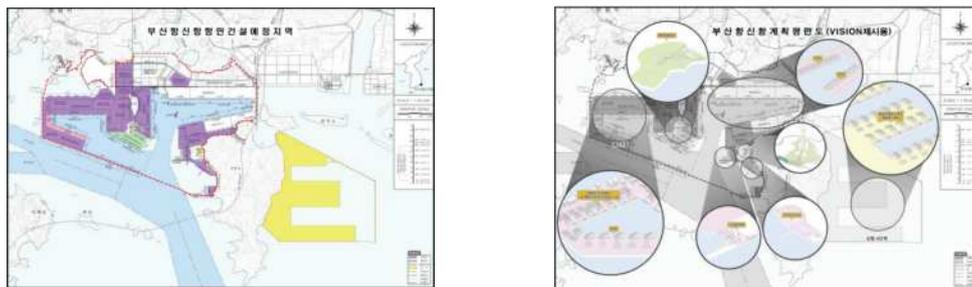
자료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제1차(2015-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그림 2-20〉 항만별 개발계획도



- 부산항 신항만은 부산 강서구 북서측 해역 및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동아시아 최첨단 물류허브 항만 육성을 목표로 계획됨.
 - 육성방향은 동북아 게이트 물류허브 항만 육성, 고효율 스마트 항만 건설, 배후부지·항만서비스 기능 다양화임.
 -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형 항만 육성을 위해 AMP설치, 항만장비의 청정엔진 사용, LNG 병커링 기지 구축, 친수공간 확보 등을 추진

〈그림 2-21〉 부산항 신항만 건설 개요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5) 어항 개발

- 부산연안에 위치하는 어항은 총 26개소로 이중 완공된 어항은 13개소이고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13개소로 동일함.
- 국가어항의 경우 3곳 중 1곳이 개발이 진행 중이고 지방어항은 13곳 중 3곳, 어촌정주어항은 9곳에서 어항 개발이 진행 중임.

〈표 2-42〉 어항 개발

부산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지정	48	3	13	10	22
완공	13	2 (다대포, 대변)	10	1	-
미완공	35	1 (천성항)	3	9	22

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 어항현황(2017년말 기준); 해양수산부, 시·도별 국가 및 지방어항 건설 추진 현황(2017년말 기준)

(6) 해양관광 및 레저

-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된 해양관광 및 레저관련 계획은 총 6건이 있으며, 광안리, 일광, 임랑 등 해수욕장 개발계획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영도구 해상낚시복합타운조성계획, 송도 해수욕장 구름(출렁)다리 복원
- 광안리 해수욕장 개발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에는 공유수면매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도 해상낚시복합타운 조성 사업에서는 낚시잔교, 가두리시설, 수중전망대 등 수면의 상층과 하층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표 2-43〉 부산연안 해양관광 및 레저 개발계획

사업명	사업계획	소요예산	사업기간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규모 : 234,516㎡ (육상 142,274㎡ 해상 92,242㎡) -공유수면 매립 : 7,500㎡(공공시설용지) -사업내용 : 계류장, 수리시설, 호텔, 컨벤션 등의 복합 마리나시설 정비	1,623억원 (전액민자)	2018-2022
광안리 해수욕장 정비	-공유수면 매립 : 645㎡(공공시설용지)		2011-
일광 해수욕장 조성	-해수풀장, 다이빙대, 오토캠핑장, 게스트하우스 조성, 총사업비	200억원	2015-2020
임랑 해수욕장 조성			
송도 구름(출렁)다리 복원	-출렁다리 복원 L=127m, B=2m	38억원	2016-2019
영도 해상낚시복합타운조성	-낚시잔교, 가두리시설, 수중전망대, 캠핑장 등 시설	118억원	2019-2022
해운대 마린파크	-방파제 650m, 호안 780m, 친수시설(전망대, 해상수영장, 마리나, 수변공원 등)	944억원	2018-2021
수상관광호텔 '웨일크루즈' 사업	-관광숙박시설 29,779.2(지하1층, 지상 3층) -공유수면점용사용 7,800 -선박 9,000톤급(130m*60m)	1,050억원 (전액민자)	2011-
태종대 감지해변 유람선 선착장 조성	-유람선 선착장 1식 250m	268억원	2020-2024

자료 : 각 시군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부산광역시, 부산해양관광실행계획, 2018.

(7) 신재생에너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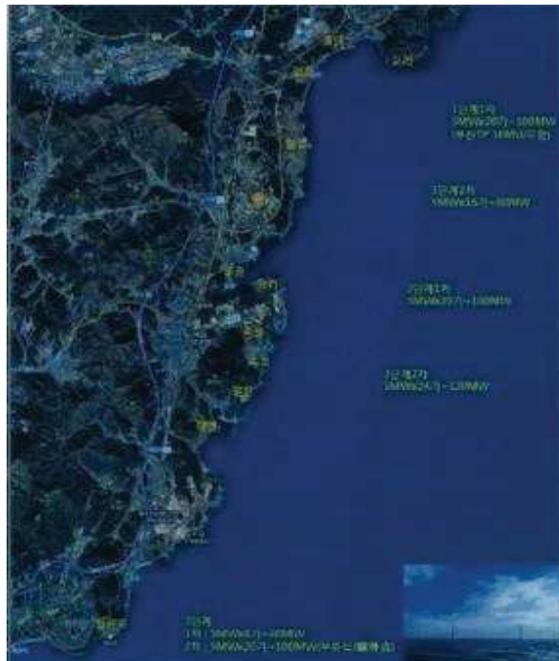
- 해운대에서 기장군 일원 해상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540MW 규모로 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중
 - 한국남부발전과 부산광역시가 재생에너지 사업개발 공조체제 구축하여 사업 추진
 -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를 우려하는 어민들과 기장군의 반대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해운대구 연안에 청사포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17. 9. 29.)를 완료함

〈표 2-44〉 부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

구분	시설규모	발전용량
고리해상	5MW*20기	100MW
동백리해상	5MW*16기	80MW
학리해상	5MW*20기	100MW
대변해상	5MW*24기	120MW
청사포해상	1차 : 5MW*8기=40MW 2차 : 5MW*20기=100MW	140MW

자료 : 뉴데일리, 2017.01.09.(http://pk.newdaily.co.kr/svc/article_print.html?no=2017010900046), 부산시 클린에너지산업과 문의내용(2019.8.23.) 재구성

〈그림 2-22〉 부산 해상 풍력발전단지 위치



자료 : 뉴데일리, 2017.01.09.(http://pk.newdaily.co.kr/svc/article_print.html?no=2017010900046)

(8)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수요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정화사업, 어패류 군락지 조성 등의 사업수요가 6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4건은 기장군지역에서 바다목장조성 사업, 바다숲 조성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기장군 장안읍 해상에서는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포함해 2건의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추진중이고 15,000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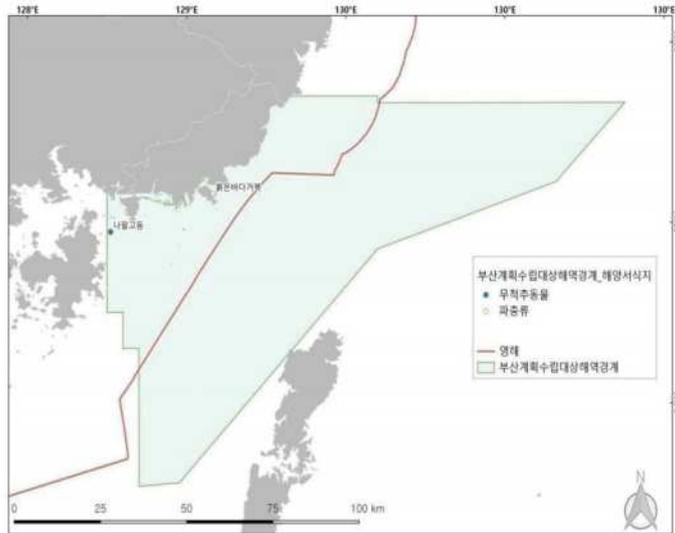
〈표 2-45〉 해양환경 보호 및 복원 수요 상세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군구	예산(백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양식어장 정화 351ha 등	매년	강서구	173
해조류, 패류, 어류 군락단지 조성	-장안권역 바다목장 조성 -해조장(바다숲)조성, 생태자원 조성장, 해조장 보호시설, 자원가입 및 관리	2014-2018	기장군	10,000
해조류, 패류, 어류 군락단지 조성	-장안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생태자원 조성장, 자원가입 및 관리	2014-2018	기장군	5,000
해조류, 패류, 어류 군락단지 조성	-바다숲 조성 등 연안해역 관리 -조식동물구제, 효과조사, 모니터링등	2018-2018	기장군	280
수산종묘, 패류 매입 방류 및 어장 정화사업	수산종묘, 패류 매입 방류(전복, 개량조개), 양식어장 정화 300ha 등	매년	기장군	486
수산자원서식환경 조성 및 건전한 수산자원 관리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한 자원 증강 및 어업인소득증대 도모 -인공어초시설(48ha, 850백만원), 어초어장관리(200ha, 150백만원), 적지조사(200ha, 25백만원), 수산종자방류(936천미, 455백만원)	매년	전해역	1,480

□ 영도 인근 및 가덕도 서편으로 해양보호생물 출현 2곳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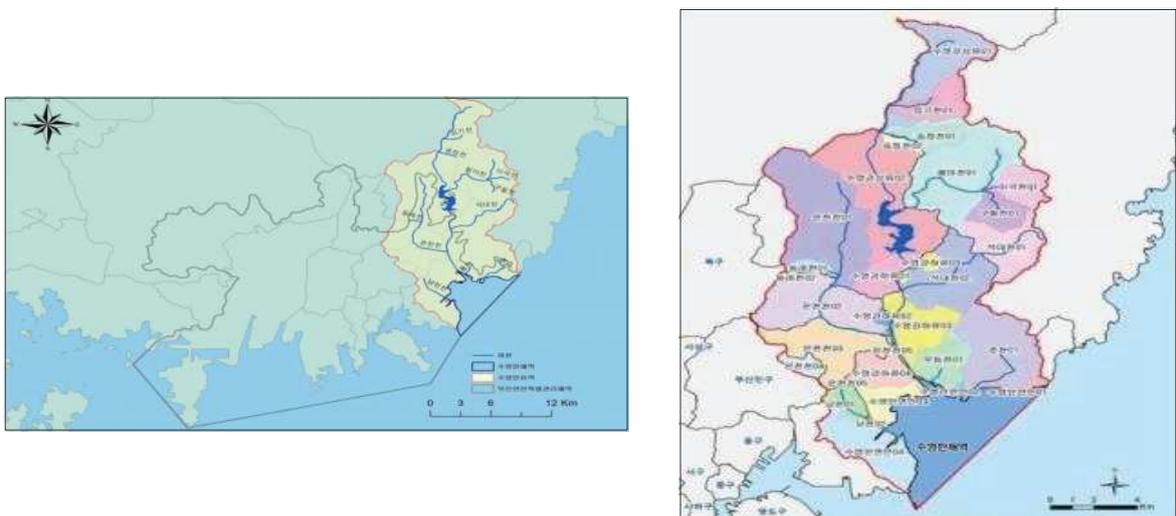
- 부산 영도 인근에는 파충류인 붉은바다거북, 가덕도 서편으로는 무척추동물인 나팔고 등 확인

〈그림 2-23〉 부산 해역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 부산광역시는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영만에 대하여 2015년부터 연안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
 - 목표수질(화학적 산소요구량: 1.35mg/L) 달성을 위해서 수영만 유역의 오염원 배출감소를 위한 삭감 대책 사업 추진
 -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개발계획 기술 검토, 거버넌스 운영 중

〈그림 2-24〉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좌)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우)



자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ocean/oceanstatus013>);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방안 1단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실증실험을 위해 2019년 6월에는 40분동안 수문을 개방
- 2단계 연구는 1단계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낙동강 하구 환경관리를 위한 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임

〈그림 2-25〉 낙동강 하굿둑 현황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2019. 6. 5., '낙동강 하굿둑 수문 40분간 연다....실증 실험 추진'

4. 해양공간관리 현안

1) 일반주민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부산 지역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공간인식, 해양활동 간 갈등, 해양공간계획제도 및 해양공간관리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조사 대상 : 부산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포함 총 697명

* 부산 중 해양을 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지역주민 677명, 공무원 : 20명)

○ 조사 기간 : 2018년 10월~11월(1개월)

○ 조사 방법

- 지역주민 :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개별면접조사
- 공무원 :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2) 설문조사 결과

가. 해양공간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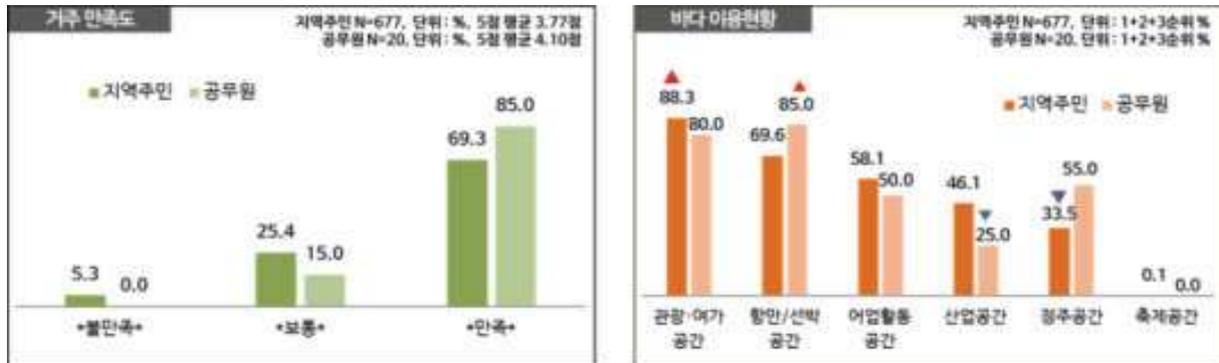
□ 거주 만족도 및 부산 바다 이용현황

○ 부산지역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거주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77점, 4.10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만족’ 69.3% > ‘보통’ 25.4% > ‘불만족’ 5.3%로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 ‘만족’ 85.0% > ‘보통’ 15.0%로 대다수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바다 이용현황으로는 지역주민의 경우 ‘관광·여가 공간’이 8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항만/선박 공간’(69.6%), ‘어업활동 공간’(5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경우 ‘항만/선박 공간’이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관광·여가 공간’(80.0%), ‘정주공간’(5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6〉 지역 주민 및 공무원의 거주 만족도, 부산 바다 이용현황



□ 부산 바다 고유 자원 및 바다 공간 지역주민 도움 여부

- 부산 바다 고유 자원에 대한 의견은, 지역주민의 경우 ‘해양레저 관광자원’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 ‘에너지시설 등 산업자원’이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바다 공간이 사람들에게 준 다양한 혜택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 기준으로 지역 주민은 3.72점, 공무원은 3.35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긍정’ 64.0% > ‘보통’ 30.4%, ‘부정’ 5.6%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경우 ‘긍정’ 45.0% > ‘보통’ 40.0% > ‘부정’ 15.0% 순으로, 지역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7〉 부산 바다 고유 자원 및 바다공간 혜택 인식도



□ 부산 바다와의 유대감 및 이용/개발을 통한 생태계 변화 의견

- 부산 바다와의 유대감은 5점 만점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3.05점, 공무원은 3.95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보통’ 36.9% > ‘유관’ 33.8% > ‘무관’ 29.2%로 ‘유관’과 ‘무관’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 ‘유관’이 75.0%로, 지역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다와의 유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 및 개발을 통한 생태계 변화 의견은 5점 만점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3.73점, 공무원은 3.95점으로 나타남
- ‘변화함’이 지역주민 66.6%, 공무원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 대다수가 이용 및 개발을 통해 생태계가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8〉 부산 바다와의 유대감 및 이용개발을 통한 생태계 변화 의견



□ 바다로부터의 혜택

-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은 ‘레크리에이션과 관광’이 7.55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물자원 제공’이 6.2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무원에게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은 ‘레크리에이션과 관광’이 7.85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물자원 제공’이 4.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또한 ‘레크리에이션과 관광’이 지역주민 8.19점, 공무원 7.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29〉 지역주민 및 공무원에게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나. 해양활동 간 갈등

□ 과거 10년 전 대비 부산 바다 이용 변화 정도 및 이용방식 복잡화 정도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79점, 4.15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경우 ‘많이 이용’이 각각 71.3%, 80.0%로 대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복잡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78점, 4.30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복잡해짐’ 69.6% > ‘변화없음’ 21.3% > ‘단순해짐’ 9.2%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 ‘복잡해짐’이 100.0%로 나타나, 바다이용방식이 10년 전보다 다양해졌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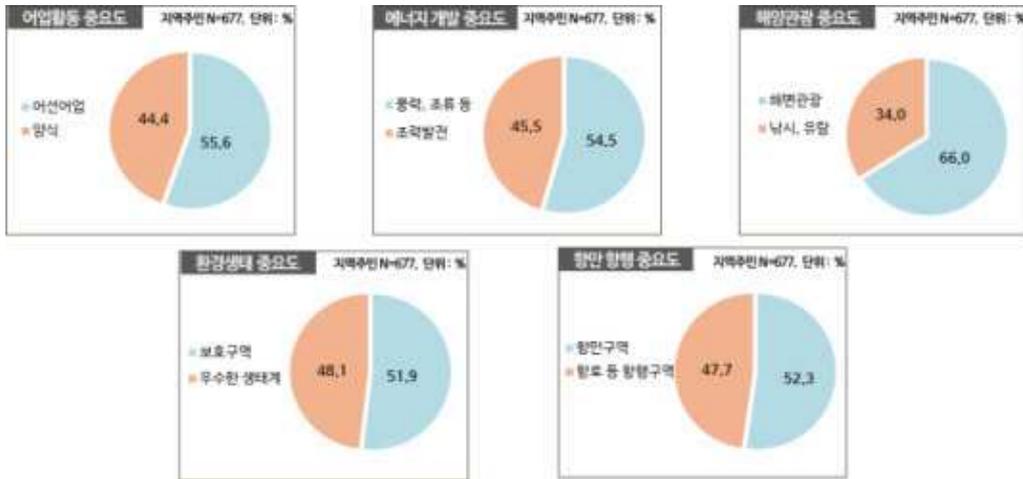
〈그림 2-30〉 10년전 대비 바다이용 및 복잡화 정도 변화



□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지역주민

- 지역주민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어업활동 부문은 ‘어선어업’ 55.6%, ‘양식’ 44.4%로 나타났고, 에너지 개발 부문은 ‘풍력, 조류 등’ 54.5%, ‘조력발전’ 45.5%, 해양관광 부문은 ‘해변관광’ 66.0%, ‘낚시, 유람’ 34.0% , 환경생태 부문은 ‘보호구역’ 51.9%, ‘우수한 생태계’ 48.1%, 항만 항행 부문은 ‘항만구역’ 52.3%, ‘항로 등 항행구역’ 47.7% 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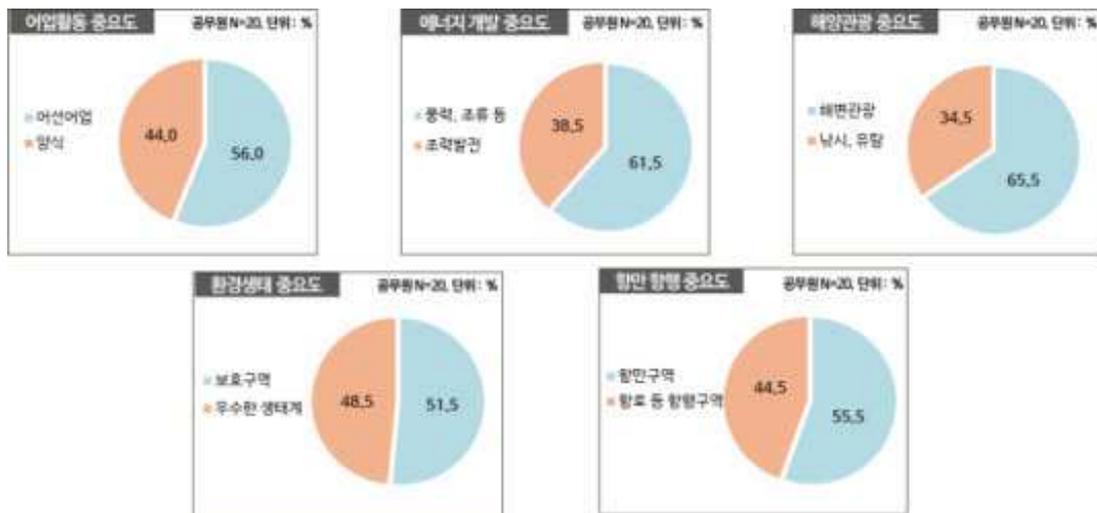
〈그림 2-31〉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지역주민



□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공무원

- 공무원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어업활동 부문은 ‘어선어업’ 56.0%, ‘양식’ 44.0%로 나타났고, 에너지 개발 부문은 ‘풍력, 조류 등’ 61.5%, ‘조력발전’ 38.5%, 해양관광 부문은 ‘해변관광’ 65.5%, ‘늪지, 유람’ 34.5%, 환경생태 부문은 ‘보호구역’ 51.5%, ‘우수한 생태계’ 48.5%, 항만 항행 부문은 ‘항만구역’ 55.5%, ‘항로 등 항행구역’ 44.5%로 나타남

〈그림 2-32〉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공무원



□ 해양공간 이용 갈등 : 지역주민

- 지역주민에게 해양 공간 활동들이 서로 얼마나 갈등이 있을지 알아본 결과, 어업활동의 경우 '골재·광물'(3.11점), '에너지 개발'(3.01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 골재·광물 활동은 '환경·생태'(3.30점), '해양관광'(3.00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 에너지 개발 활동은 '환경·생태'(3.21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 해양관광 활동의 경우 '환경·생태'(3.08점), '군사활동'(3.06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표 2-46〉 해양활동 간 상충 매트릭스 : 지역주민

해양공간 용도	어업 활동	골재·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생태	연구·교육	방안·방역	군사 활동
(1) 어업활동								
(2) 골재·광물	3.11점							
(3) 에너지개발	3.01점	2.77점						
(4) 해양관광	2.97점	3.00점	2.90점					
(5) 환경·생태	2.84점	3.30점	3.21점	3.08점				
(6) 연구·교육	2.26점	2.56점	2.57점	2.51점	2.42점			
(7) 방안·방역	2.91점	2.81점	2.79점	2.75점	2.78점	2.46점		
(8) 군사활동	2.96점	2.90점	2.90점	3.06점	2.99점	2.73점	2.87점	
(9) 안전관리	2.61점	2.75점	2.83점	2.81점	2.57점	2.43점	2.58점	2.64점

* 주) 1점에 가까울수록 '갈등 없음', 5점에 가까울수록 '갈등 큼' 응답으로, 3점 이상인 경우 '갈등 예상'으로 분류

다. 해양공간계획제도 및 해양공간관리 방향

□ 해양공간 이용 갈등 : 공무원

- 공무원에게 해양 공간 활동들이 서로 얼마나 갈등이 있을지 알아본 결과, 어업활동의 경우 '골재·광물'(3.60점), '에너지 개발'(3.4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골재·광물 활동은 '해양관광'(3.15점), '환경·생태'(3.10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 에너지 개발 활동은 '환경·생태'(3.55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 해양관광 활동의 경우 '군사활동'(3.25점), '환경·생태'(3.20점), '안전관리'(3.15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표 2-47〉 해양활동 간 상충 매트릭스 :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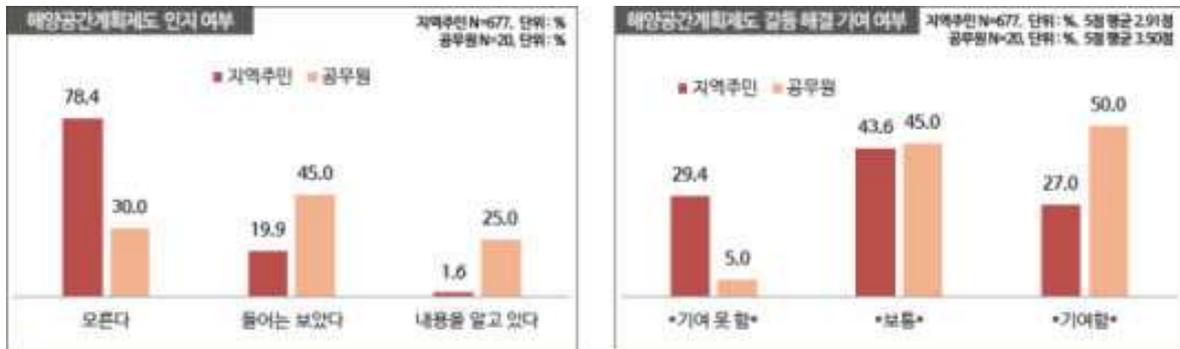
해양공간 용도	어업 활동	공해·공물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관광·생태	연구·교육	항만·양항	군사 활동
(1) 어업활동								
(2) 공해·공물	3.60점							
(3) 에너지개발	3.40점	2.35점						
(4) 해양관광	3.15점	3.15점	2.95점					
(5) 환경·생태	2.85점	3.10점	3.55점	3.20점				
(6) 연구·교육	2.05점	1.75점	1.55점	1.60점	1.75점			
(7) 항만·양항	3.15점	2.90점	2.55점	2.55점	2.65점	1.55점		
(8) 군사활동	3.00점	2.50점	2.50점	3.25점	2.45점	2.00점	2.70점	
(9) 안전관리	2.90점	2.65점	2.60점	3.15점	2.10점	1.65점	2.50점	2.00점

* 주) 1점에 가까울수록 '갈등 없음', 5점에 가까울수록 '갈등 클 것' 응답으로, 3점이상인 경우 '갈등 예상' 으로 분류

□ 해양공간계획제도 인지 여부 및 갈등 해결 기여 여부

-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모른다' 78.4%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공무원의 경우 '들어는 보았다' 45.0% > '모른다' 30.0% > '내용을 알고 있다' 25.0%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해양공간계획제도가 해양활동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는지 묻은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2.91점, 공무원은 3.50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보통' 43.6% > '기여 못함' 29.4% > '기여함' 27.0%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 '기여함' 50.0% > '보통' 45.0% > '기여 못함' 5.0%로 나타남

〈그림 2-33〉 해양공간계획제도 인지 여부 및 갈등 해결 기여 여부



□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 위한 필요요소 중요도

-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을 위한 필요요소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참여'가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조직'이 3.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무원에게 중요한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을 위한 필요요소는 5점 만점 기준으로 '해양공간정보'와 '이해/공감대 형성'이 4.30점으로 가장 높고, '행정조직'이 3.8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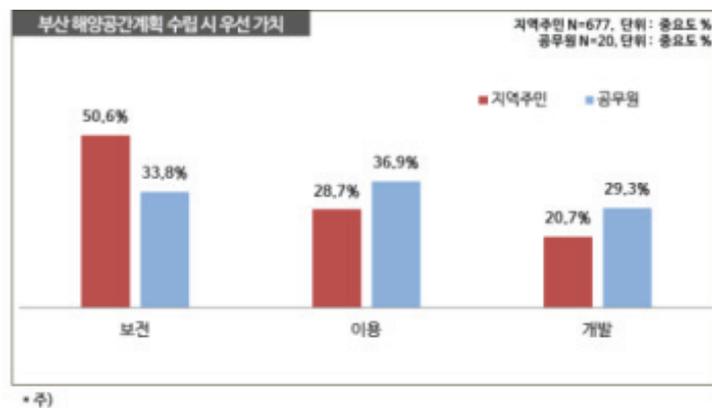
〈그림 2-34〉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 위한 필요요소 중요도



□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가치

- 부산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가치에 대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의견이 엇갈림
- 지역주민은 보전(50.6%) > 이용(28.7%) > 개발(20.7%)로 중시하는 반면 공무원은 이용(36.9%) > 보전(33.8%) > 개발(29.3%)로 중시함

〈그림 2-35〉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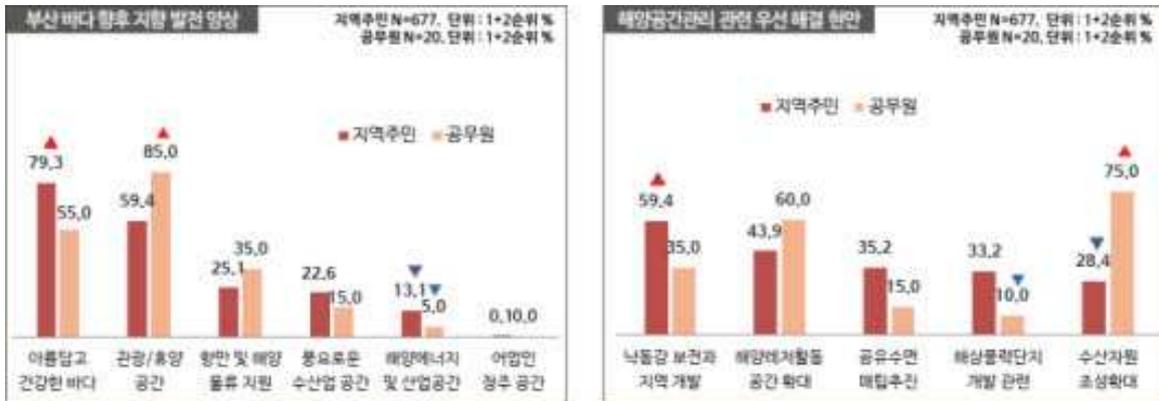
- 과거 10년 전 대비 부산 바다 이용활동 갈등 변화 정도 및 향후 부산 지역 해양공간 관리 의견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활동 간의 갈등 변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75점, 4.15점으로 나타나, 갈등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경우 ‘증가’가 각각 66.6%,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향후 부산 지역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의견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역 주민은 4.08점, 공무원은 4.55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필요’ 81.2% > ‘보통’ 16.4% > ‘불필요’ 2.4%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필요’ 100.0%로 대다수의 지역주민과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2-36〉 10년전 대비 부산 바다 이용활동 갈등 변화 정도 및 향후 해양공간 관리 의견



- 부산 바다 향후 지향 발전 양상 및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 현안
 - 부산 바다의 향후 지향 발전 양상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아름답고 건강한 바다’가 7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관광/휴양 공간’ (5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경우 ‘관광/휴양 공간’이 8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바다’ (5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양공간관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낙동강 보전과 지역개발’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 ‘수산자원 조성확대’가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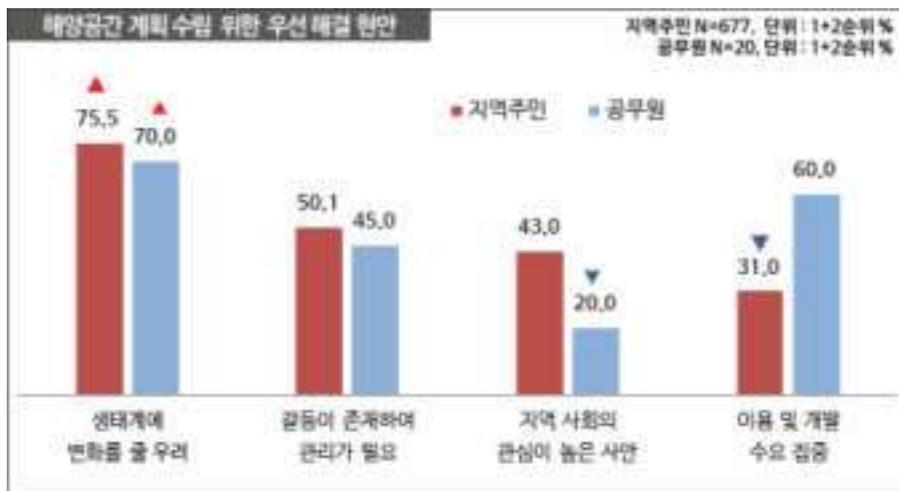
〈그림 2-37〉 부산 바다 향후 지향 발전 양상 및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 현안



□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 위한 우선 해결 현안

-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지역주민은 ‘생태계에 변화를 줄 우려’가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갈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50.1%),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 사안’(43.0%), ‘이용 및 개발 수요 집중’(31.0%)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경우 ‘생태계에 변화를 줄 우려’가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용 및 개발 수요 집중’(60.0%), ‘갈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45.0%),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 사안’(20.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8〉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 위한 우선 해결 현안



2) 해양공간관리 현안

□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항만시설 용지 개발 수요 집중

- 부산 신항 조성사업 및 마리나 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매립 수요 증가
- 크루즈 관광 거점화를 위한 항만 중심의 기초 인프라 구축 확대, 연계 사업 확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관광단지 조성 박차
 - *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경쟁력 있는 해양·휴양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크루즈 전용항, 연안국제여객터미널 등 크루즈 관광 거점 사업),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부산항 신항)
- 제2신항 입지 갈등 해소로 경남 창원시 제덕만 일대 항만 개발 예정

□ 낙동강 하구의 다양한 보호-개발 간 수요 혼재

- 기 지정된 다수의 보호구역 지정은 다대포 해수욕장 개발, 해안도로 및 교량 건설, 항만 개발 등으로 개발-보전 간 갈등 존재
- 최근에는 하구둑 기능 개선을 위한 하구둑 개방과 기수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새로운 여건 변화 발생

□ 해운대를 중심으로 체험형 해양레저 수요 증가와 기존 해역이용 행위 상충 발생

- 피서리나항 시범 개발(해운대 우동항), 송정 해양레저 거점 조성(송정해수욕장),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해상낚시 복합타운 등 다양한 해양관광 개발로 주변 해역의 생태계 변화와 어민과 갈등 우려
-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계획(방파제, 호안)에 해양레저·스포츠시설(전망대, 해상수영장, 마리나 등)이 추가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 우려
 - * 재해방지 시설 설치(중앙정부) - 친수기능 추가(부산광역시)

□ 기장~해운대 해안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갈등 확대 우려

- 기장군이 총 108기, 54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인근 어민과 갈등 발생
 - * 풍력단지 조성 대상해역은 부산 해역에서 비교적 다수의 어항이 분포하고 어업권이 집중된 해역

- 해양경관을 기반으로 한 관광 수요와 지역 개발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해역으로 풍력 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 수산자원 조성·관리를 위해 바다숲, 해조류 군락 조성사업 추진
 - 기장군을 중심으로 바다의 특성에 따른 해저 군락지 개발, 어류 특화 군집지, 어장 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 정책방향의 성격

- 해양공간계획은 공간에 분포하는 자원과 환경을 관리하는 제도적 수단이지만, 특정 자원 또는 환경에 특화된 계획이 아닌, 다양한 해양수요가 조화롭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임.
 - 즉, 다양한 해양수요가 상충 없이 조화를 이루어 각 수요별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통합적 계획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해양공간계획에 반영된 각 수요별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
- 즉, 해양공간계획은 현재의 공간관리구조를 파악하여 기능을 배분하고 조정하여 해양 용도구역으로 설정하므로, 정량적 정책목표 설정이 불가능하지만 행위주체들의 행동을 결정할 정책방향 설정은 필요함.
 -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은 ‘정책방향’을 통해 각 행위주체들의 용도구역별 공간할당 결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최소상충과 조화의 원칙’을 기초로 해양공간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정책방향의 성격

- 행위주체들의 공간할당에 대한 인식증진 및 최소 상충과 조화의 원칙을 기초로 현재의 해양공간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 정책방향 도출 과정과 구성요소

-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과 정책방향에 포함될 사항은 아래와 같음.

〈그림 2-39〉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 도출 과정



- 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틀로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대상 공간의 특성을 분석해야 함. 계획대상 공간특성 분석 대상은 자연환경 특성, 사회경제 이용특성, 국가정책 및 계획 수요 등임.
- 다음단계는 공간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각 수요별 상충현황(상충내용과 수준)과 현재의 관리자원·역량(자료, 정보, 인력, 기술수준 등)을 분석하는 과정임.
- 마지막으로 공간특성, 상충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해상충 조정방향, 해양공간배분'을, 관리자원·역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제시함.

□ 부산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

- 상기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부산 해역해양공간계획의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음.

① 항만·물류, 해양문화관광 등 해양활동 공간의 합리적 배분

- 해양도시로서 위상 제고 과정(항만산업 중심의 도시 기능 → 공공의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 기능)에서 다양한 해양공간(어로, 관광 등) 이용 수용
 - *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도시, 부산·경남 제2신항 개발 수요, 해양산업 육성 계획 등
- 항만 및 주변해역은 선박의 항행과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한 활동이 우선 되어야 하나, 항만·항행 인프라 조성 시 해양지형·생태계 영향과 자연해안 손실을 최소화
- 용도구역 설정 시 해양 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하되 각 기능 간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밀한 해양활동 평가 필요

② 신규 개발(해상풍력단지) 수요에 따른 기존 이용 행위와 갈등 사전 조정

- 기장군 해역은 수산업이 활발한 곳으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어업활동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영향을 고려한 용도구역 지정
- 타 이용행위와 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 및 협력체계(절차) 마련, 주민 수용성 제고 필요
 - ※ 해상풍력개발은 어업·양식 및 해양환경·생태계관리 수요와 상충현안이 존재

③ 낙동강 하구, 유·무인도서, 보호구역의 연계·통합 관리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생태 조성

- 낙동강 하구 일원 해양생태자원과 섬, 연안·해양보호구역의 연계로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이용 지원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
-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 각종 보호구역은 현재의 수산자원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의 생태 환경을 지원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가치창출의 기반으로 활용 가능

④ 해양레저, 해양친수, 마리나, 크루즈 등 핵심 공간의 해양관광 활동 증진

- 해양관광 이용 및 개발 수요와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연안·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설치 시 주변 해양생태·경관과 조화 추구
- 해양도시의 가치 증진을 위한 항만(부산 북항)·어항(다대포어항) 재개발 추진 시 해양관광 활동과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도모

⑤ 어선·선박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항행 갈등방지 위한 안전관리구역의 지정

-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 입지로 대형선박과 어선·유어선의 충돌가능성이 많아 선박·어선의 위험 요인 해소 필요
 - ※ 어선·선박 대용량 위치데이터를 토대로 어선 및 선박의 이동과 밀집을 분석하여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해역을 확인
- 부산항 항만구역 및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해양관광·레저 활동, 조업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구역을 지정

⑥ EEZ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기제 강화

- 국가 관할해역 해양공간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을 중심으로 지정
 - 부산 영해 외측 해양공간은 어업 활동이 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7종 밖에 남아 있지 않은 해양보호생물종인 바다거북의 이동경로
- 바다거북 생태연구·보전을 위해 부산에서 제주, 일본, 중국 등으로 연결되는 이동 경로의 주기적 점검 및 위협 요소 관리



제3장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 해양공간특성평가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제3장 /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 해양공간특성평가

1)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요

□ 해양공간특성평가

○ 해양공간특성평가(이하, 특성평가)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임

* 「해양공간계획법」제2조제7항 :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말함.

- 해양공간의 환경·생태, 자원, 이용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양의 핵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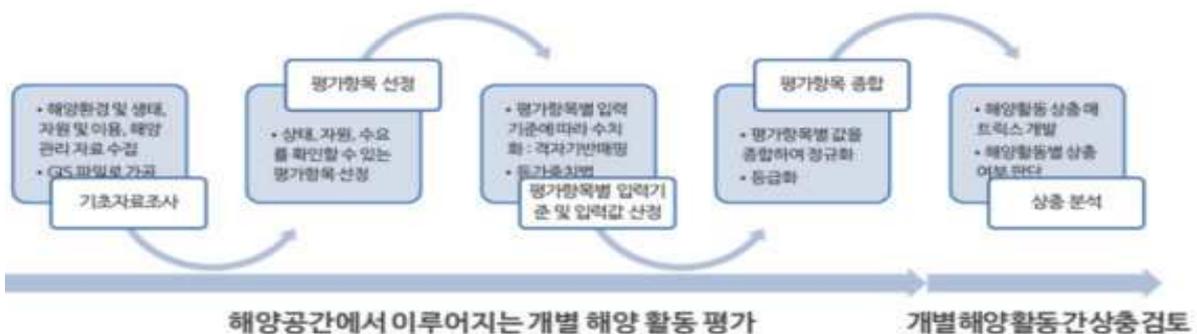
○ 특성평가는 핵심 해양활동을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핵심 활동을 선정하고 등급화하는 과정임.

-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활동을 대표하는 해양공간정보를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하여 평가단위인 격자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중첩 분석(overlay analysis)하여 해양공간 특성을 등급화하고 핵심 활동 공간을 식별

- 특성평가 결과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용도구역 간 상충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

* 「해양공간계획법」제5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제12조에 따라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13조 제2항에서는 해양공간특성평가에 대한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그림 3-1〉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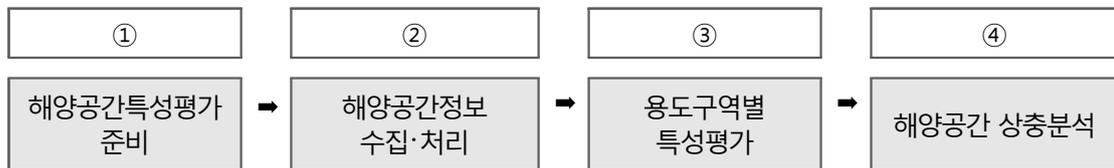
- 특성평가의 절차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에서 ‘해양공간 상층분석’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수행 내용을 정의

〈그림 3-2〉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절차를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에서 ‘해양공간 상층분석’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수행 내용을 정의

<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



- ①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 단계)** ‘특성평가대상해역 설정’, ‘주요 해양활동 도출’, ‘핵심 해양활동 선정’, ‘평가항목 정의’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방향을 제시
- ② **(해양공간정보 수집·처리 단계)** ‘자료조사 및 수집’, ‘자료 가용성 및 신뢰도 검토’, ‘분석활용 자료 선정’, ‘자료변환 및 처리’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특성평가대상해역에 관련된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하고 특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및 처리
- ③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단계)** ‘대상해역 격자구성’,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제작’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특성평가대상해역을 대상으로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특성평가지도를 제작 및 제공
- ④ **(해양공간 상층분석 단계)**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중첩을 통한 상층분석’, ‘특성평가 및 상층분석 결과 관리’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특성평가대상해역 내 해양활동의 상층 공간 및 상층 요인을 식별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2) 기초자료 조사·수집

-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목록의 자료를 우선하여 조사·수집
-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관련 법정조사, 연구보고서, 해양공간정보, 행정통계 등을 검토

〈표 3-1〉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목록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1. 기본 해양공간정보	가. 해도(海圖)	국립해양조사원	
	나. 수심		
	다. 조위(潮位: 조수에 의한 해수면 높이) 변화		
	라. 조류·해류		
	마. 해역 경계		
	바. 인공·자연해안선		
	사. 약최저저조선		
	아. 지적 경계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 무인도서		해양수산부
	차. 해양환경관측 지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카.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조사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2. 해양환경·생태	가. 수온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나. 염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갯벌		
	라.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자료		
	마. 해양보호생물종		
	바. 해양생태도	국립수산과학원	
	사. 이상해역환경 정보		
	아. 적조출현속보		
	자. 해파리출현 정보		
	차. 해역이용협의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타. 해양환경영향조사서	환경부	
	파. 환경영향평가서		
	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너. 문화재 정보, 문화재유존정보 등	문화재청		
3. 어업활동	가. 어항시설	해양수산부	
	나. 어항개발계획		
	다.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허가·관리 자료		
	라.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마. 산란·서식지 조사 자료		
	바. 수출패류생산해역위생조사 자료		
	사. 바다숲·바다목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아. 인공어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 천연해조장·잘피(해수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식물) 조사 자료	
	차. 연근해어획실적(소해구별·조업위치별)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카. 선박패스(V-PASS) 장치 동적정보	해양경찰청
	타. 어선등록정보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파. 양식장 시설 자료(위성영상판독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하. 수산자원관리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 면허어업권(양식장 등)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4. 골재·광물	가. 골재자원 조사자료(부존량(賦存量) 등)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나. 골재유망단지분할도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다. 바다골재채취예정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라. 해저광물개발구역	산업통상자원부
	마. 광업권(채굴권·탐사권)	
	바. 바다골재채취허가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5. 해양에너지	가. 조류에너지	해양수산부
	나. 조력에너지	
	다. 파력에너지	
	라. 온도차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마. 해상풍력에너지	
	바. 석유·천연가스·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자원 조사 자료	
	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아. 전기사업허가구역	산업통상자원부	
6. 해양관광	가. 해수욕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나. 마리나 시설	해양수산부
	다. 낚시 활동 및 신고 정보	한국어촌어항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라. 어촌체험휴양마을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마. 여객선 항로 및 이용 자료	
	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해양경찰청
	사. 동·서·남해안권 개발구역	국토교통부
	아. 해양관광진흥지구	
7. 항만·항행	가. 항만시설	해양수산부
	나. 항만기본계획	
	다. 선박운항정보	
8. 군사활동	해상사격 훈련구역 등	국방부, 국립해양조사원
9. 해양안전·관리	가. 해양시설 자료	해양수산부
	나. 해상교통 안전진단 등 정보	
	다. 공유수면매립 예정지	
	라. 바닷가실태조사 자료	
	마. 해양사고 자료	해양경찰청
	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주 : 위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바다와 바닷가에 설정된 이용·개발 및 보전·보호 구역 정보 등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3)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선정

- 특성평가의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해양용도구역 분류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구역별 해양활동을 확인하였음.
- 주요 해양활동을 확인하고, 개별 해양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자원의 부존 현황 및 가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현황, 해양공간의 미래 활용 수요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 (해양자원 분포·가치 및 미래 잠재 수요) 현재 관련 해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양활동을 유인하는 자원이 분포하거나 가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혹은 정보 확인
 - (해양공간 이용 및 활동 상태·수준) 조업 활동, 낚시 활동, 선박 이동 등 핵심 해양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확인
 -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법정조사 혹은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
- 평가항목의 특성을 검토하여 해양공간정보 수집·조사의 대상과 가공의 방향을 정함.
 - 평가항목별 평가격자별 입력기준은 해당 자료의 연속성, 주기성 등을 고려
- 이에 따른 공간특성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2〉 특성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격자별 입력기준	용도별 종합점수
어업활동	• 연근해 어획량(1분단위)	5년 산술평균값, (0~1)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연근해 어선밀집도(1분단위)	5년 산술평균값, (0~1)	
	• 단위노력당 어획량 ¹⁵⁾ (평균 연도별 CPUE)	5개 등급(상위 2개)	
	• 어업 관련 보호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양식장(면허어업권)	존재유무(유=1, 무=0)	
	• 어항	존재유무(유=1, 무=0)	
골재·광물 자원개발	• 광업권 등록(광업권, 채굴권, 탐사권)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EEZ 바다골재채취허가	존재유무(유=1, 무=0)	

구분	평가항목	격자별 입력기준	용도별 종합점수
	• 골재유망단지 (유망단지 및 부존량)	존재유무(유=1, 무=0)	
	• EEZ 광물자원	존재유무(유=1, 무=0)	
에너지개발	•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의 자원량	자원량 표준화(0~1)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
	• 발전단지 예정구역·사업 허가 구역	존재유무(유=1, 무=0)	
항만·항행	• 항만구역(무역항, 연안항)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 ※ 항만 및 항행 활동과 관련한 평가항목은 법제도상 지정된 구역을 토대로 설정
	• 항로(항로 및 통항분리제도 등)	존재유무(유=1, 무=0)	
	• 정박지(정박지, 묘박지)	존재유무(유=1, 무=0)	
	• 교통안전특정해역	존재유무(유=1, 무=0)	
	• GICOMS 통항밀집구역	5개 등급(상위 2개)	
해양관광	• 해수욕장(해안)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어촌체험마을(해안)	존재유무(유=1, 무=0)	
	• 마리나항만(해안)	존재유무(유=1, 무=0)	
	• 갯바위 낚시포인트(해안)	존재유무(유=1, 무=0)	
	• 선상 낚시포인트(해양)	존재유무(유=1, 무=0)	
	• 유어장	존재유무(유=1, 무=0)	
	• 레저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VPASS 기반 낚시어선 활동	5개 등급(상위 2개)	
환경·생태계 관리	• 갯벌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해조류, 해초류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생물 출현 정보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보호생물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생태도	1등급=1/2등급=0.5	
	• 해양생물다양성지수(Delta+)	Good, Excellent, Moderate=1/ Bad, Poor, =0	
	• 연안·해양보호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국립공원	존재유무(유=1, 무=0)	
연구·교육	• 영해기점 무인도서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관측 부이 등	존재유무(유=1, 무=0)	
군사활동	• 군사 관련 법정구역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해상 사격훈련구역 등)	존재유무(유=1, 무=0)	
	• 군항의 보호수역	존재유무(유=1, 무=0)	
안전관리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대형선박 및 낚시활동 상충구역	5개 등급(상위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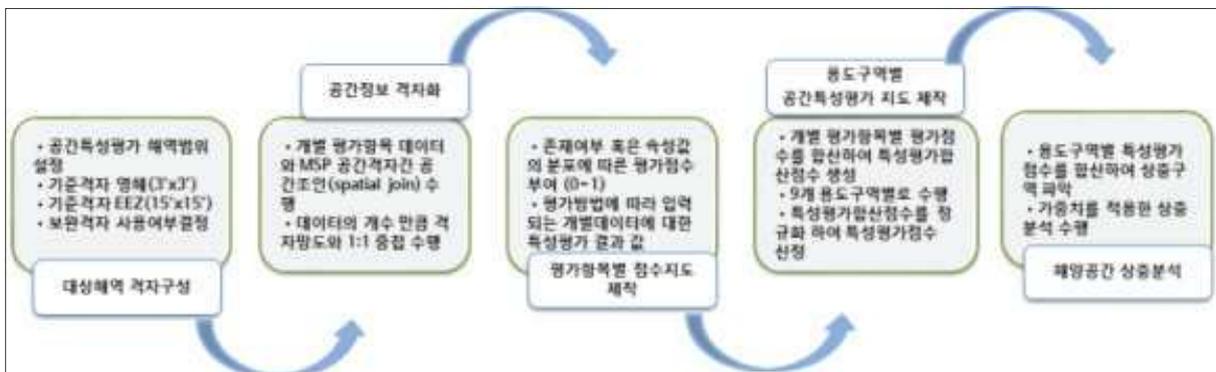
15)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 총어획량을 총어획 노력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자원량 지수로서 사용됨.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4) 해양공간특성평가

□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 특성평가대상해역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특성평가지도를 제작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해역 격자구성’,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제작’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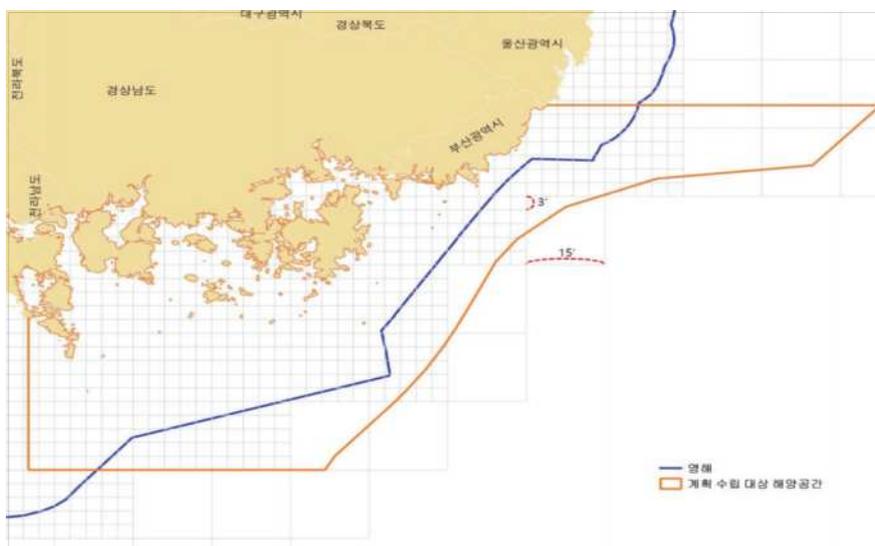
〈그림 3-3〉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 (대상해역 격자 구성) 공간분석 및 특성평가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영해기선 내측은 3'×3'(약 5km) 격자, 영해기선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까지는 15'×15'(약 25km) 격자인 일반 격자를 적용한 격자망도 제작

〈그림 3-4〉 일반격자(영해내측: 3'×3', 영해외측: 15'×15')만 적용한 격자 구성



-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에 관련된 해양공간정보를 개별 격자의 속성정보로 입력하는 공간정보 격자화 과정을 수행
 -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공간정보 격자화 결과로 입력된 속성정보의 통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기준을 정하되, 개별 평가항목별 점수는 0부터 1까지의 점수 이내에서 부여
 -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제작) 각 용도구역별로 관련된 모든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통합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격자망도 공간정보의 속성정보로 입력
- 특성평가를 위한 GIS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음.
- 평가 대상 자료를 대상 해양공간의 영역으로 데이터를 자르기
 - 평가 대상 항목의 속성 정보를 정의하고 편집
 - 격자망도와 해양공간정보 조인을 수행하고 개별 데이터에 대한 특성평가 결과값(H-Value)을 0과 1사이의 정규값으로 산정 후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 개별 데이터에 대한 특성평가 결과값(H-value)를 모두 합산하여 통합점수(T-value)를 산정
 - Min-Max 정규화 방법을 통해 통합점수(T-value)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산정하여 최종값(G-value) 도출

* 최종값(G-value)을 5등급으로 구분 가능하며, 등급이 클수록 해당 핵심활동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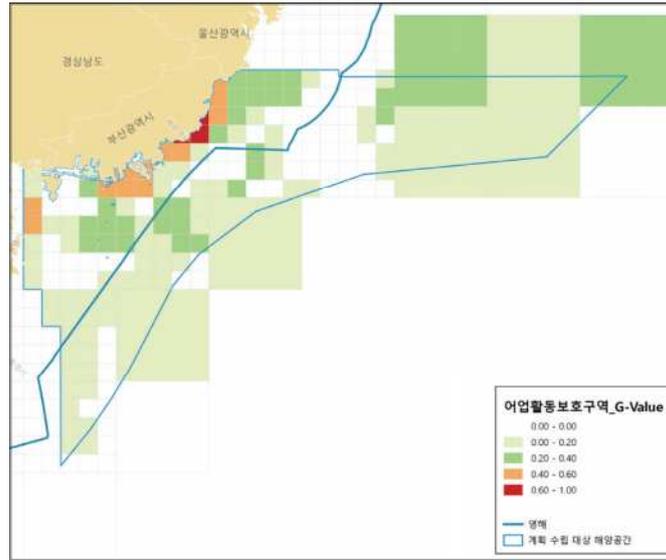
〈그림 3-5〉 특성평가를 위한 GIS 분석 과정



□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 결과

-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연근해 어획량, 연근해 어선밀집도, 단위 노력당 어획량, 양식장(면허어업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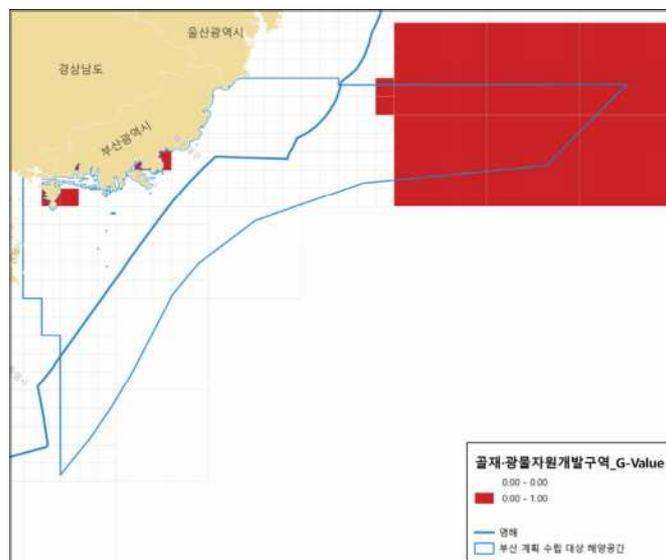
〈그림 3-6〉 부산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 결과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광업지적단위광구(광업권, 채굴권, 탐사권), EEZ 광물자원(탄화수소, 해저석탄) 등

〈그림 3-7〉 부산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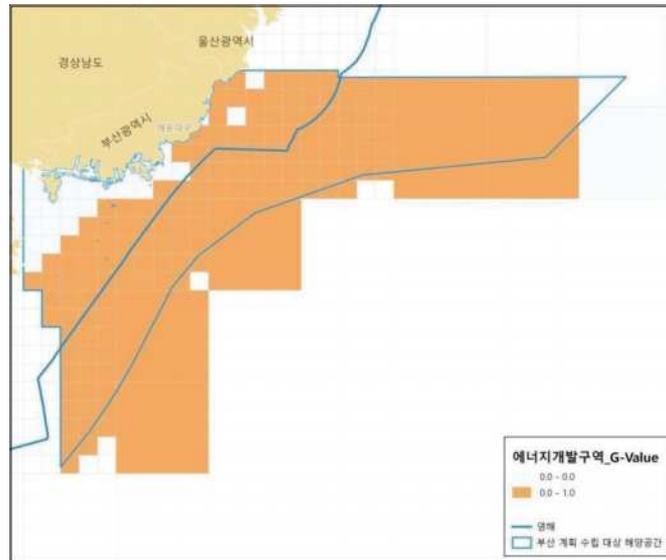


□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수요(해기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허가 현황 등)
- 에너지자원 부존량(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풍속 6m/s 이상) 등의 자원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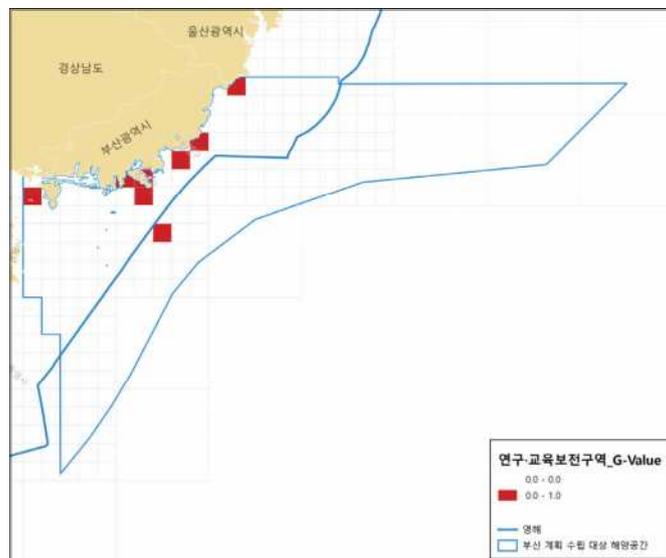
〈그림 3-8〉 부산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연구·교육보전구역 특성평가 결과

- 연구·교육보전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목록 : 해양관측 부이(국립해양조사원 운영), 영해기점 무인도서(생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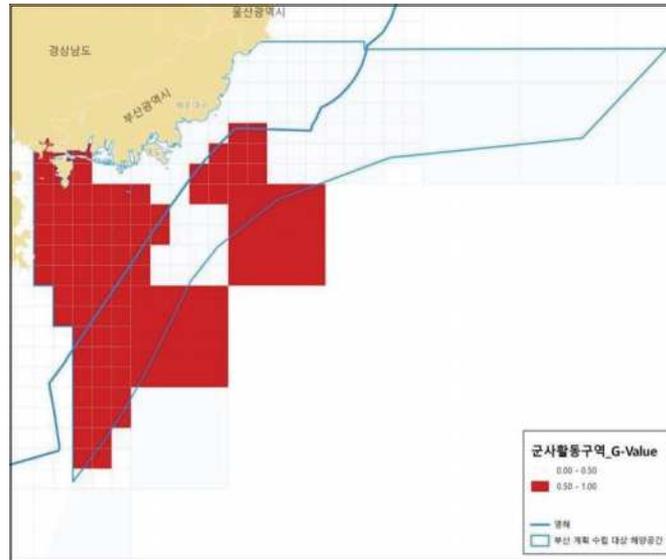
〈그림 3-9〉 부산 연구·교육보전구역 특성평가 결과



□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 결과

-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해상사격 훈련구역, 군항의 보호구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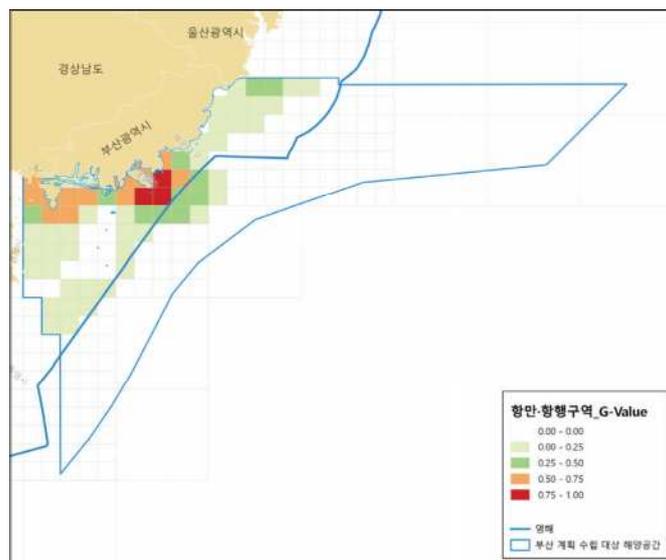
〈그림 3-10〉 부산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항로(지정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항분리 제도), 정박지, 무역항 및 연안항 항만구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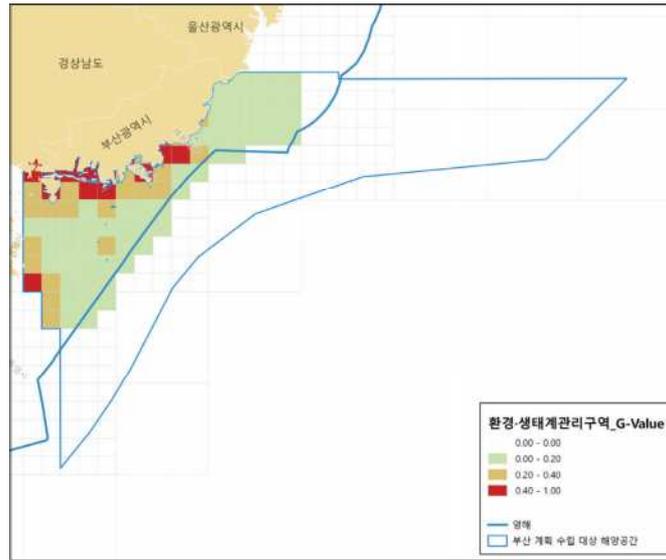
〈그림 3-11〉 부산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 결과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갯벌, 해양보호생물 출현 정보, 절대보전 무인도서, 해양생태도, 해양생물다양성지수(DeltaPlus), 연안·해양보호구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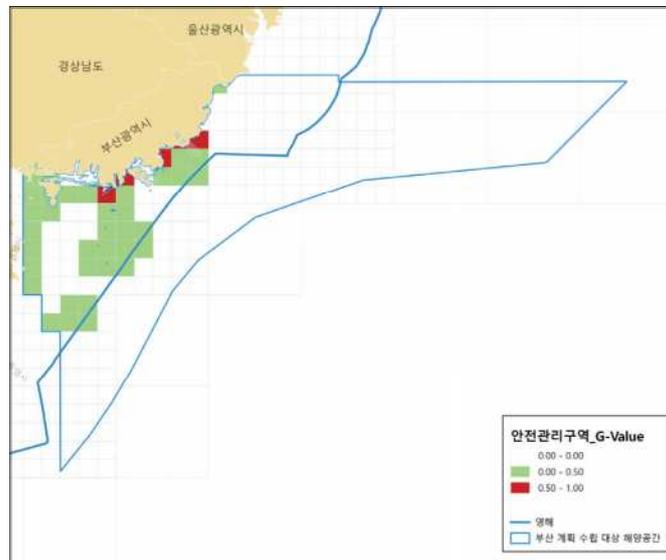
〈그림 3-12〉 부산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해수욕장 주변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대형선박 및 낚시활동상충 구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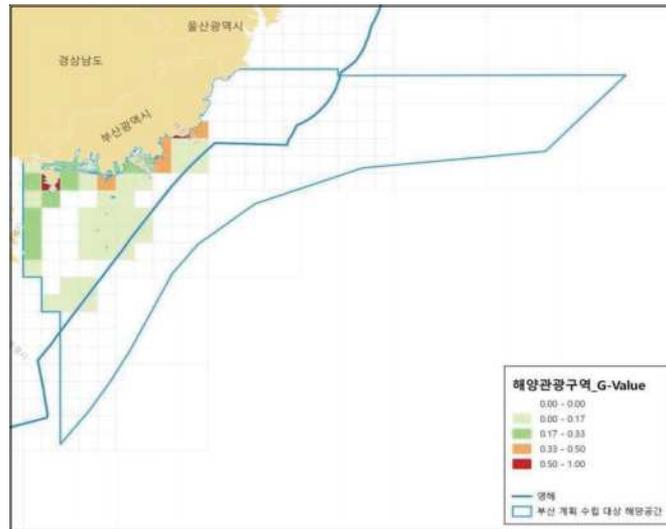
〈그림 3-13〉 부산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마리나항만 및 시설, 갯바위낚시포인트, 선상낚시포인트, VPASS 기반 낚시활동 분석 정보 등

〈그림 3-14〉 부산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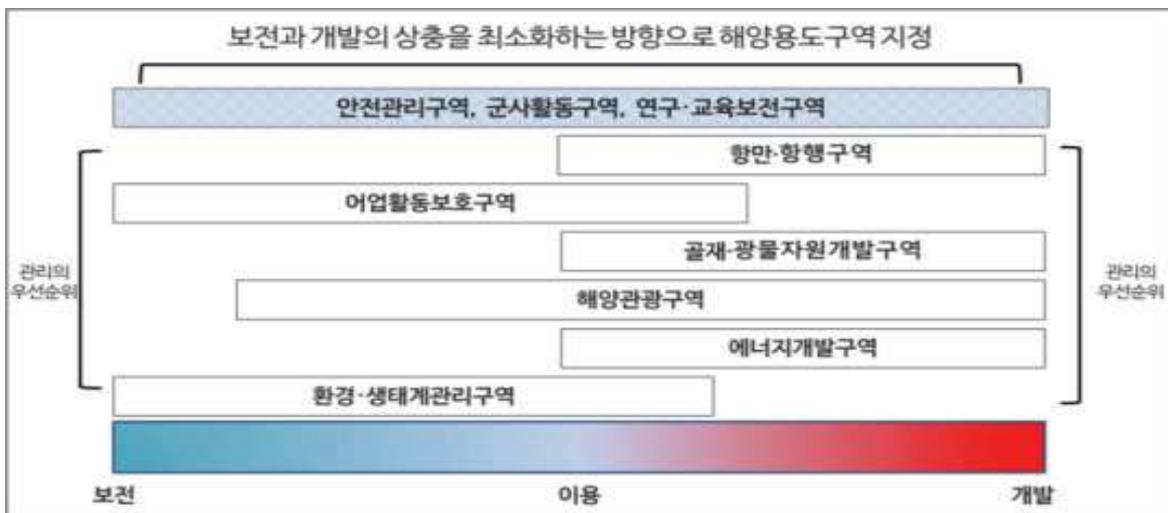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 해양용도구역 개요

-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구역
 - 해양에서 지속가능한 인간활동을 위해 외부 영향에 대응하고, 해양자원의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구역
 - 해양에서의 인간 활동 간 이해상충·갈등을 완화하고, 이용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규명
- (해양용도구역 구획·지정) 다양한 핵심가치가 존재하는 공간에 대해서 해양공간특성 분석, 상충 분석 및 비교(생태연결성, 정책수요 및 계획 등)를 통해 구획
 - 9개 해양용도구역은 원칙적으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나, 3차원적이고 유동적인 해양의 특성 상 안전관리구역,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은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
- (해양용도구역 관리) 지정된 개별 용도구역의 용도를 우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관리
 - 해당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된 용도와 상충되지 않고, 개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해양활동을 허용
 -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
 - * 「해양공간계획법」제12조제2항

〈그림 3-15〉 해양활동 별 보전·이용·개발 특성 개념도



□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 해양용도구역은 특성평가 결과, 법적 현황(기존 구역 및 권한 설정), 해양생태특성 및 해양자원 분포, 현재 이용·활동 상태, 미래 이용 수요 등을 검토하여 설정
 - 이를 위해 가용한 데이터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해양공간의 상태 및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 (특성평가)특성평가 결과는 해양용도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임.
- (기존 구역 및 권한 설정) 현재 해양에서 일어나 이용·개발·보전 활동은 관련 개별 법률·제도에 따른 구역에서 이루어기 때문에 관련 설정 내용 검토
 - 기존 구역과 상호 호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 지정 혹은 고시된 구역을 고려
-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지속가능한 해양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근간이 되는 생물학적, 생태적 특성 파악이 중요
 - 해양생물·생태적 특성¹⁶⁾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서식지와 관련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해양학적 및 물리적 특성(수심, 해류, 퇴적물 등)을 함께 고려 가능
- (해양자원 분포)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자원,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하며, 이러한 자원이 위치한 공간과 분포를 확인
- (현재 이용·활동 상태) 어업, 항만·항행, 에너지 개발, 광물자원개발, 해양관광·레저, 군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시·공간적 분포, 이용 강도, 환경영향 특성을 확인
- (미래 이용 수요 및 상황 예측) 용도구역 설정을 미래지향적 활동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미래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입 없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때 미래 예측, 대안적 공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공간 변화예측 시나리오 분석 기술이 필요

16) CBD EBSA 선정 기준 : 고유성 및 희귀성, 생물종 생애주기에 있어서 중요성, 멸종위기종·감소종·서식지 중요성, 취약성·민감성·낮은 회복력, 생물학적 생산성, 생물학적 다양성, 자연성

〈표 3-3〉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의미
해양공간 특성평가	해양공간 및 자원을 활용하는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을 이용·보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용도구역 지정,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 * (예) 어업활동, 해양레저·관광, 에너지 개발 등
법제적 현황	기존 법 체계와의 상호 호환성 및 해양공간계획법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구역 고려 * (예) 각종 연안·해양보호구역, 법 시행 당시 법적 권한 설정이 이루어진 구역(「해양공간계획법」부칙 제3~4조) 등
해양생태계 특성	생태적 가치와 특정 생태학적 특성 고려 * (예) 해조류·조류 등 서식지, 산란지, 하구, 생물다양성이 높은 해양공간(Delta+) 등
현재 이용·활동	현재 이용과 활동을 토대로 경제적 기회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계 설정 * (예) 어선 어업, 양식, 해상채취, 항행, 관광 등
미래 이용 수요	법률에 근거하여 확정하였거나 확정가능성이 높은 해양이용·개발계획,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의 용도와 위치 및 규모 등 구체적 계획 등이 마련된 사업, 잠재적 수요와 활동을 평가하여 미래 이용기회를 식별 * (예) 항만·어항 개발계획, 해양에너지 관련 입지, 관광·레저 관련계획 등

-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은 각 용도별 특성에 따라 필수적 고려사항*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지정기준**에 의한 지정 또는 준하는 구역으로 구분
 - * 해당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소, 현재 데이터가 미비하거나 미흡한 항목 이더라도(수산자원 분포, 해양에너지 분포 등) 향후 지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함.
 - ** 「법 부칙 경과조치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부칙 3조) 및 관련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부칙 4조), 해당 용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구역 등
- 現 수준에서의 과학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과정 반영(지역협의회 등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표 3-4〉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어업활동 보호구역	가. 수산자원량 및 분포 나. 수산자원 산란지 및 서식지 다. 어업생산량 라. 면허어업구역 마. 인공어초 바. 조업 특성 및 분포	가.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나. 「수산업법」에 따른 기르는 어업(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어장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라. 「수산자원관리법」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마. 그 밖에 어업활동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골재·광물 자원 개발	가. 골재채취허가 지역 및 광물자원개발 지역	가.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구역	<p>나.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개발로 인한 해저 지형의 변화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p> <p>다. 골재자원의 부존량 및 분포</p>	<p>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4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p> <p>다. 「광업법」제3조제3호의 광업권(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에 설정된 것을 말한다) 또는 「광업법」제3조 및 제15조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p> <p>라. 그 밖에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p>
에너지 개발구역	<p>가. 에너지의 탐사·개발 활동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위치 및 범위</p> <p>나.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자원량과 분포</p> <p>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중 해양공간의 발전사업 허가 현황</p> <p>라. 전력망의 송·배전 등 개발이용의 현황 및 여건</p>	<p>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에 정구역</p> <p>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구역</p> <p>다. 그 밖에 에너지 탐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p>
해양관광 구역	<p>가. 자연자원 : 경승지, 해수욕장 등</p> <p>나. 문화자원 : 지역축제, 어촌체험마을, 유원지 등</p> <p>다. 휴양·레저자원 : 캠핑장, 유람선터미널, 수상레저사업장, 바다 낚시공원 등</p>	<p>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p> <p>나. 「어촌·어항법」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구역</p> <p>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p> <p>라.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유선 영업구역</p> <p>마.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영업구역</p> <p>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p> <p>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p> <p>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p> <p>자. 그 밖에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p>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p>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p> <p>나. 갯벌, 하구, 해중경관 등 해양서식지 및 경관</p> <p>다.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p> <p>라. 바닷새의 서식 현황 및 분포</p> <p>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p> <p>바. 해양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유산 및 해저유물 분포</p>	<p>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p> <p>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지역, 습지개선지역</p> <p>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복원사업 지역</p> <p>라.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제23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p> <p>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 무인도서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의 그 주변해역</p> <p>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갯벌관리구역</p> <p>사.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의 주변해역</p> <p>아.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중경관지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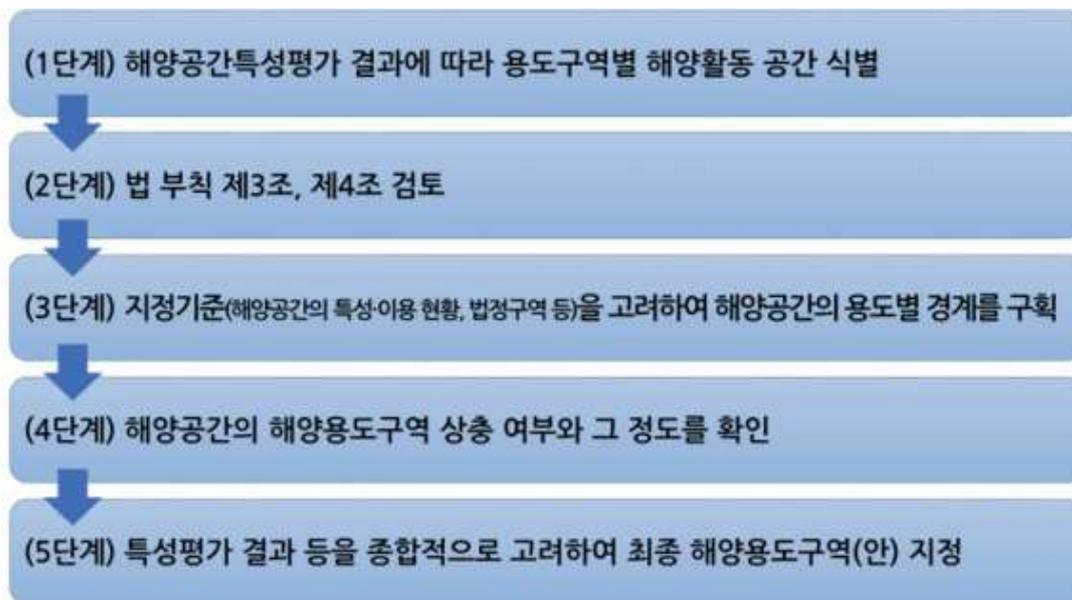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자.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카. 그 밖에 환경 및 생태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연구·교육 보전구역	가. 해양과학기지 및 관측부이의 위치 및 분포 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기상관측 등 연구·교육활동 다.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등 영토 관리 현황 라. 해양보호생물의 이동경로, 기후변화 등에 관한 연구·교육활동 마.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자원 조사가 필요한 해역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해역 다. 그 밖에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항만·항행 구역	가. 지정 항로의 위치 나. 어선·선박의 통항 특성 다. 선박 항행의 안전성	가.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구역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박지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라. 「해사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 마.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도선 영업구역 사. 그 밖에 항만의 기능 유지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군사활동 구역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나. 해상사격 등 군사 훈련 활동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군기지 및 항공작전기지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다. 그 밖에 군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안전관리 구역	가. 과거 지진·폭풍·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越流)하여 침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연안침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바닷가 및 간석지 다. 항해 또는 정박 중 다른 선박·시설과 부딪히거나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해역 라. 조력 및 화력발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설치된 해역 및 그 주변 해역 마.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 및 최근거리로 인접한 바닷가	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 다.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라.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마. 그 밖에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3호)

□ 해양용도구역 구획 및 지정

- 해양용도구역 지정은 구획과 상충·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은 해양공간의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를 확인하는 것임.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은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한 이후 해양용도구역 상호 간의 양립가능성 및 상충여부 등을 비교·분석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구역을 정하는 것임.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6〉 해양용도구역 지정 절차



- (1단계) 특성평가 결과에 따라 용도구역별 해양활동 공간 식별
- (2단계)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
 - 법 시행 시점에 「연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 지정 구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개별 법률에 따른 구역이 해제되거나 구역에서 활동 허가 기간이 지나면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특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양용도구역으로 변경
- (3단계) 해양공간의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대상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를 확인
- (4단계) 해양공간의 해양용도구역 상충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¹⁷⁾

-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거나 해양활동이 중첩된 경우, 특성평가 결과값이 높은 용도를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정할 수 있음.
 - 다만, 각 특성평가 결과값이 동일하여 해양용도구역 선택이 곤란한 경우 주변 해양 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 현황, 해양 활동 지속가능성, 지역협의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수 있음.
- (5단계) 특성평가 결과와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현황 및 현안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해양용도구역 지정

〈표 3-5〉 「해양공간계획법」의 해양용도구역과 「연안관리법」의 연안해역기능구 비교

근거	해양용도구역	연안해역기능구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3조 (연안해역기능구에 관한 경과조치)	어업활동보호구역	어항구, 어장구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물자원구
	에너지개발구역	산업시설구
	해양관광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조사구
	항만·항행구역	항만구, 항로구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구

〈표 3-6〉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시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경과조치

근거	해양용도구역	기존 법률에 따른 구역, 지역 등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4조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굴권 설정 구역(「광업법」 제9조의2제2호) • 골재채취 예정지(「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 • 골재채취단지(「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 • 채취권 설정 구역(「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환경·생태계관리구역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항만·항행구역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1항) • 정박지·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11호) • 교통안전특정해역·항로·통항분리수역(「해사안전법」 제1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68조제1항)
	군사활동구역(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17)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해양용도구역의 상충 및 조정)

□ 용도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어 중첩되는 경우, 특성평가 결과, 법·제도적 기준(법률에 따른 규제 및 조장 사항 포함), 해양환경·생태 특성, 주변해역의 이용·개발 현황과 미래 보전·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를 선택
 - 용도를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 지역협의회, 전문가 자문,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활용 가능
 - *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방법과 절차는 정부에서 R&D 사업으로 연구 중에 있음.
- 미지정 해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해양공간에 보전, 이용, 개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밀 특성평가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
- 안전관리구역,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될 수 있음. 이 3개 용도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시 조정이 필요 없음.
 - 안전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은 해양활동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개별 해양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군사활동구역은 국가의 안보, 군사시설·중요시설의 보호, 군사 훈련을 위하여 설정한 해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연구·교육보전구역은 보전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환경으로 시험, 관찰, 샘플링 등 연구를 진행하며 향후 해양교육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 구역을 말함. 주로 해양 관측시설, 해양보호생물종의 이동경로 및 회유 경로, 산란지, 서식지 등이 이에 해당함.
- 9개 해양용도구역 중 3개 해양용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중복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공간의 조정 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7〉 항만·항행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항만·항행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항만·항행구역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항만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 (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분석정보	항로(지정항로, 통항 분리제도 등), 교통 안전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		○		항만항행

항만·항행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항만·항행구역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항만구역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어업활동 ²
		○		○	항만항행
환경·생태계관리 구역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 (3등급 ¹ 이상)	항로(지정항로, 통항 분리제도 등), 교통 안전특정해역, 정박 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환경생태
		○		○	항만항행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 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 (2등급), 낚시활동 구역	항로(지정항로, 통항분 리제도 등), 교통안전 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해양관광
		○		○	항만항행
골재·광물자원개 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등	특성평가 (부존량), 기 채취해역	항로(지정항로, 통항 분리제도 등), 교통안 전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골재광물
		○		○	항만항행
에너지개발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 에너지자원 부존 량 등),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	항로(지정항로, 통항 분리제도 등), 교통안 전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³
		○	○		항만항행
	○			○	에너지
		○		○	항만항행

주 : 1) 3등급 이상의 해양공간은 특성평가 결과 최종값을 5등급으로 구분 시 3, 4, 5 등급에 해당하는 격자임.
 2) 한정 면허어업의 경우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면허기간종료 후 항만·항행구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
 3) 법정구역이 중첩된 경우 해양공간의 특성, 핵심활동 여부 및 정도, 관리 여건, 주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를 설정

〈표 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환경·생태계관리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환경·생태계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어업활동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분석정보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	○		환경생태
	○			○	어업활동
		○		○	환경생태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운영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2등급), 낚시활동구역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해양관광
		○	○		환경생태
	○			○	해양관광
		○		○	환경생태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설정구역	특성평가(부존량), 기 채취해역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정밀용도구획 필요
		○	○		환경생태
	○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에너지개발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 에너지자원 부존량 등),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환경생태 ¹
		○	○		환경생태
	○			○	에너지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주 : 에너지 활동이 주변해역에 인접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작용 면밀히 검토 필요

〈표 3-9〉 어업활동보호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어업활동보호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어업활동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운영시설, 연안해역기능구 (레저관광구, 해중문화 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 (2등급), 낚시활동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 (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분 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	○		어업활동
	○			○	해양관광
		○		○	어업활동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특성평가 (부존량), 기 채취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 (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분 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¹
		○	○		어업활동
	○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과 과비교검토
에너지개발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 에너지자원 부존량 등),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 (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분 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²
		○	○		어업활동
	○			○	에너지
		○		○	특성평가결과 과비교검토

주 : 1) 법정구역이 중첩된 경우 각 구역의 핵심활동 여부 및 정도, 관리 여건, 주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를 설정함.
 2) 에너지 활동이 주변해역에 인접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작용 면밀히 검토 필요

〈표 3-10〉 해양관광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해양관광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해양관광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골재·광 물자원개 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특성평가 (부존량), 기채취해역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운영시설, 연안해역기능구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 (2등급), 낙시활동구역	
중복 용도구역 의 특성	○		○		골재광물 ¹
	○	○	○	○	해양관광
	○			○	골재광물
	○	○		○	특성평가결과비 교검토 (문화서비스)
에너지 개발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 에너지 자원 부존량 등), 발 전사업 허가현황 등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운영시설, 연안해역기능구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 (2등급), 낙시활동구역	
중복 용도구역 의 특성	○		○		에너지 ¹
	○	○	○		해양관광
	○			○	에너지
	○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생태계서비스)

주 : 법정구역이 중첩된 경우 각 구역의 핵심활동 여부 및 정도, 관리 여건, 주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를 설정함. 또한 해당 해양공간을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표 3-1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골재·광물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에너지개발 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 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 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에너 지자원 부존량 등),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특성평가 (부존량), 기채취해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에너지 ¹
	○	○	○		골재광물
	○			○	에너지
	○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생태계서비스)

주 : 법정구역이 중첩된 경우 각 구역의 핵심활동 여부 및 정도, 관리 여건, 주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를 설정함. 또한 해당 해양공간을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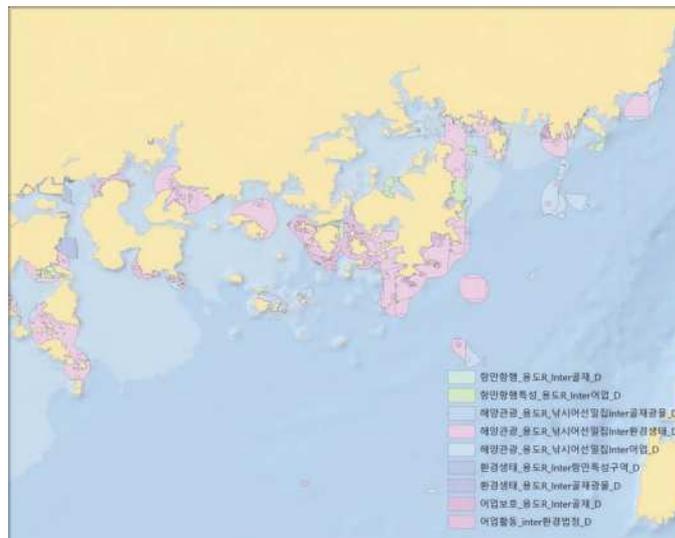
□ 용도구역 관리

- 용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개별 용도구역에서 시·공간적으로 적절한 활동을 명시하거나 용도구역에 적합한 활동에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조치 사항을 제시
 - 용도구역 설정 이후에는 용도를 우선 증진시키는 방안 및 조치 사항
 - 해양용도구역 내 인간 활동의 수용 가능성 수준과 관리 조치 등
 - 해양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활동(해양시설¹⁸) 설치 및 고정적 활동)과 그 외 활동은 용도구역별 특성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 적용
 - 각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된 용도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해양활동을 허용 하되, 용도 중첩 시 관리의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할 것
 - 해당공간은 별도의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 현황, 해양공간 이용 밀집도, 해양공간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8조(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용도 중첩 시 중첩공간 도출 및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 중첩 공간 확인) 용도구역 자료 특성별 분류 구분, 용도구역별 1:1 중첩 분석을 통한 중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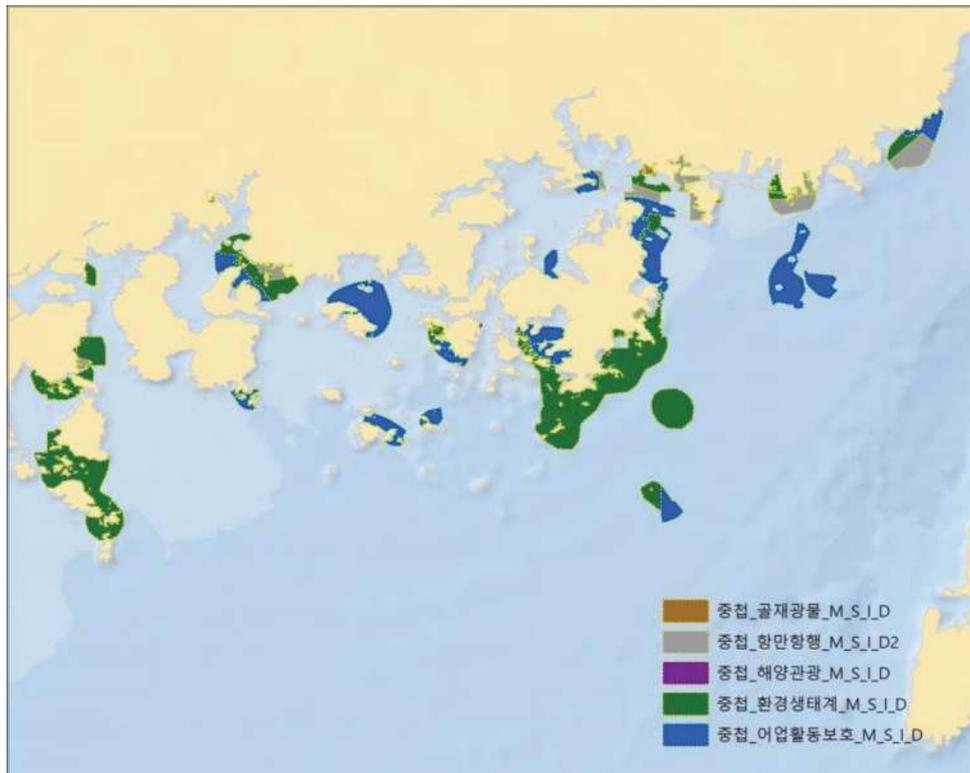
〈그림 3-17〉 용도구역별 1:1 공간분석을 통한 중첩 공간



18) 「해사안전법」제2조 15.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로서 선박이 아닌 것을 말함.

- (2단계 : 중첩 공간 중 관리가 필요한 공간 선정) 관리구역 도출
 - ① 공간의 지역성 : 해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대상구역의 최종 결과를 도출함
 - ② 관리의 실효성 :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코드 부여
 - ③ 정보의 신뢰성 : 데이터 해상도 및 기술력

〈그림 3-18〉 용도구역별 관리구역 도출 결과



- (3단계 : 중첩 공간의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 ①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 현황
 - ② 공간 이용의 밀집도 : 특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우세한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③ 공간관리의 효율성 : 용도구역 중 보전과 이용의 특성평가 값이 동일한 수준일 경우 보전의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 예) 환경·생태계관리구역과 어업활동보호구역의 특성평가 값이 동일한 수준일 경우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이 우선함.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서식지의 유지가 우선이 되어야 어업활동 등 해양활동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임.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 해양용도구역 지정 개요

○ 대상 해양공간의 면적은 총 5,526.44km²(영해 2,361.54km², EEZ 3,164.90km²)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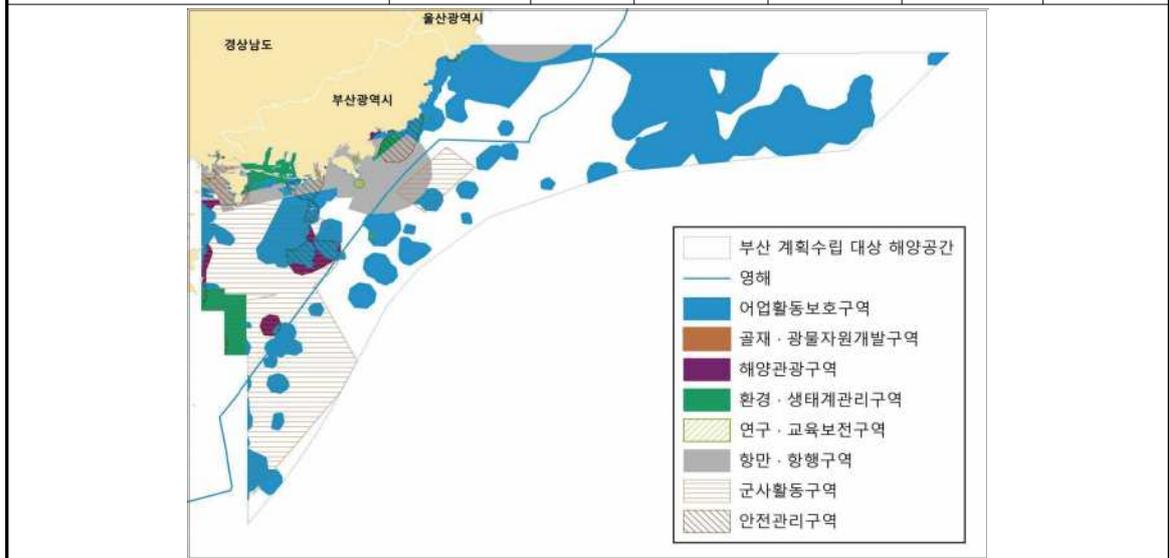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항만구역 등에 대한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변경하고, 그 외 해양공간(영해 내)은 시·도지사가 수립·변경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8개 용도구역으로 구분(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공간 없음)

* 미지정 해역 : 특성평가를 수행한 지역이라도 특정 해양이용 행위의 활동 밀도가 낮거나, 해양환경, 생태, 사회, 경제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의 실익이 없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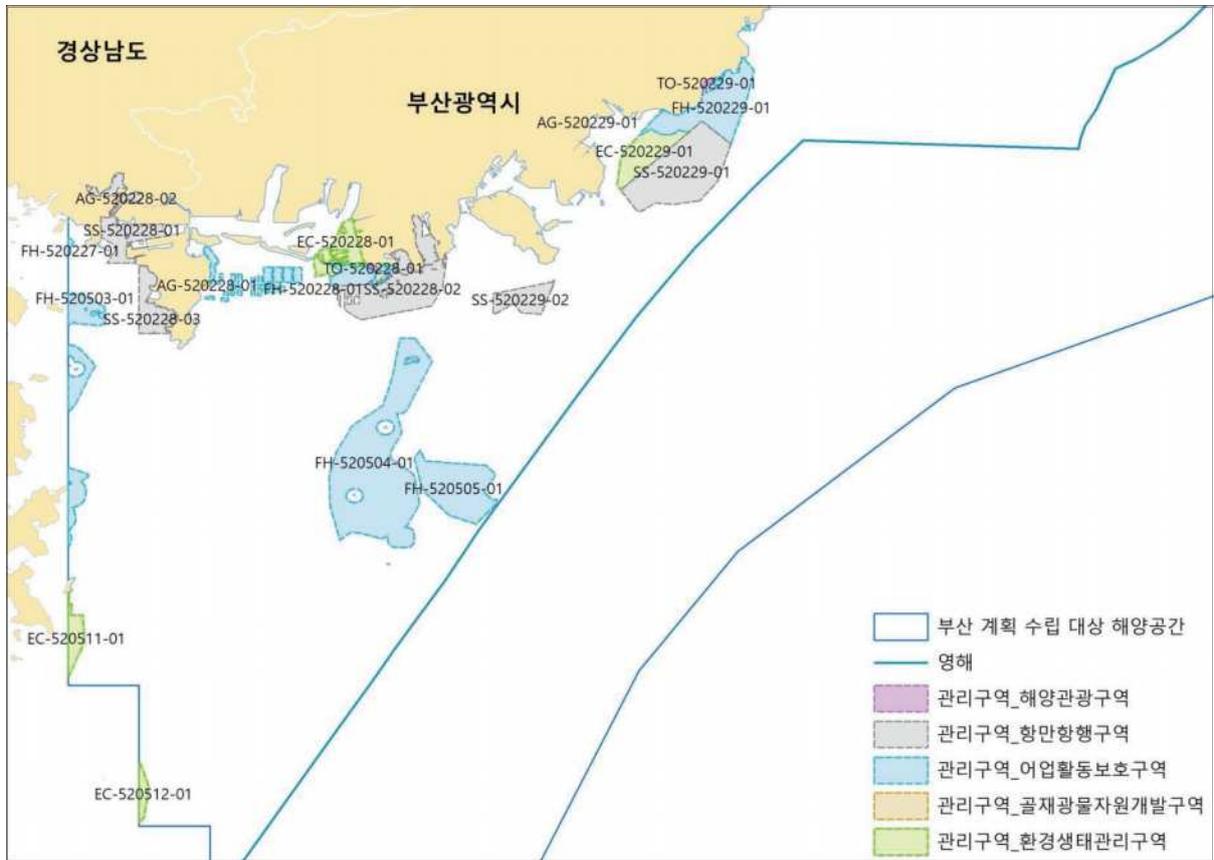
〈표 3-12〉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부산 면적(km ²)		영해	%	EEZ	%	영해+EEZ	%
전 체		2361.54		3164.90		5526.44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701.70	29.71	1289.08	40.73	1990.78	36.0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08	0.05	0.00	0.00	1.08	0.02
	해양관광구역	61.54	2.61	0.00	0.00	61.54	1.11
	환경·생태계관리구역	158.73	6.72	0.00	0.00	158.73	2.87
	연구·교육보전구역	9.26	0.39	0.79	0.02	10.05	0.18
	항만·항행구역	409.87	17.36	34.01	1.07	443.88	8.03
	군사활동구역	957.16	40.53	574.86	18.16	1532.02	27.72
	안전관리구역	248.35	10.52	0.00	0.00	248.35	4.49
소계		1809.15	76.61	1787.87	56.49	3597.02	65.09
미지정 해역		552.39	23.39	1377.03	43.51	1929.42	34.91
합 계		2361.54	100.00	3164.90	100.00	5526.43	100.00
중복		738.54	31.27	110.87	3.50	849.41	15.37



* 공동 계획수립 해양공간은 법 제7조②항에 따라 관련 시·도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 등)될 수 있음(경남-부산 공동 계획수립 해양공간 : 218.968km², 부산-울산 공동 계획수립 해양공간 : 460.207km²)

〈그림 3-19〉 부산 해양용도구역 내 관리구역 현황



1) 어업활동보호구역

□ (정의)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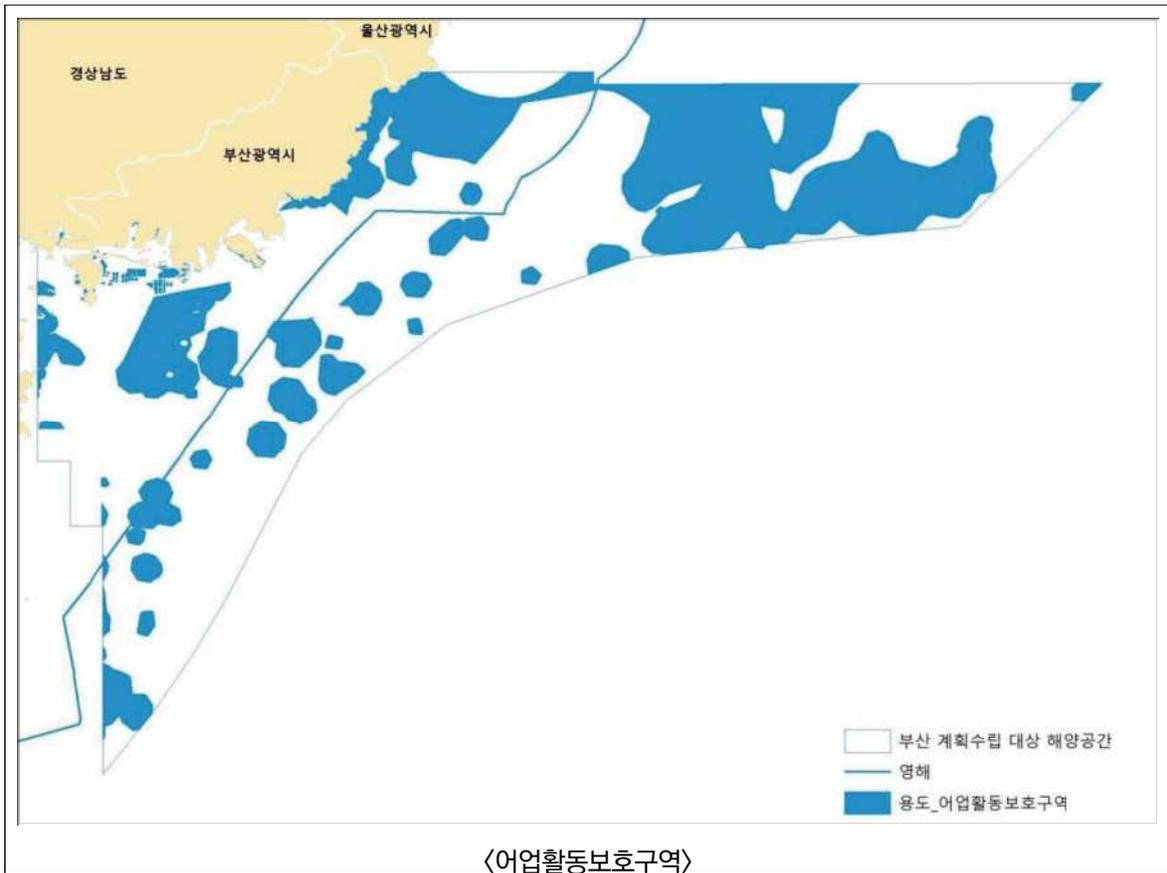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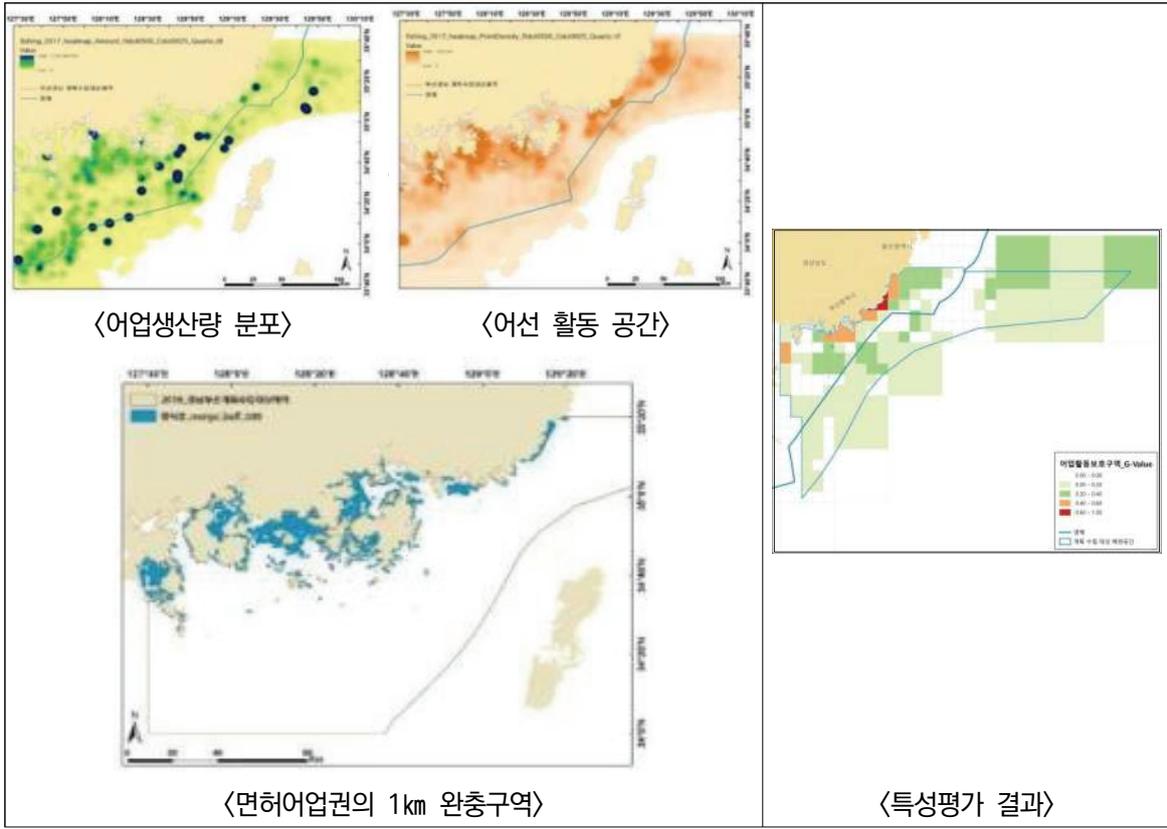
- 마을어업, 양식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역
- 어업생산량이 높거나, 조업 활동이 활발하여 어업활동의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수산자원 조성, 수산생물의 산란지 혹은 서식지의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해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산란지·서식지 보호에 따른 생산량 지속으로 지역 경제적 이익 증진
- 어업활동보호구역에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되,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의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업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기존 법정 보호구역(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등), 조업위치 기반 연근해 어획량, 어업 밀집도 (V-PASS), 양식장(면허어업)을 고려하여 구획
 - 특성평가 결과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격자를 우선적으로 포함.
 - 마을어업 및 양식업 보호를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은 면허시설 주변 해역 1km를 포함하여 확대 배분
 - 잡는 어업 활동 공간은 조업 위치에 기반한 어획량 분포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르는 어업 활동 공간은 양식 면허 시설이 분포한 공간으로 확인



□ 용도 상충 조정

- (항만구역 내 용도 조정 : 어업활동보호구역) 항만구역 내 마을어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역은 용도가 겹치는 공간이지만, 마을어업권이 설정되어 어민이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고 있으므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 부산항 내 영도구 주변해역은 기존 어업 활동을 고려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 어로활동 등 어장기능 유지 및 증진 우선
- (항만구역 내 용도 조정 : 어업활동보호구역) 부산항 항만구역 내 사하구의 낙동강하구 일원은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몰운대 및 낙동강하구 일원해역은 양식어장(해조류 양식과 마을어업)으로 이용되고 있음.
 - 개별법에 의한 기 지정 구역이 공존하고 있음. 현재 어업활동의 유지와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면허 구간(낙동강 하구~몰운대 일원)을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조정

(3) 공간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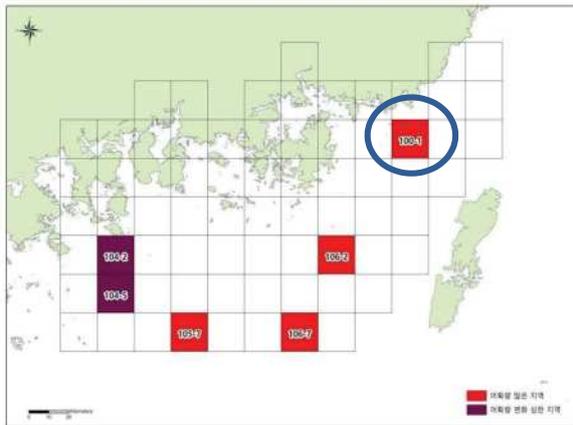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되, 수산자원 산란·서식 환경 보호와 수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 권장
 - 구역의 관리 목표와 상충·경합이 발생하는 활동(에너지개발 등)은 제한되며, 불가피한 활동의 경우 최소화 혹은 영향 완화
 -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 허용 등
 - 주요 지형·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연구·교육, 레저·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등 양립가능한 경우를 허용하고,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수산자원 서식·산란지 등의 압력이나 위협 활동(채취·채굴,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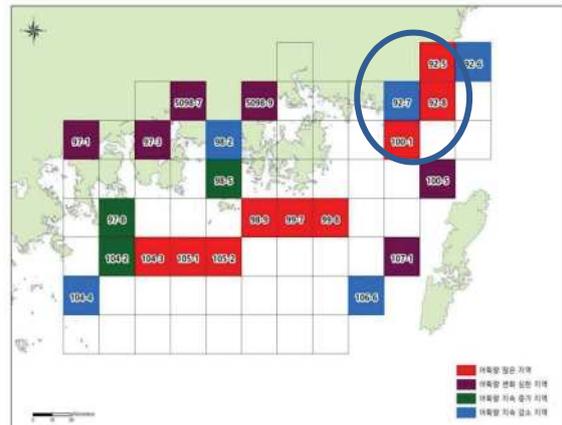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동 구역 대중성 어종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의 모니터링 및 위협 요인 분석
 - 고등어, 붕장어, 아귀 등 상업적 어종의 주요 서식지·산란지의 위협 요인(수산자원 고갈, 골재채취, 기후변화, 바다오염 및 쓰레기 등) 분석 및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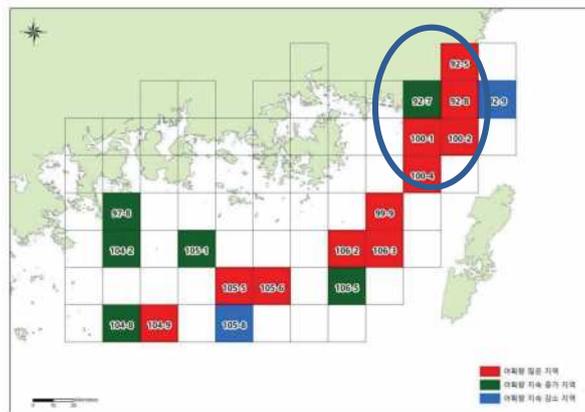
[고등어 생산이 높은 해역(소해구 100-1)]



[붕장어 생산이 높은 해역(소해구 92-5, 92-8, 100-1)]



[아귀 생산량이 높은 해역(소해구 92-5, 92-8, 100-1, 100-2, 100-4)]



주 : 동그라미 표시에 해당하는 소해구는 부산 대상 해양공간임.

□ 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어업권 설정해역은 어업활동의 유지와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보전 기능 우선

- 수산자원의 생애주기별(산란 및 서식 환경 등), 어종별 공간 분포 조사
 - 어획량 변화가 심한 해역(소해구 154-7, 154-8)의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항만·항행구역 내 수산자원 모니터링 등
- 어업과 상충하는 이용행위 규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 진행
 - 계획 변경 수요와 행위 상충해결을 위한 어업지역, 생산중, 생산량 정밀 자료 확보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골재·광물자원 부존량 혹은 해양에너지 자원량이 높은 공간에서 관련 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구역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의 의견수렴 과정을 함께 진행
- 수산자원 회복 정책* 실현하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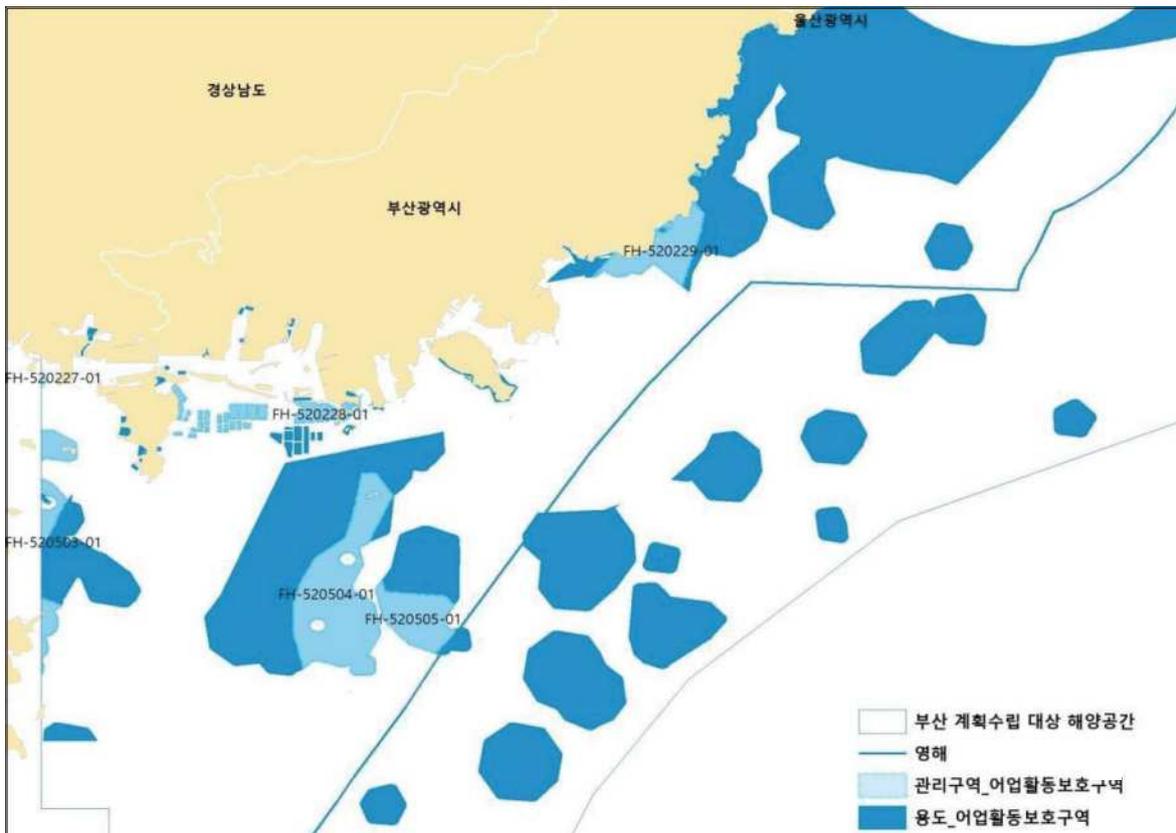
*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해양수산부, 2016) : 남획형 어종(고등어, 갈치, 전어 등)에 대해 현 수준의 생산량 유지

- 기장군 해역 어업활동의 유지와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관리 사업 추진
 -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 : 어항 등에 방치된 폐어구 등을 적기에 처리하여 어업기반 시설 유지 및 관리
 - 해안가 표착쓰레기 정화사업 : 관광객 및 어업인들에게 쾌적한 해안가 환경 제공
 -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 조업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도모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정구역, 해양레저(낚시활동) 및 관광활동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해양공간이 분포함. 해당 공간을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의 우선순위를 부여

〈그림 3-20〉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현황



〈표 3-13〉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의 우선순위

구 분		면적(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어업활동보호구역 (6개소)	FH-520227-01	18.00	환경생태계 해양관광(낙시 활동) 항만항행(선박 통항)	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해구 합포마을, 수지마을 인근 갈피 서식지 분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역항 주변으로 대형선박 통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낙시활동이 많고 갯벌이 존재
	FH-520228-01	10.69	환경생태계 항만항행	환경생태계	<input type="checkbox"/> 가덕도 인근 양식 활동이 활발한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덕도 인근의 습지보호지역 및 문화재 등 해양생태보전 관련 법정구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역항 항만구역 내로 선박 통항이 잦은 공간
	FH-520229-01	18.08	환경생태계 해양관광 (낙시활동)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기장군 해역에서 양식활동 및 조업이 활발한 지역임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장군 해역에 게바다말(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안을 따라 해수욕장(해운대, 송정) 등 분포 ※ 풍력자원부존도(6m/s이상), 해기해상풍력단지(청사포) 개발 추진 중
	FH-520503-01	76.91	해양관광(낙시 활동) 항만항행(선박 통항)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낙시활동 밀집구역,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이 존재하여 관광특성이 높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선박의 통항이 이루어짐
	FH-520504-01	53.08	해양관광 (낙시활동)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이 활발한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낙시활동 밀집 구역
	FH-520505-01	17.92	해양관광 (낙시활동)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이 활발한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낙시활동 밀집 구역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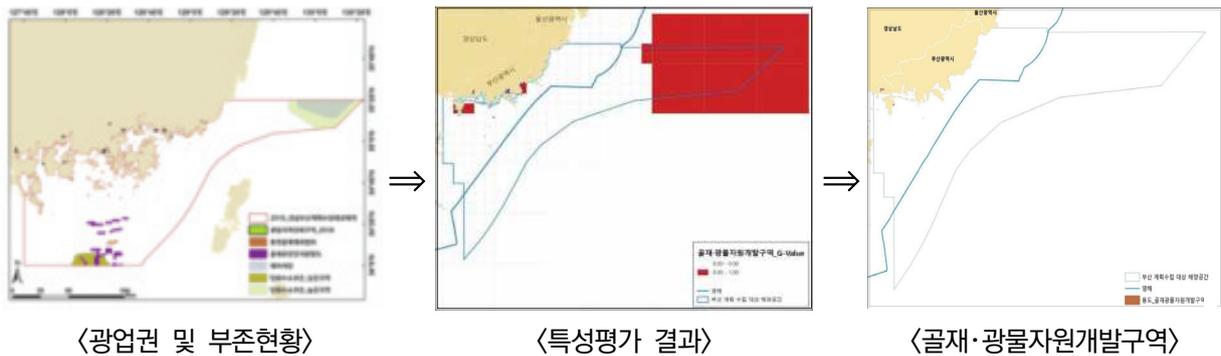
□ (정의)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골재 및 해저광물 탐사·채취와 수산활동 간 상충 최소화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광업권(탐사권, 채굴권) 설정 현황, 해저광구, 광물자원 부존량(해저석탄, 탄화수소 등)을 기준으로 어업활동, 환경생태, 항만·항행활동과 상충 조정하여 설정



□ 부산 해역에 채굴권¹⁹⁾이 설정된 광구(강서구, 수영구)가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골재·광물자원 개발구역으로 지정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광업권 설정 해역의 환경친화적 채취 활동

- 채취활동 이외의 시간을 달리하여 공존 가능한 해양이용 행위(어업활동, 항행활동 등)는 허용
- 광업권 설정 구역의 경우, 광업권 설정기간 만료 전 해양용도구역의 변경 필요성 사전 검토

* 핵심활동 종료 시 해당 용도구역의 유지와 변경에 대한 검토 후 조치²⁰⁾

19) 「해양공간계획법」부칙 제4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 : 「광업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20) 「해양용도구역관리지침」제14조(핵심활동 종료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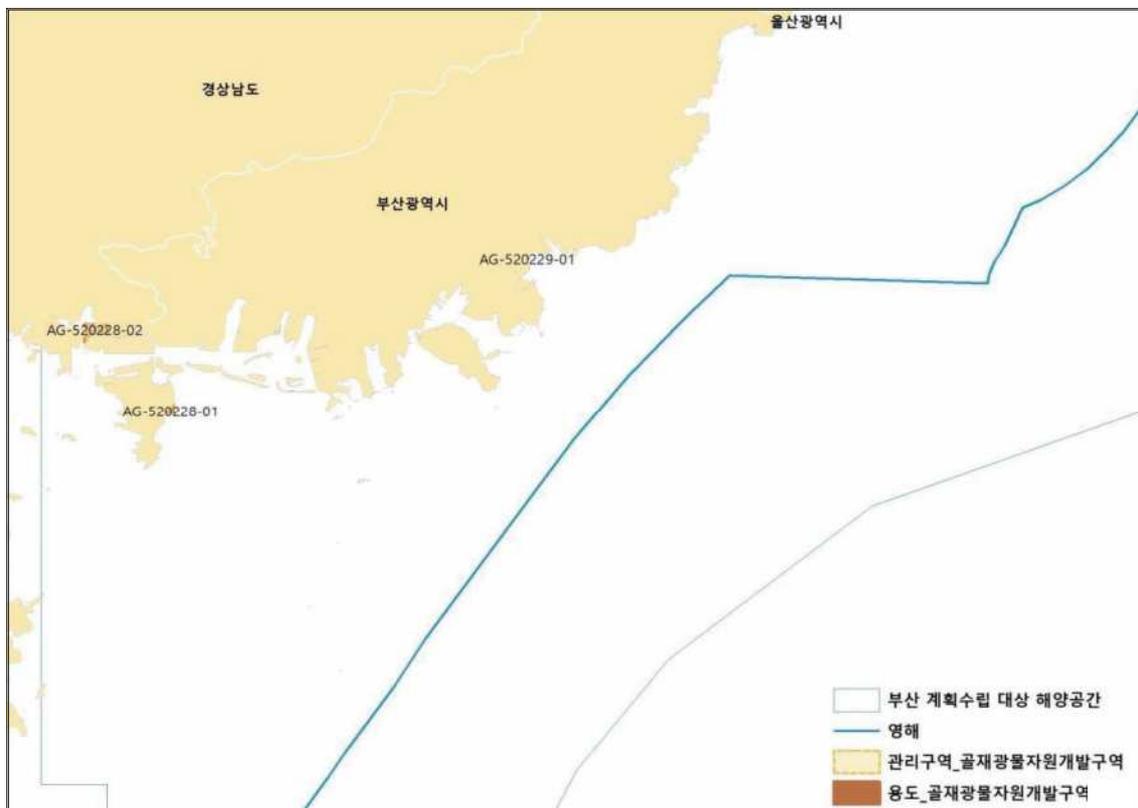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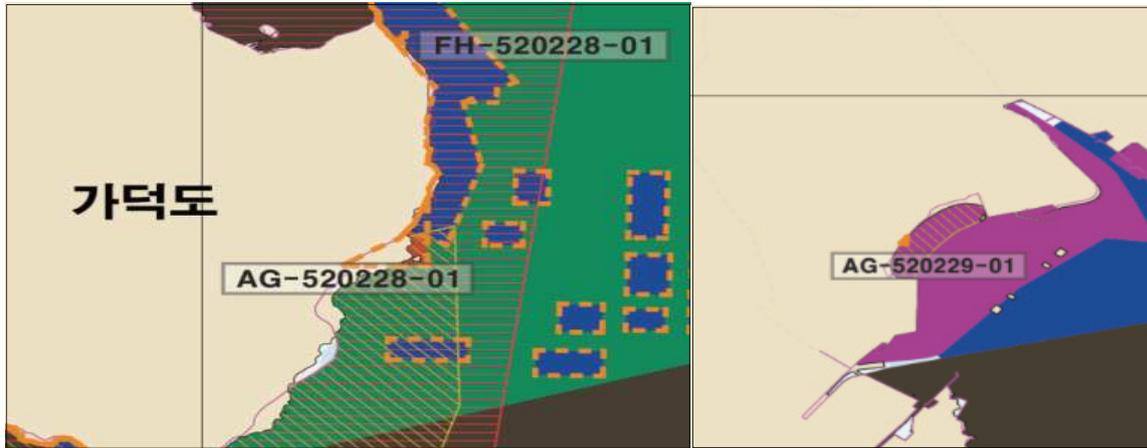
- 향후 해저광물 부존자원이 높은 해역(기장군 해저광구 등)의 해양활동(항행안전, 해양 생태, 수산자원 등) 시 개별 활동과 상호작용 및 영향 검토
 - * 기장군 해역에 해저광구(제6-1)가 존재하며 대우인터내셔널 및 한국석유공사가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음.
- 채굴권 설정 광구에 대해 인근 해양 관광과 해양생태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채굴계획 인가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채굴권 설정된 해양공간은 법 부칙에 따라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다양한 해양활동이 중첩된 공간으로 관리의 우선순위는 환경·생태계 관리임.
- 해수욕장에 인접하여 채굴권이 존재하는 해양공간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다양한 해양활동이 중첩된 공간으로 관리의 우선순위는 해양관광임.

〈그림 3-2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분포





〈표 3-14〉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구 분		면적(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3개소)	AG-520228-01	0.14	환경생태계 해양관광(낚시 활동) 항만항행	환경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 납석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46662 , 허가 기간 : 2019.07.28. - 2039.07.27.)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덕도 인근의 습지보호지역 및 문화재 등 해양생태보전 관련 법정구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역항 항만구역 내로 선박 통항이 잦은 공간 ※ 채굴권(고령토, 납석) 허가기간 만료 이후 용도 조정 필요
	AG-520228-02	1.18	환경생태계 어업활동보호	어업활동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광업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074748, 허가 기간 : 2005.6.30.-2025.6.29)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변에 양식장이 존재하며, 잘피가 분포하여 친환경적인 채굴 활동 추진 ※ 광업권(고령토) 허가기간 만료 이후 용도 조정 필요
	AG-520229-01	0.003	환경생태계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금, 은, 동, 연, 아연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100485, 허가 기간 : 2018.09.29. - 2038.09.2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수욕장 내 골재채취 광구(채굴권)가 존재하며, 채굴시 친환경적으로 채굴 필요 ※ 채굴권(금, 은, 동, 연, 아연) 허가기간 만료 이후 용도 조정 필요

3) 해양관광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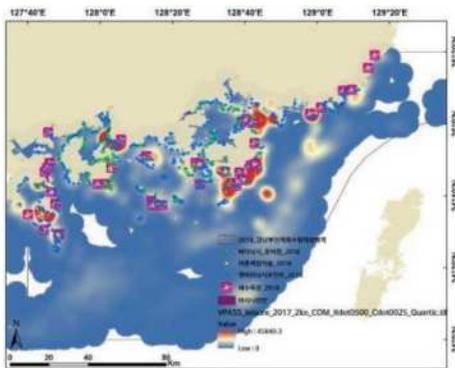
□ (정의) 해양관광·레저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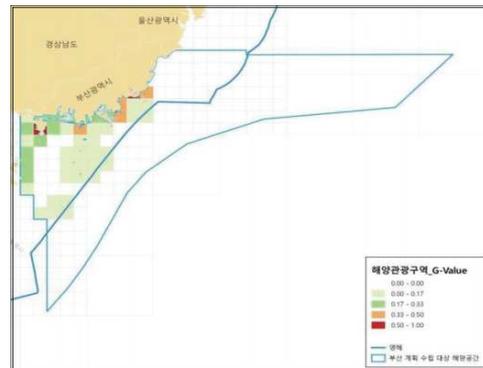
- 해양레저, 해양친수, 마리나, 크루즈 등 다양한 해양관광·레저 수요 충족 및 핵심 공간의 해양 관광 활동 증진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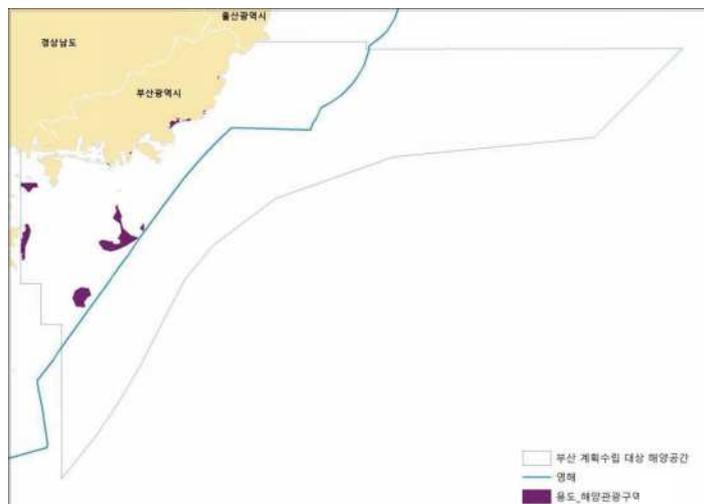
-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마리나 시설 및 항만, 낚시(갯바위, 선상) 활동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설정
 - * 마리나 예정구역은 특성평가에 반영하였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용도구역 지정 시 미반영
 - * 속도 알고리즘(2knot 이하, 평균 유속 1m/s)을 통한 낚시활동 공간 추출 : 해운대, 사하구 앞바다의 낚시 활동 집중



〈해양관광 법정 구역 및 낚시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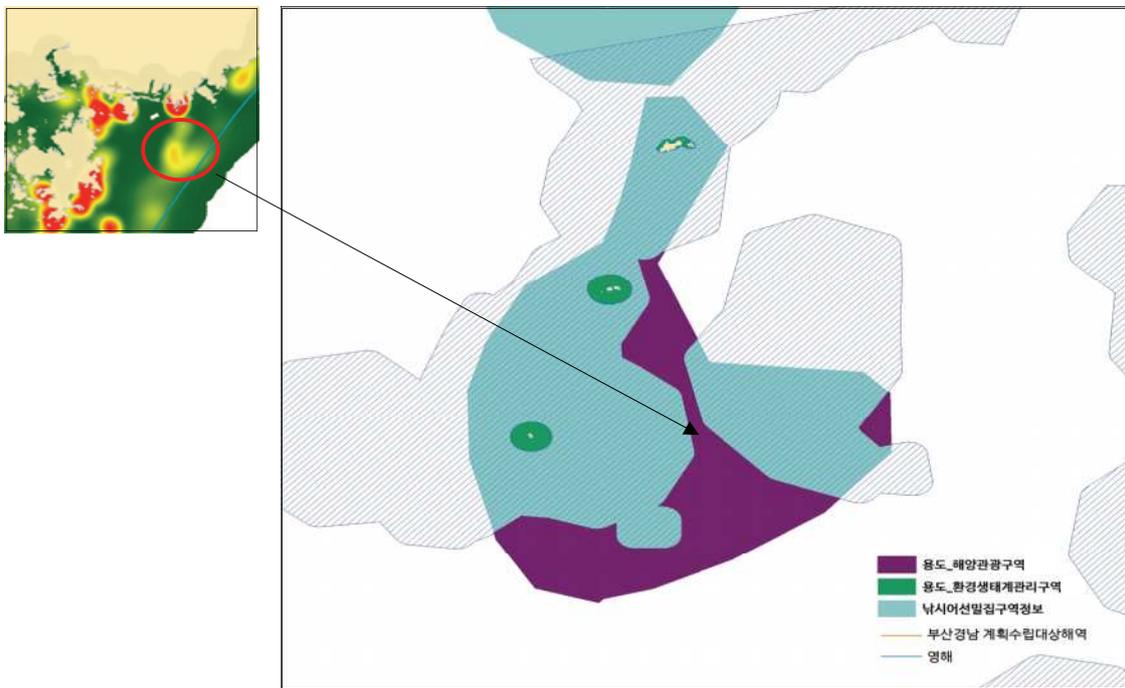
〈특성평가 결과〉



〈해양관광구역〉

□ 용도 상충 조정

- 해양관광·레저활동(낚시 활동) 집중 공간과 타 이용·보전 용도(항행, 어업, 환경·생태계 보전)가 중복된 공간에서는 항행, 어업, 환경·생태 보전의 용도로 설정
 - * 어업, 해양환경·생태 유지, 낚시 활동의 안전이 우선
- 중복된 해양공간(나무섬 및 북형제섬 주변해역 등)에 대해 해양관광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해양관광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 방향을 제시



〈낚시활동 집중 공간 해양용도구역 설정 현황〉

- 해운대구 해양공간은 해양레저·관광 이용·개발과 이용(해수욕장, 어장, 어항 등)에 따른 이용 용도가 중복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 방향 설정
 - 수영만 마리나 조성사업 등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양 관광 기능이 우선시 되도록 함.
 - *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기지, 동백섬마리나 해양거점기지 조성, 해운대 마린시티 연안정비사업 등
 -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해양공간의 이용 실태와 현황에 맞추어 설정
 -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우동항, 청사포항 일부, 미포항) : 어업활동보호구역
 - *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사업 등

-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연안정비사업이 중복된 해양공간, 즉 해운대 해수욕장 전면 해역은 어업 활용 제고를 위한 양식어장 정비사업이 진행 중임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조정
- 해당 해양공간의 용도는 어업활동보호이며 해양관광·레저 기능을 유지·증진해야 함.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해양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해양 관광·레저활동 활성화 및 어업의 잠재적 가치 창출 활동 유지

○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행위 및 개발 행위 허용

* 낚시 활동을 위한 시설,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활동과 시설, 어촌 체험과 관광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유람선·잠수함·코스 등 이용하기 위한 시설, 생태관광에 적합한 시설물, 해수욕장 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적 투자 및 개발 공간 확보, 투자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해양 관광활동 공간분석(빅데이터 분석)과 정보 인프라 구축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마리나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거점형 마리나 개발(북항(200척), 수영만(628척), 운촌(해운대)(250척), 다대포(70척)) 시 접근성, 중간 기항지 연계, 해양활동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추진

* 개발 완료 : 남천(36척), 동백섬 The Bay101(61척)

○ 해양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인위적 요인 분석

- 부산해역의 무인도서 혹은 해양보호구역 주변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낚시활동의 해양 서식지 압력 및 영향 분석

* 남형제섬 주변해역 및 나무섬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

○ 해수욕장 시설 정비 및 해양생태·해양환경·해양문화(어촌) 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송정해수욕장 서프빌리지 조성(군 하계휴양소 일부 구간 조정), 광안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공간, 해중경관 지구(다이빙 포인트, 해중전망탑, 수중레저 체험지구 등) 조성 수요 등/기장군 공수·강서구 대항·영도구 동삼 등을 대상으로 어촌체험 관광 활성화

○ 풍부한 해양자원과 해양성 기후를 활용한 해양친수·해양치유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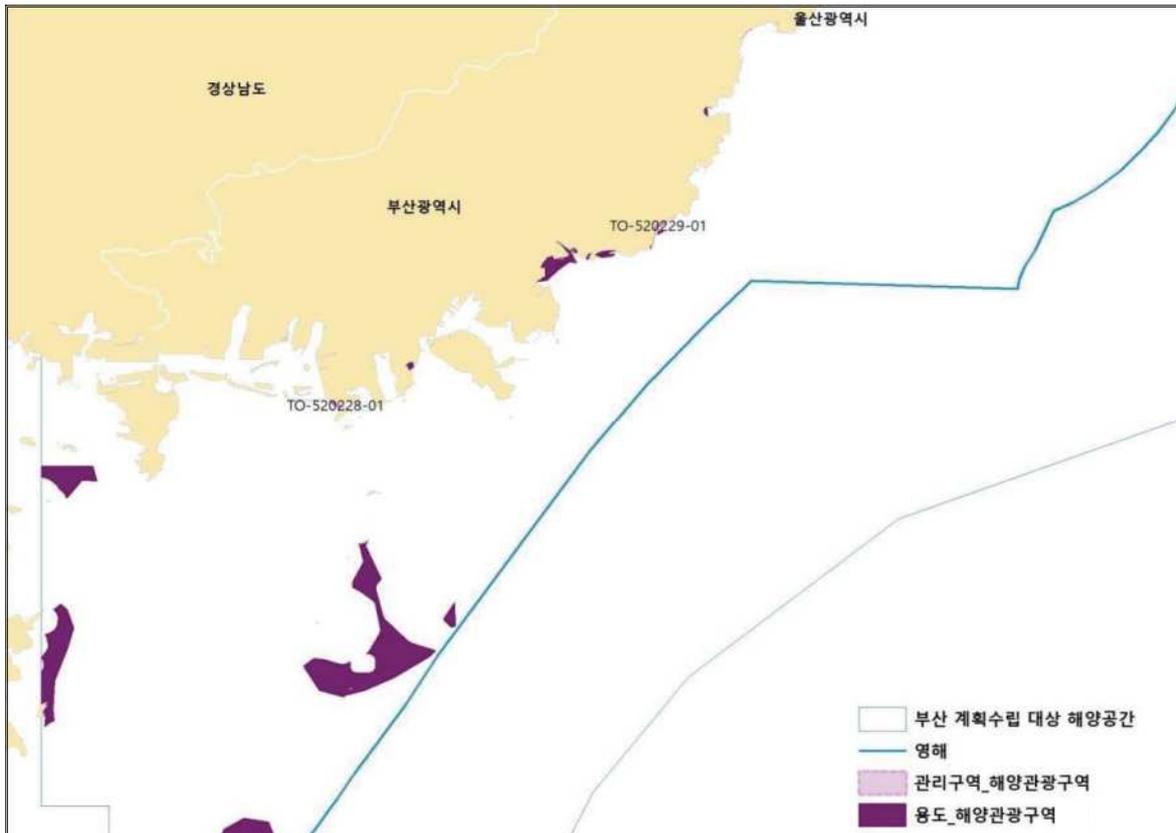
- 모래 해변, 하구 및 습지 경관 보호

* 해양치유 : 해수, 해풍, 해양생물 등 해양자원 활용,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 활동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해수욕장 주변에 마을어업이 이뤄지고 있는 공간을 관리구역으로 설정

〈그림 3-22〉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분포



〈표 3-15〉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구 분		면적(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해양관광구역 (2개소)	TO-520228-01	0.19	어업활동보호 항만항행 (항만구역)	어업활동보호	<input type="checkbox"/>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을 포함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마을어업(양식) 활동 관리 및 보호
	TO-520229-01	0.21	어업활동보호	어업활동보호	<input type="checkbox"/> 송정해수욕장 주변을 포함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마을어업(양식) 활동 관리 및 보호

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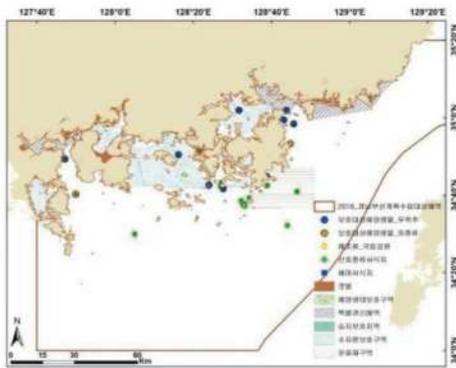
□ (정의) 해양환경·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해양환경·생태계의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보전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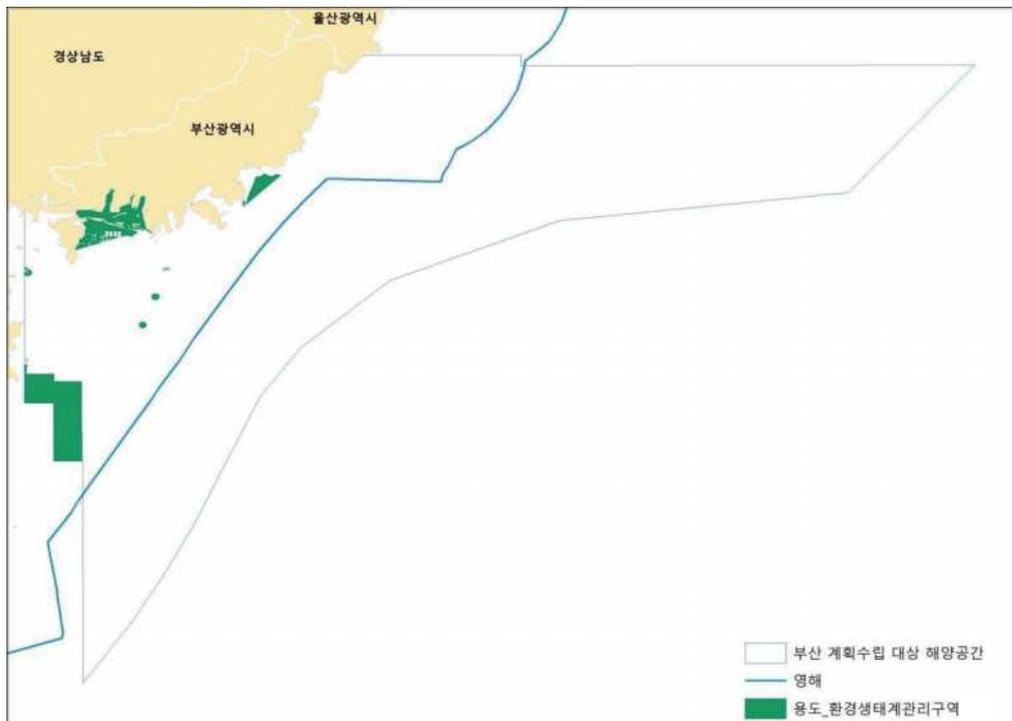
□ 연안·해양보호구역과 갯벌, 해양보호생물 출현 정보, 해양생물다양성지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 지정된 보호구역 및 해양생물다양성 지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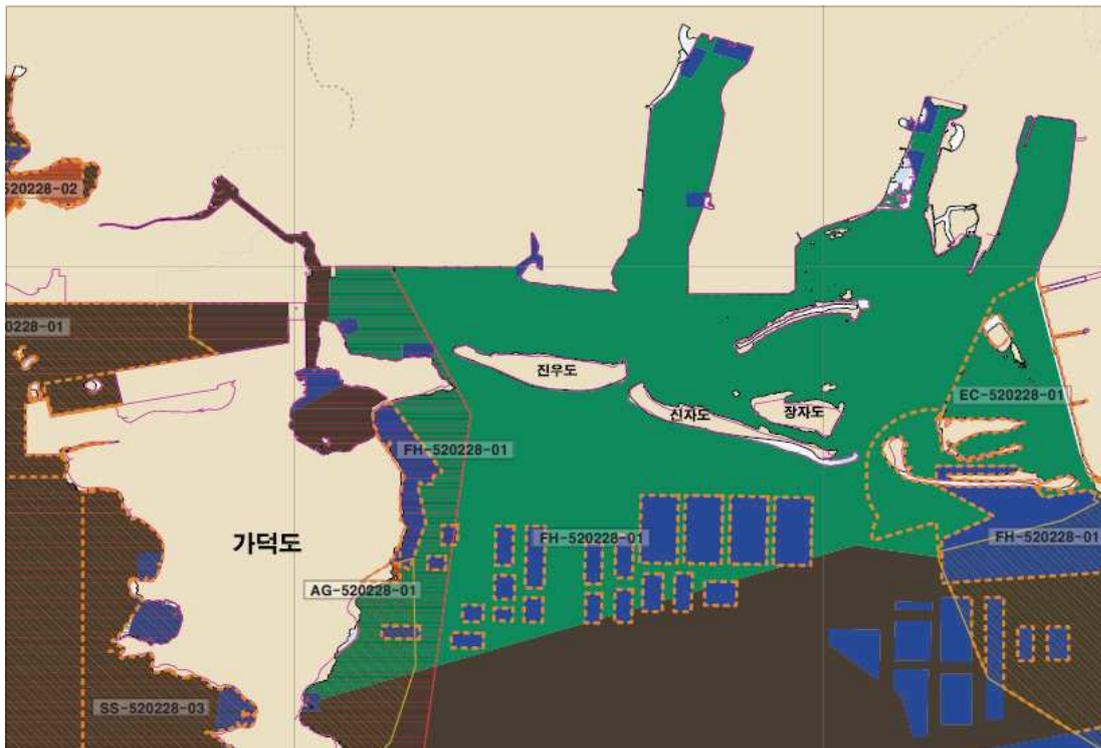
〈특성평가 결과〉



〈환경·생태계관리구역〉

□ 용도 상충 조정

- 환경·생태계보호구역과 중복된 해양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제도적 구역,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 지정
- 영도구 주변 해역은 환경·생태계 특성평가 결과가 높은 등급을 차지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나, 해안선 주변으로 면허어업권이 존재하는 어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을 어업활동보호구역로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 이 공간은 항만·항행구역로 지정하더라도 현재 환경·생태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향후 항만·항행 인프라 확충은 기존 활동과 상호작용 및 환경·생태계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 부산항 항계 내 가덕도 동측 해역은 항만구역에 포함되지만, 문화재보호구역, 특별관리해역, 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자연환경 및 생태 등을 고려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조정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마을어업권과 양식어업권이 설정된 공간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반영



자료 : 해양공간계획도서 NI52-02-28

〈가덕도 동측 해역〉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해양환경·생태계 보호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권장

- 구역의 관리 목표와 상충·경합이 발생하는 활동*(골재채취, 에너지개발 등)은 제한되며, 불가피한 활동의 경우 최소화 혹은 영향 완화조치 제시 필요

*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의 압력이나 위협 활동(채취·채굴,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 불가

* 주요 지형·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산물 공급, 연구·교육, 레저·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등 양립가능한 경우를 허용하고,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거주 및 활동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생물지리적으로 연결되는 독특한 연안·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 및 복원, 해양보호생물 회복 사업 추진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속적 모니터링 및 서식지 복원 검토 필요

* 바다거북 이동 경로 추적 연구 추진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분석 및 제거 추진

* 해양오염·서식지 훼손, 자원이용실태 주기적 점검 등 해양생태계 취약성 분석

- 해양생태계 및 환경 감시 강화를 위해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시 지역 시민 단체 참여

- 해양환경·생태 모니터링의 비용, 복잡 다양성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모니터링은 그 효용성, 신뢰성에 한계가 있음. 동 구역의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남형 제섬 및 나무섬 주변해역, 낙동강 하구의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을 시민 참여 모니터링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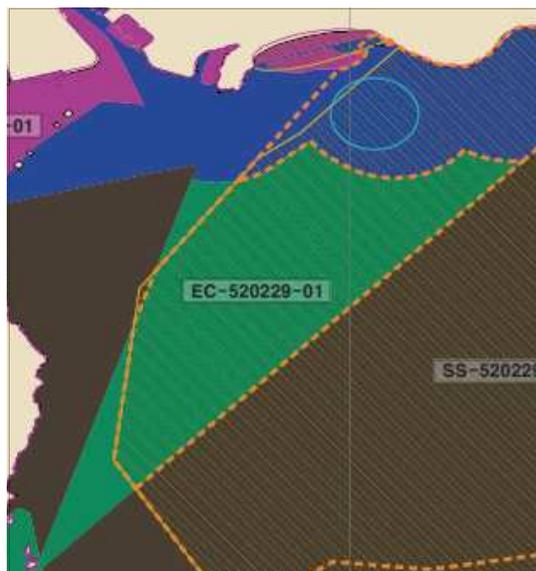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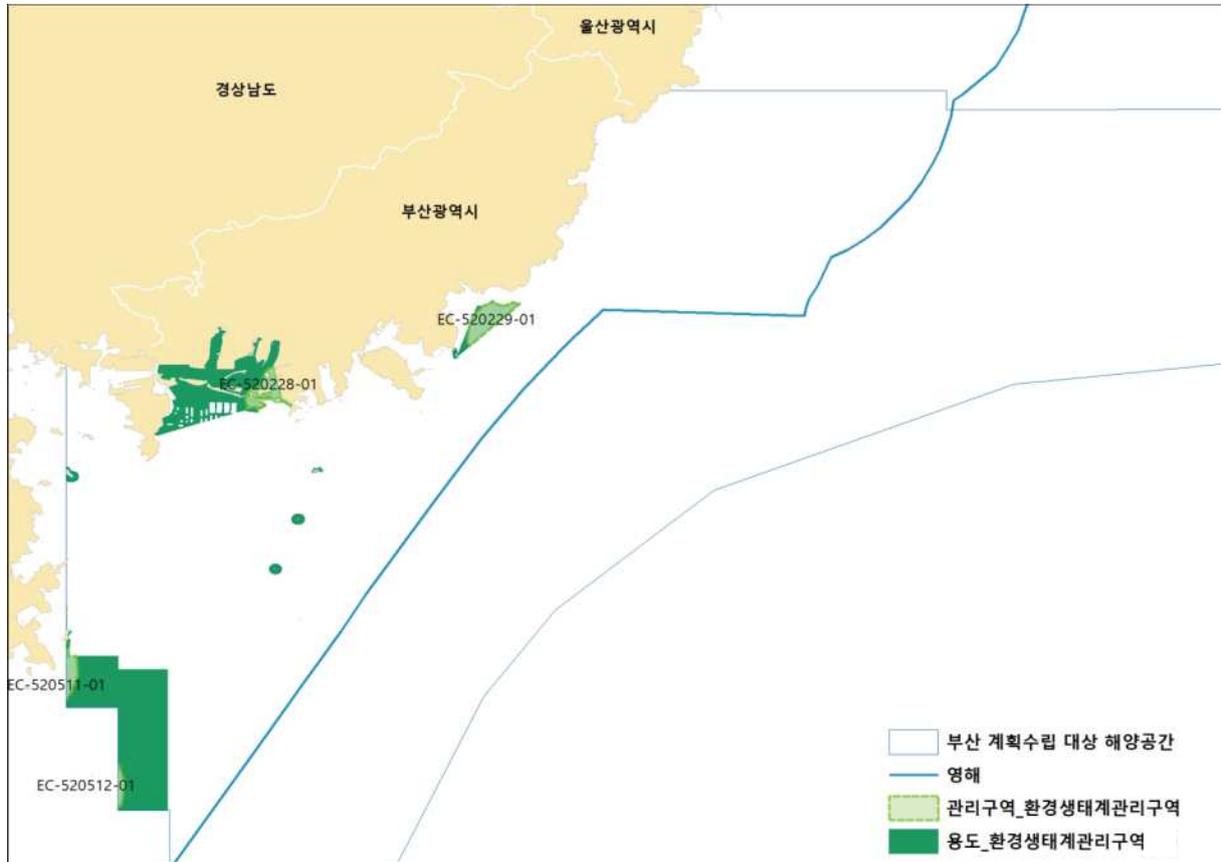
- 시민 참여에 의한 해양생태 및 환경 자료 수집, 주요 이슈 발견 및 해결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을 보완 기대

* 해양생태계 서비스 규명 및 가치 평가 추진(R&D 추진 중) : '생태계기반 해양공간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17~'21, KMI 등 7개 기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를 산정하여 이용·개발 사업 및 해양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기준으로 활용

※ 기장군 자력 발전소 앞 주변 해역의 해양수질 관리 : 온배수 이동 및 확산 정보,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 어업활동 등 주변 해양활동과 상호작용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필요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그림 3-23〉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분포



〈표 3-16〉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구 분		면적(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환경·생태계관리 구역 (4개소)	EC-520228-01	6.85	어업활동보호 해양관광(낚시 활동) 항만항행(선박 통항)	항만항행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습지보호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해구 정천 인근 잘피 서식지 존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박의 통항이 우세하며, 그 외 어업 및 관광 활동이 이루어짐
	EC-520229-01	8.94	어업활동보호 해양관광(낚시 활동)	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환경·생태 특성이 3등급으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해양공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양관광 및 어업활동이 양립하는 공간으로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양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우수한 해양생태계는 타 활동과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EC-520511-01	234.60	어업활동보호 해양관광(낚시 활동) 항만항행(선박 통항)	해양관광 (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다양한 해양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수의 양식장이 분포하며 대형 선박 통항 밀집구역으로 안전관리 필요
	EC-520512-01	41.15	어업활동보호 해양관광(낚시 활동) 항만항행(선박 통항)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아비철새도래지)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화재보호구역 내 해양활동은 환경·생태계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 이루어져야 함.

5) 연구·교육보전구역

□ (정의)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해양보호생물(바다거북 등)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 보호, 해양영토 관리 차원에서 영해기점무인 도서 관리

* “영해기점무인도서”란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함.(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해양조사를 위한 해양관측시설,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경로, 영해기점무인도서*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생도(매 서식, 주변 해역 낚시활동)는 군사·외교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특정도서로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 환경 유지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해양관측부이>

<특성평가 결과>



<연구·교육보전구역>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와 바다거북의 이동경로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 권장

- 서식 실태 및 해양관측 등 연구·조사 활동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해양활동 가능
 - 해양생물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활동 가능
 - 중요한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연구 활동 허용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실제적 관리 실현(연구조사, 주기적 점검* 등)
 - * 해양훼손 행위 방지, 불법 입도와 낚시 행위 등 오염행위 단속
- 바다거북 서식지 및 이동경로 상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개체수 변화 모니터링 및 감소 원인 규명 노력 추진
- 일본과 공동 서식지 실태 조사 및 연구 추진(우리나라와 일본 바다를 정기적으로 회유)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보호 및 감시 기능 강화
 - 인간과 바다거북이 공존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보전 교육 추진

6) 항만·항행구역

□ (정의)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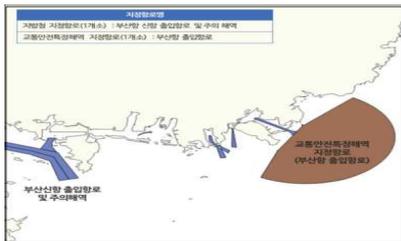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항만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 원활한 항만 개발·운영을 도모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 향후 항만·항행 기능 확대과정에서 타 용도와의 상충발생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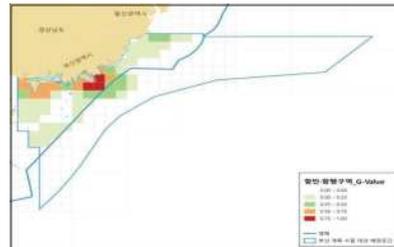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항만구역, 항로, 정박지,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상교통량(항적 등)* 등을 고려한 구역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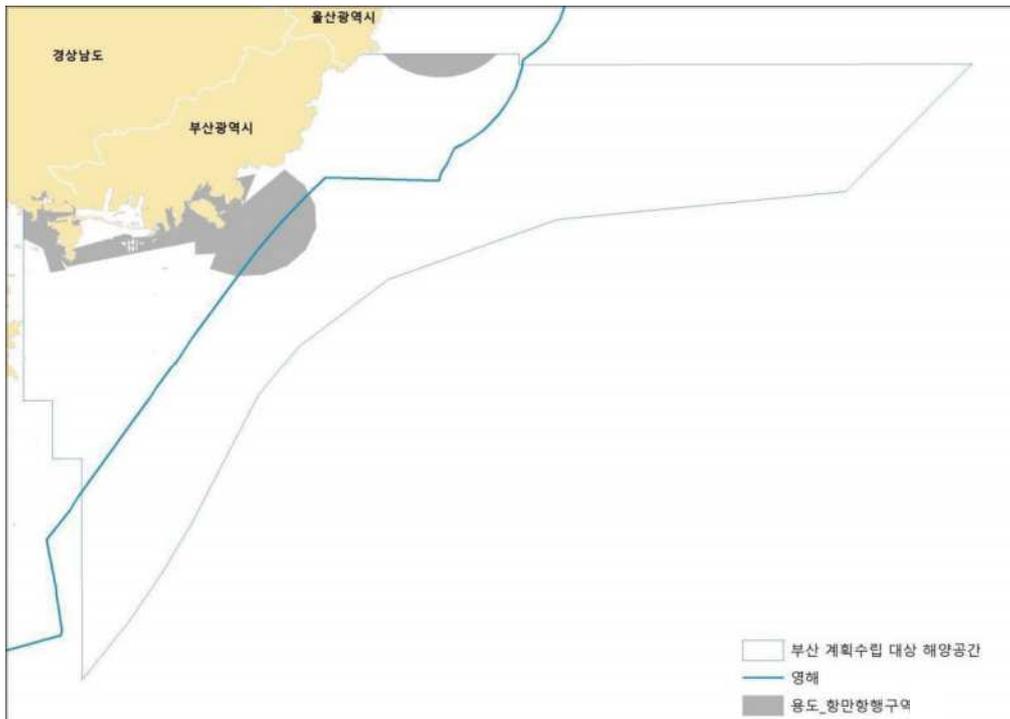
* GICOMS 데이터를 통한 화물선 및 탱크선 이동 공간 추출 : 선박의 주 이동 경로 확인



〈부산항 항만구역 및 항로 등〉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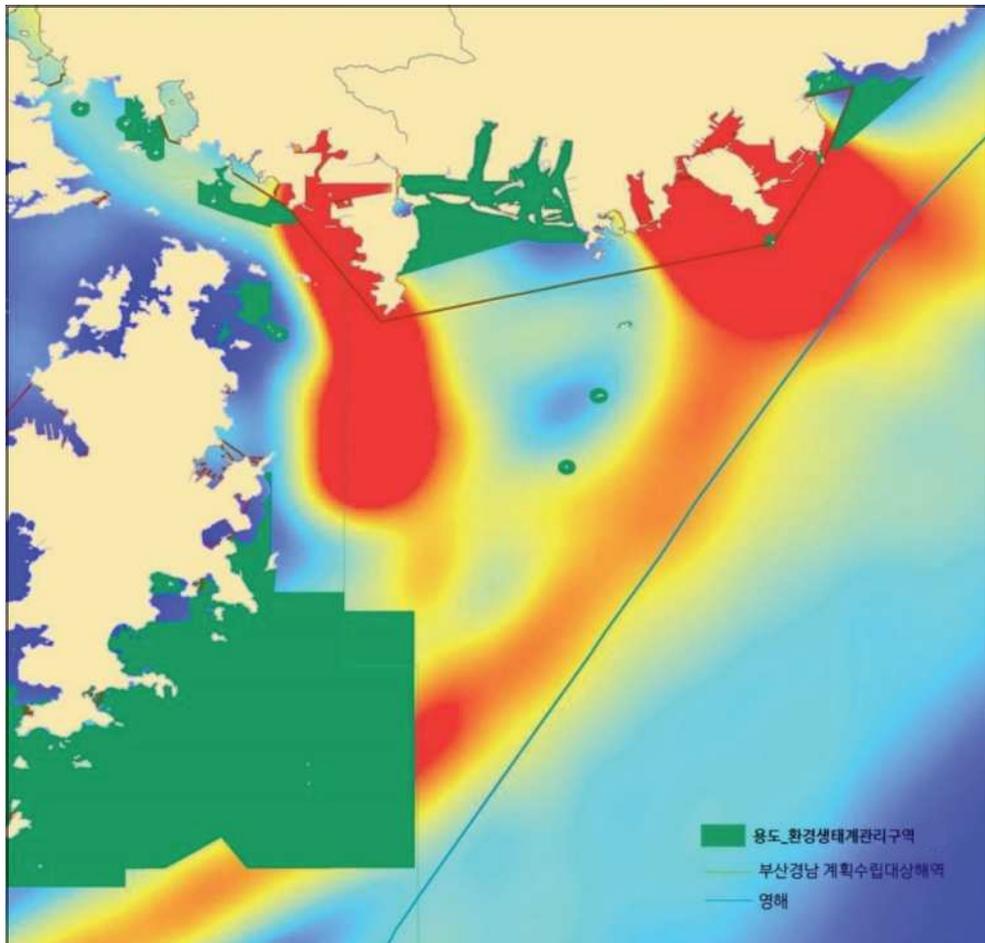


〈항만·항행구역〉

□ 용도 상충 조정

- 영도구 해안선을 따라 지정되어 있는 법제도적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동삼어촌 체험, 마을어업·양식어업 활동 공간은 개별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구역으로 지정
 - 동삼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지는 해양관광구역, 마을어업 및 양식어업은 어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 가덕도 동측 해역은 법제도적 현황(문화재보호구역, 특별관리해역, 습지보호지역 등), 이용·개발 현황, 자연환경 및 생태 등을 고려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그림 3-24〉 GICOMS 데이터를 활용한 화물선 및 탱크선 밀집 공간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항행활동 우선, 그 외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공존 가능한 경우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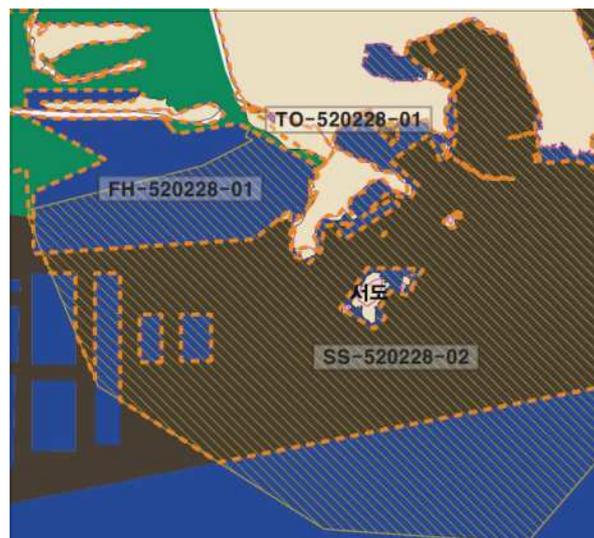
- 안전한 항만·항행 활동을 보장 및 보호를 위한 해저지형(수심) 변화를 주는 개발과 항로를 침범하는 해양기반시설 승인 불가
- 안전한 항행을 위한 항로 활동 보장 및 어업, 유어활동 안전 관리 강화
- 항만 활동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구역(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구역을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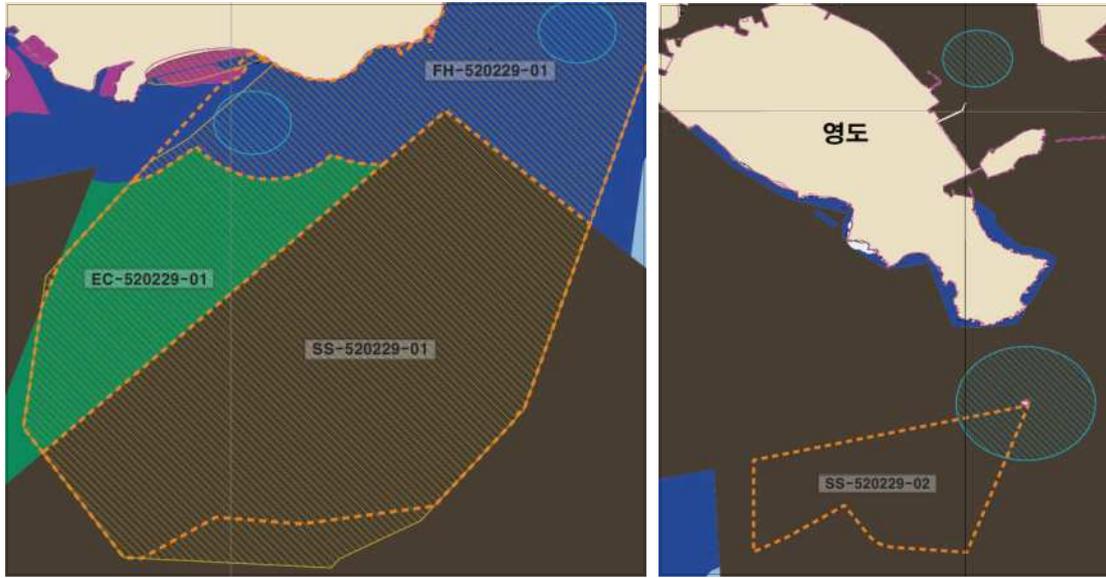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글로벌 항만으로서의 부산항의 강점을 살리고, 안전한 항만운영과 항로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준설 및 해저지형 등 특성 파악
 - 선박 입출항 추세, 선박규모 및 종류 등 항만 운영여건 변동 요인 점검
 - 항만시설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퇴적물 이동에 따른 수심 변화 등)의 영향을 점검하고 주기적 준설 및 조사
- 항행 사고 및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로 및 인접 해역의 시설물 설치 시 안전성 평가
- 항만구역 내 양식 활동(면허 어업권 설정), 해양관광 활동(마리나 항만, 어촌체험), 낙동강 하구 보전 정책(기 법정 보호구역 등) 등을 고려하여 항만·항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그림 3-25〉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분포





〈표 3-17〉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구분		면적(km ²)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항만·항행 구역 (5개소)	SS-520228-01	10.53	해양관광(낚시활동) 환경생태계 어업활동보호	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부산항(신항) 항만구역으로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덕도 인근으로 무역항 내에 낚시 활동 및 어업활동이 있으나, 환경·생태계의 특성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 필요
	SS-520228-02	22.79	해양관광(낚시활동) 환경생태계 어업활동보호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부산항 항만구역으로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대포 인근 해양레저·해양친수 활동 등 해양관광 특성이 높으며, 다수의 양식장 분포
	SS-520228-03	6.96	해양관광(낚시활동)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부산항 항만구역으로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덕도 주변 해역 해양레저·관광 활동 활발
	SS-520229-01	26.28	해양관광(낚시활동) 환경생태계 어업활동보호	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부산항 항만구역으로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물종다양성이 높아 환경·생태계 관리 특성값이 높음
	SS-520229-02	6.33	환경생태계 어업활동보호	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부산항 항만구역으로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박지 내 특정도서(생도)가 분포하며, 조업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짐. 해양생태계 관리 필요

7) 군사활동구역

□ (정의)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군사안보와 영토관리, 해상사격 훈련에 따른 주민 안전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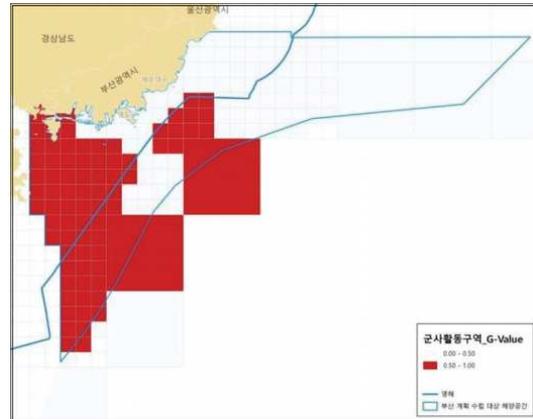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군사활동 수준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군사 관련 법정구역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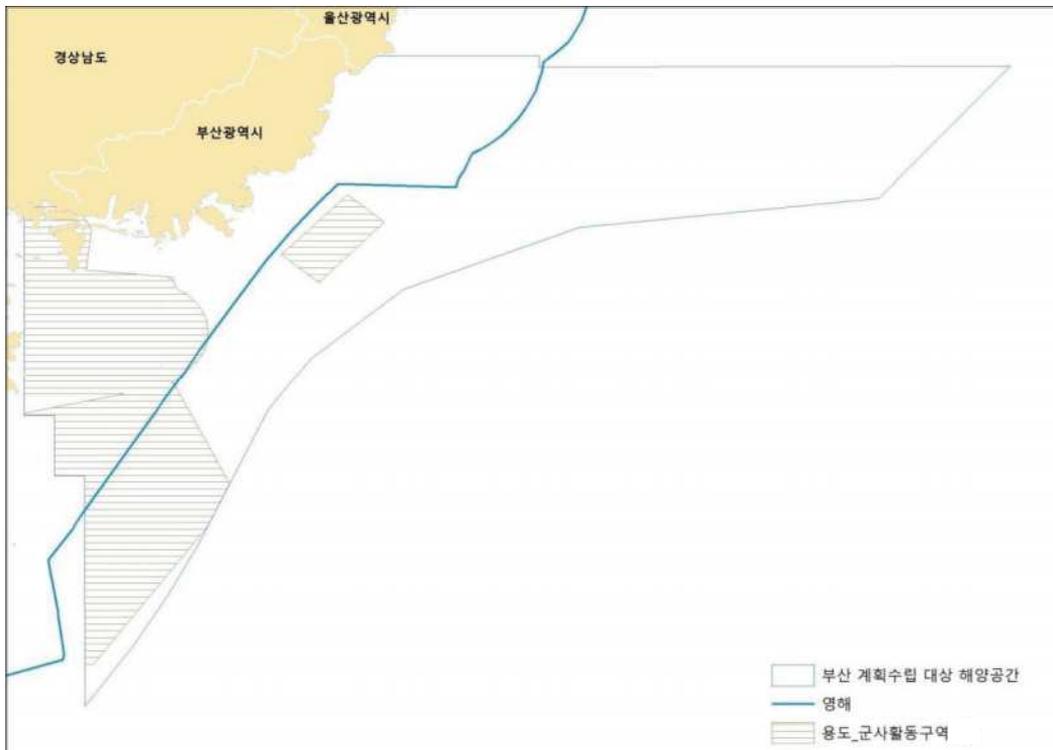
* 기존 법률, 정책, 연구 활동을 고려하여 지정되기 때문에 종합점수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해상사격 훈련구역〉



〈특성평가 결과〉



〈군사활동구역〉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군사활동 우선, 그 외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공존 가능한 경우만 허용

*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군사활동 수준을 추정할 수 없음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군사활동과 충돌되지 않고, 안보 및 영토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해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존 장려

* 송정해수욕장 인근 53사단 군사활동구역과 서핑특화구역 조정 등 지속 협의

- 군사활동구역 내 해양이용행위(불법 행위) 감시 강화

8) 안전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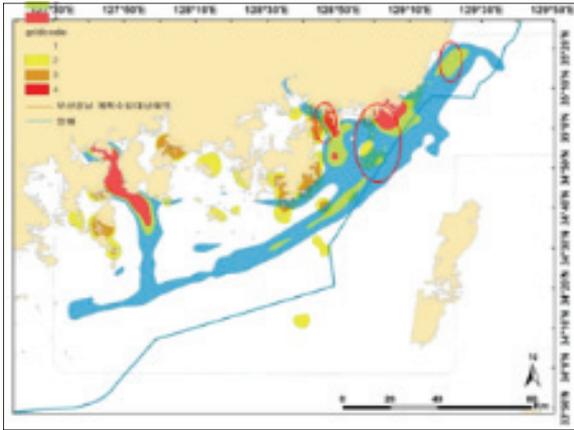
- (정의)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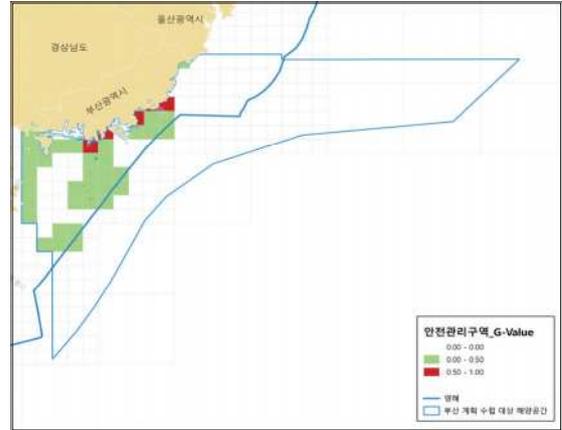
- 안전한 해양이용 및 활동 지원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해양에너지 시설 등 산업 및 기간 시설, 선박 통항 및 사고 위험 분석 등을 고려 설정



〈대형선박동향과 낚시활동 중복 공간〉



〈특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구역〉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사고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등 해양안전활동 지원
- 권장 해양 이용·활동 사항에 따른 행위 관리 사항
 - 안전부표, 안전경고문 설치 및 안전 순찰 활동, 해양안전 지식 보급, 해양안전 문화 확산 활동
 - 어선 종사자 및 해양 레저 활동객 등의 안전 역량 제고 및 교육 활동

2) 관리 방안

- 주기적 위험성 조사*, 위험요소 지속 발굴 등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
 - * 사고발생 해역 및 선박·어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해역을 대상으로, 해역 이용자 수,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위험성 정보 등 고려하여 실시
- 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한 안내·경고 등을 통해 해양이용자들이 미리 조심하도록 하는 등 사고발생 저감 유도
- 부산 기장 원전 주변해역에 대한 안전관리구역 지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필요

9) 에너지개발구역

□ (정의)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해양생태계와 균형을 이루는 해양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2) 용도구역 지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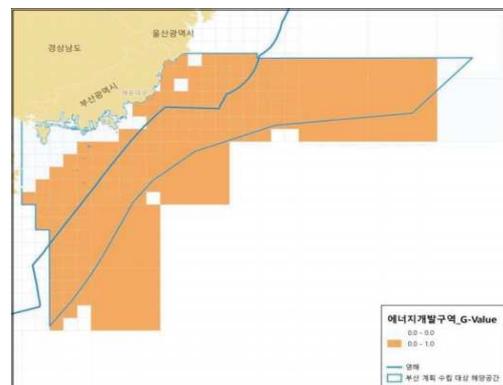
□ 풍력, 조석, 조류, 파랑, 온도차 등 해양에너지 환경과 입지조건·제약조건, 개발 계획 수요(발전 사업 허가 현황 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부산 해역의 해양에너지 별 자원량 분석 결과 해상풍력을 제외한 그 외 해양에너지 부존량 적음

* 해상풍력의 경우, 평균 풍속이 초속 6m/s 이상(양호)으로 나타나는 공간은 외해임.



〈해기해상풍력 개발 위치〉



〈특성평가 결과〉

〈 용도구역 미반영 〉

- 미래의 해양이용·개발 수요는 수요의 특성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

수용 가능	- 수요가 있는 해양공간에 대한 위치정보, 규모, 이용개발의 용도 등 구체적 이용개발 계획 또는 구상이 마련 - 해당 이용개발계획이 특성평가결과와 부합하고, 사회적 갈등이 작을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수용 가능
수용 불가능	- 이용개발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에 대한 위치정보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특성평가와 해당용도의 특성과 불부합한 경우 수용 불가능

- 해운대·기장 해역에 해상풍력 개발 계획이 있으나, 수용성 확보, 행정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반영

* '20.1월 현재 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前 단계(해양공간 또는 입지에 대한 권리를 예정하는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음)

(3) 공간 관리 방안

-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한 타 이용행위와 충돌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메커니즘 (절차) 마련 필요



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제4장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운영 배경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과 이행을 위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함) 구성·운영 필요
 - 특히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 계획의 실효성 제고

* '18년에 부산 지역협의회를 임시 구성하여 위원들에게 제도 취지 및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현안 도출, 특성평가 결과, 해양용도구역 설정 등 관리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 부산광역시청의 추천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주요 해양공간 이용, 보전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 (기능)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에 대한 현안 및 관리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하여 검토²¹⁾
 - 대상 해양공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 해양용도구역 지정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 개선
 - 관리계획의 초안 마련 등에 관한 자문

□ 법적 근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본원칙(제3조) 및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개발 및 보전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국제 협력을 증진할 것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21)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3호)제23조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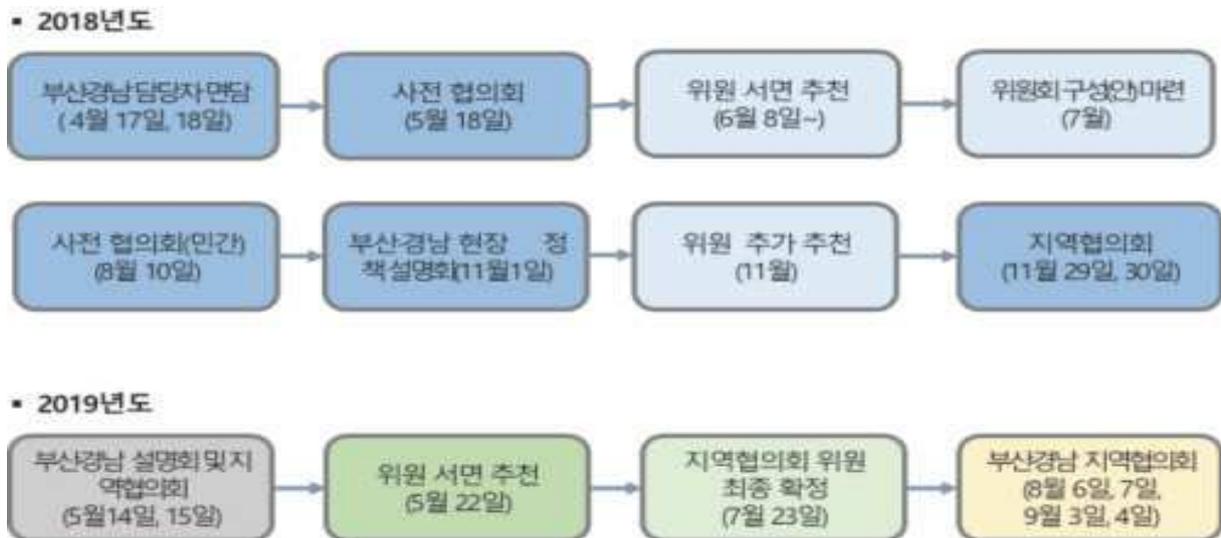
- 동법 시행령(제6조)은 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해양 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

*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추진 경과

- 2018년~2019년 8월까지 사전 협의회, 현장 설명회, 지역협의회를 개최
 -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업무협의회(18.4.17~18.)
 -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협의회(18.5.18.)
 - 위원 추천(18.6~7)
 -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18.8.10.)
 -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18.11.1.)
 - 위원 추가 추천(18.11)
 -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8.11.29.)
 -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8.11.30.)
 -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시군구 지자체 설명회(19.5.14.)
 - 위원 확정(19.7.23.)
 - 2019년 제1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8.6.)
 - 2019년 제2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9.4.)

〈그림 4-1〉 부산·경남 지역협의회 추진 일정



□ 부산·경남 해역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 원칙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주요 이용·개발·보전 활동 관련 민관산학의 이해관계자를 포괄*

* 특히 상충행위 관련 이해관계자(예. 어업인, 바다모래 채취업자)를 모두 포함

- 분야별 균형있는 참여 : 특정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분야별로 대표성을 갖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 구성 절차 및 경과

- 부산·경남 해역 주요 이해관계자 파악을 위한 기초 문헌연구
- 지역협의회 구성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광역지자체 업무협의('18.4.17~18) 및 사전 설명회('18.5.18.) 개최
- 해당 지자체의 추천으로 1차 구성('18.6~7)

〈표 4-1〉 부산 및 경남 지역협의회 1차 구성(안)(2018)

구분	1차 구성(안)
부산지역협의회	민(5), 관(7), 학(3), 연(5) 등 총 20명
경남지역협의회	민(8), 관(10), 학(2), 연(2), 산(1) 등 총 23명

- 1차 추천 위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18.8.10)에서 위원 추가 및 분야별 인원 조정 필요 의견이 제시됨
-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보완, 인원 과다인 분야 참여인원 조정, 주요 해양공간 활동 중 미포함 분야 이해관계자 추가 등을 위해 위원 조정·추가 추천('18.11)*

* 향후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필요 시 위원 변경 또는 추가 가능

〈표 4-2〉 부산 및 경남 지역협의회 2차 구성(안)(2018)

구분	2차 구성(안)
부산지역협의회	민(5), 관(7), 학(5), 연(9) 등 총 26명
경남지역협의회	민(10), 관(13), 학(2), 연(2), 산(1) 등 총 28명

- 부산시(20명), 경남도(30명)에서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특정분야(에너지, 골재, 군사 등)가 배제되어 관련단체로부터 해당지역 전문가 추천
 -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골재협회, 53사단, 해군작전사 등
- 부산지역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양공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으며('19.5.14.), 3차 추천 위원을 대상으로 부산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를 실시('19.8.6.)

〈표 4-3〉 부산 및 경남 지역협의회 최종 구성(2019)

구분	3차 구성
부산지역협의회	민(8)·관(8)·학(4)·연(6)·군(2) 등 총 28명
경남지역협의회	민(14)·관(10)·학(3)·연(2)·군(1) 등 총 30명

○ 부산광역시 지역협의회 위원 구성

- 지역협의회 위원은 총 9개 분야의 민(8)·관(8)·학(4)·연(6)·군(2)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
 - *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3. 참조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1)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업무협의회('18.4.17~18.)

□ 개요

○ 부산광역시 업무협의회

- 일자 및 장소 : 2018.4.17., 부산광역시 수산자원과
- 참석자 : 부산광역시(수산자원과,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협회

〈표 4-4〉 부산시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부산시 업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별 해양공간계획 관련 주관 업무부서 지정 필요 -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자체 권한 강화 필요

○ 경상남도 업무협의회

- 일자 및 장소 : 2018.4.18.,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 참석자 : 경상남도(해양수산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협회

〈표 4-5〉 경상남도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경남 업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이행의 제약요소 중 하나인 해상경계 관련 논의 - 해양공간계획제도 추진을 위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근거 필요 - 계획 수립시 지역협의체 등을 통한 합의 절차 필요

2)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협의회('18.5.18.)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8. 5.18. / 부산역 대회의실(509호)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부산시(수산자원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과, 클린에너지추진단), 경상남도(해양수산과, 항만정책과),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해양수산환경과, 항만물류과), 부산발전연구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연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올포랜드, 한국연안협회, 삼우소프트) 등

〈표 4-6〉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 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부산·경남 업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특성평가 및 갈등조정 방법 등에 관한 질의·응답 -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부처 협조 요청사항 등 논의 - 해양공간 정보의 체계적 수집, 표준화, 신뢰도 확보를 위한 관리 필요

3)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18.8.10.)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10 / 부산 크라운하버호텔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부산광역시(사하구 도시정비과, 강서구 해양수산과), 경상남도(창원시 수산과, 통영시 해양관리과, 사천시 해양수산과, 고성군 해양수산과, 남해군 해양수산과), 부산광역시 수협, 대형기저조합, 바다살리기국민운동 부산본부,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 한국해양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진해수협, 남해수협, 경남어류양식협회, 한국자율관리어업 경남연합회,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 거제환경운동연합, 남동해수산연구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한국연안협회, 올포랜드, 삼우이머션) 등

〈표 4-7〉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부산·경남지역 사전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정보 기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필요성 논의 - 체계적 관리·감독·평가의 필요성 논의 - 해양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추진 로드맵 필요 - 거버넌스를 활성화를 위한 활용 데이터 정보 공개 등 논의

4)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18.11.1.)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1.1 / 부산·경남 일부해역
- 참석자(총 16명) : 해양수산부(4명), 부산광역시(4명), 경상남도(3명), 해양환경공단(2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2명), (사)한국연안협회(1명)

〈표 4-8〉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부산·경남지역 현장 정책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해역 주요 현안(부산항 신항 건설, 낙동강 하구 개발, 해양레저 활동 증가, 해상풍력단지 조성, 크루즈 관광 거점화 등) 논의 - 경남 해역 주요 현안으로 해양관광(남해안 해양관광 특별권역 설정),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기한 연장, 외해 양식어장 개발, 항만 개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 현장답사 지역

- 오륙도 및 주변해역, 광안대교 주변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 구역, 가덕도 북측 신항만 건설 예정지 등 현장 답사

〈그림 4-2〉 현장답사 코스



- ① 부산항 ② 오륙도(해양보호구역, 군사지역) ③ 광안대교(해수욕장, 마리나항만) ④ 가덕도(신항만 건설 예정지역), ⑤통영 ~ 거제(수산양식시설 밀집해역) ⑥ 부산 남외항(선박 운항 및 묘박지)

5)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8.11.30.)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8.11.30., 부산 아스티 호텔 소연회장
- 참석자 : 해양생태과, 부산 지자체 해양공간·자원의 이용·개발 또는 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 참여연구진 등

〈표 4-9〉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의 보전가치, 각 해역의 특성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의 필요성 논의 -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 필요, 관련하여 해상풍력에 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논의 필요성 제기 - 남해 EEZ 골재 채취의 주변해역 영향, 어업 영향 등에 관하여 논의 - '20년 해상국립공원 범위 변경 가능성 논의

6)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제도 설명회 및 지역협의회('19.5.14.)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9.05.14.(화), KMI 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부산청, 부산시 및 시·군·구(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등) 관련 업무 담당자, 해양공간 이용 관련 이해관계자, KMI 등

〈표 4-10〉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제도 설명회 및 지역협의회

구분	주요내용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규제 및 행위 제한 여부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및 범위관련 논의 - 해역이용협의 등 유관 제도와의 관계 논의 - 해양공간계획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수급 등 논의 - 부산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논의

7) 2019년 제1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8.6.)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9.8.6.,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1
- 참석자 : 부산 해양공간지역협의회 위원(28명 중 21명 참석, 7명 불참), 해수부, 부산시 및 군·구 관련 업무 담당자, KMI, KIOST, KOEM 등 52명

〈표 4-11〉 2019년 제1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구분	주요내용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해역 해양공간관리 현안 논의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용도구역 지정의 적절성 검토 및 상충문제 논의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시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경우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어려움 - 가덕도 서쪽과 동쪽해역 일부 해양관광구역 지정 논의 - 영도와 감만 사이 연구교육보전구역 추가 필요

8) 2019년 제2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9.4.)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9.9.4., KOEM 해양환경조사연구원 1층 회의실
- 참석자 : 부산 해양공간지역협의회 위원(28명 중 21명 참석, 7명 불참), 해수부, 부산시 및 군·구 관련 업무 담당자, KMI, KIOST, KOEM 등 52명

〈표 4-12〉 2019년 제2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구분	주요내용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논의 - 해양공간계획 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 논의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수립 관련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일정 관련 협조 요청사항 등 논의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안정적 안착과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이후 첫 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주체임
-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함

1)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구축방향】 해양공간 보전, 이용, 개발을 위한 해양공간의 계획관리 체계 개편

-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를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합리적으로 설정·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는 해양공간관리계획 과정에서 과학과 참여에 의한 해양공간의 용도 파악을 통한 계획의 수립·이행을 보장하여야 함

□ 해양공간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 기반 구축

-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계획 수립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해양공간 이용·개발, 해양용도구역 지정·관리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
 - * 법률 시행 이전에 구성된 부산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 준비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감시 기능 강화
- 해양공간관리 필요성, 여건, 과제, 참여·협력 등에 해양공간관리 관련 홍보

□ 해양공간관리 정책 이행 조직 및 기반 마련

- 시·도와 관련 연안 시·군·구는 해양공간계획 시행할 담당 조직 또는 인원을 지정·배치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 *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둠

- 시·도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종합적 판단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수행
- 해양공간계획과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 등에 적합

□ 해양공간관리 역량 강화 및 인식 증진

- 해양공간관리가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공간정보체계*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 및 보전 관련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
 - *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 정보 공동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 중
-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 교육 및 연수 강화
- 지역주민 등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 부산광역시 및 각 구·군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해양공간계획의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 방향 등 상세한 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자료 배포
 - 정규교육과정에 반영 및 해양공간관리 전문인력 양성
 - *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과과정에 해양공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실천 사항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 시킬 필요가 있음.

2) 해양공간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현황과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해양공간 관리에 대해 점검 필요
 - 이행점검 대상은 부산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타 법령에 따른 인가 및 허가 등 해양공간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 해양공간관리 능력 등임.
- 타 부서의 협조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이를 위한 인력 및 조직 체계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는 해양공간계획체제 발전의 주춧돌
 - 해양공간계획체제의 도입은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과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정보의 분석, 관련 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수요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공간계획체제의 발전을 위해 해양공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관리역량 강화에 집중 필요

〈표 4-13〉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

이행점검 대상	세부 항목	방법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 이용개발사업 현황과 정해진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 추진 현황 (2)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3) 공유수면 매립 계획 및 추진 현황 (4)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현황	공유수면 점·사용 대장, 해양공간정보체계, 관련 담당 부서 자료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 대상 해양공간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대상 해역 내 면허어업권, 골재채취허가 등 면허 및 인가·허가 실적 (2) 대상 해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 여부 (3) 위와 관련한 협의 및 조정 실적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관련 담당 부서 자료 등
대상 해양공간의 해양공간관리 능력	(1)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부 (2) 해양공간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3) 대상 해양공간의 현안 및 갈등 사례 (4) 해양공간계획체제 활용 여부 (5)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여부 (6)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 담당 부서 자료, 관련 업무담당자 및 지역협의회 의견 등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3호)

-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시에 활용한 기초 정보,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해양용도구역 도면 등은 해양수산정보 공동플랫폼에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출

□ 관리계획의 자체평가

-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검토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주기적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참조
 - 자체평가보고서는 해당 년도의 이행 실적 및 부진 사유, 다음해 이행계획 및 추진 방안으로 구성되며, 앞서 설명한 주기적 점검 결과도 첨부되어야 함.

〈표 4-14〉 자체평가 보고서의 목차

<p>I. ○○○○년 자체평가의 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경 및 목적 2. 관리계획 추진경과 3. 평가대상 및 범위(요약) <p>II. ○○○○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현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사항 2. 해양용도구역별 사업·업무의 이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업무의 이행 현황은 미이행 /부분이행 / 완료로 제시 3. 지역협의회 운영 실적 <p>III. ○○○○년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평 2. 평가대상 사업(업무)별 자체평가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결과는 부적정, 적정, 평가유보로 제시 2) 평가결과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 방법 3. 기타 건의 사항 <p>【참고】○○○○년 이행점검 결과</p>
--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3호)



부 록

1. 부산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수요
2.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3. 부산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4. 부산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5. 공청회 결과
6. 관계기관 의견조회



부록 1 : 부산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수요

(1) 연안해양 이용개발 수요의 성격에 따른 특성분석

- 연안해양 이용개발 수요를 성격과 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기장군이 6건, 수산 관련 수요가 10건으로 가장 많음.
 - 부산광역시의 전체 이용개발수요는 23개로 이 중 6개가 기장군에 위치하며, 그다음으로는 기타 5개, 영도구가 각 3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 사업 성격에 따라 관광, 마리나, 수산, 에너지, 항만, 환경, 기타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산 관련 수요가 1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광 관련 수요가 5건, 나머지는 3건 이하로 미미함.
- 연안해양 이용개발 수요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업수요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동구가 가장 많고 사업 성격으로는 수산 관련 수요의 면적이 가장 많음.
 - 부산광역시의 전체 해양개발사업 사업면적은 52.50km²로 그중 39.44km² 광범위하고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의 이용개발 수요로 조사되었고 위치가 특정되는 이용개발 수요 중에서는 동구가 5.59km² 가장 많은 면적을 보임.
 -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수산 관련 수요가 45.95km²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관광관련 수요가 30.03km²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 초기단계에서 면적을 특정할 수 없는 수요 중 해상풍력발전단지 등이 있어 실질적인 면적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비는 항만개발을 위해 동구에서 이루어지는 북항개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체 사업비는 6조 493억원이고 이중 동구가 4조 3,5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는 기타지역이 1조 1,814억원으로 두 지역의 사업예산이 부산광역시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대부분을 차지함.
 - 사업성격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집계된 분류는 항만부분으로 4조 3,540억원으로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함.

〈부록표 1-1〉 부산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구분		관광	마리나	수산	에너지	항만	환경	기타	총합계
강서구	개수	-	-	2	-	-	-	-	2
	면적(km ²)	-	-	3.51	-	-	-	-	3.51
	예산(백만원)	-	-	1,873	-	-	-	-	1,873
기장군	개수	1	-	4	-	-	1	-	6
	면적(km ²)	불명	-	3.00	-	-	불명	-	3.00
	예산(백만원)	20,000	-	15,766	-	-	200	-	35,966
남구	개수	-	-	-	-	-	1	-	1
	면적(km ²)	-	-	-	-	-	불명	-	불명
	예산(백만원)	-	-	-	-	-	3,000	-	3,000
동구	개수	-	-	-	-	1	-	-	1
	면적(km ²)	-	-	-	-	5.59	-	-	5.59
	예산(백만원)	-	-	-	-	4,354,000	-	-	4,354,000
사하구	개수	-	-	-	-	-	1	-	1
	면적(km ²)	-	-	-	-	-	0.84	-	0.84
	예산(백만원)	-	-	-	-	-	15,000	-	15,000
서구	개수	1	-	-	-	-	-	-	1
	면적(km ²)	254.00	--	-	-	-	-	-	254.00
	예산(백만원)	3,800	-	-	-	-	-	-	3,800
수영구	개수	1	-	-	-	-	-	-	1
	면적(km ²)	0.03	-	-	-	-	-	-	0.03
	예산(백만원)	105,000	-	-	-	-	-	-	105,000
영도구	개수	2	-	-	-	-	-	1	3
	면적(km ²)	불명	-	-	-	-	-	불명	불명
	예산(백만원)	38,600	-	-	-	-	-	54,000	92,600
해운대구	개수	-	1	-	-	-	-	1	2
	면적(km ²)	-	0.92	-	-	-	-	불명	0.92
	예산(백만원)	-	162,300	-	-	-	-	94,400	256,700
기타	개수	-	-	4	1	-	-	-	5
	면적(km ²)	-	-	39.44	불명	-	-	-	39.44
	예산(백만원)	-	-	431,380	750,000	-	-	-	1,181,380
전체	개수	5	1	10	1	1	3	2	23
	면적(km ²)	30.03	0.09	45.95	불명	5.59	0.84	불명	82.50
	예산(백만원)	167,400	162,300	449,019	750,000	4,354,000	18,200	148,400	6,049,319

(2)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의 해역용도별 구분에 따른 특성분석

- 연안해양 이용개발 수요를 해역용도별 구분과 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 관광이 각 6개소로 가장 많은 수요를 보이고 기장군이 6건으로 가장 많은 사업분포를 나타냄.
 - 어업활동, 에너지개발, 항만항행, 해양관광, 기타 등 5개 용도해역 구분에 따라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를 구분한 결과 어업활동과 항만항행, 해양관광이 각 6개로 가장 많음.
 - 지역별 분포는 기장군이 6개로 가장 많고, 어업활동관련 수요의 대부분이 기장해역에 분포함. 반면 해양관광 수요는 남구와 동구, 사하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 분포함.
-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어업활동이 39.44km² 가장 많음.
 - 어업활동 사업면적 45.95km² 중 39.44km²는 기타지역에 위치하고, 항만항행 사업면적 5.59km²는 모두 동구에 위치함. 해양관광 사업면적 0.12km² 중 0.09km²가 해운대구에 위치함.
-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항만항행이 4조 8,839억으로 가장 많음.
 -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은 항만항행으로 4조 8,839억원이며, 동구가 4조 3,54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항만항행 다음으로 7,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에너지개발은 전체 사업비가 기타지역인 것으로 조사됨.
 - 어업활동은 기장군이 157.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해양관광으로 해운대구에 1,623억원이 집중되어 있음.

〈부록표 1-2〉 부산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해역)

구분		어업활동	에너지개발	항만항행	해양관광	기타	총합계
강서구	개수	1		1			2
	면적(km ²)	3,510,000		2,600			3,512,600
	예산(백만원)	173		1,700			1,873
기장군	개수	4			1	1	6
	면적(km ²)	3,000,000					3,000,000
	예산(백만원)	15,766			20,000	200	35,966
남구	개수					1	1
	면적(km ²)						
	예산(백만원)					3,000	3,000
동구	개수			1			1
	면적(km ²)			5,590,000			5,590,000
	예산(백만원)			4,354,000			4,354,000
사하구	개수					1	1
	면적(km ²)					836,000	836,000
	예산(백만원)					15,000	15,000
서구	개수				1		1
	면적(km ²)				254		254
	예산(백만원)				3,800		3,800
수영구	개수				1		1
	면적(km ²)				29,779		29,779
	예산(백만원)				105,000		105,000
영도구	개수			1	2		3
	면적(km ²)						
	예산(백만원)			54,000	38,600		92,600
해운대구	개수				1	1	2
	면적(km ²)				92,242		92,242
	예산(백만원)				162,300	94,400	256,700
기타	개수	1	1	3			5
	면적(km ²)	39,440,000					39,440,000
	예산(백만원)	1,480	750,000	429,900			1,181,380
전체	개수	6	1	6	6	4	23
	면적(km ²)	45,950,000		5,592,600	122,275	836,000	52,500,875
	예산(백만원)	17,419	750,000	4,839,600	329,700	112,600	6,049,319

부록 2 :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ID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2018091801-0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2018년 해양공간계획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부산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양공간 활용과 현안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문결과는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인터넷)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이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18년 10~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희정 전문연구원 외 연구진

문의사항 (주)리서치앤리서치(주)에, 실사 담당자 : 조신미, 부장 (02-3484-3050)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부산)		연락처(영도부)
연립 일시	___월 ___일 ___시			

연립원 기본사항				
본 연립 조사는 연립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연립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정권 확인 _____	배치권 확인 _____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올해 안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 19~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이상 <input type="checkbox"/> 6) 그 외의 나이
S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동구 2) 서구 3) 동구 4) 영도구 5) 남구 6) 해운대구 7) 사해구 8) 강서구 9) 수영구 10) 기장군 11) 그 외의 구 <input type="checkbox"/> 12) 영도구
SQ4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시군구에는 바다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input type="checkbox"/>

- 1 -

Q07. 다음은 부산의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혜택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의 혜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0에서 10까지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자신에게 중요한 정도와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도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0점일수록 중요도가 높습니다)

< 설명 >

- (1) 수산물 생산: 바다에서 물고기, 조개, 갑, 미역 등을 얻을 수 있다.
- (2) 관광자원 제공: 바닷모래나 여러 풍물을 얻을 수 있다.
- (3) 에너지 생산: 해상풍력발전 등 바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바다는 해양생물이 산란하고 사는 곳이다.
- (5) 오염 물질 정화: 바다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해준다.
-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바다는 낚시, 수영 등 사람들에게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바다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예술적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전통·문화로부터 혜택(어구·어업, 문화제, 풍교 등)을 얻는다.
- (8) 기후 조절 기능: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여 준다.
- (9) 재해 및 위험 관리: 바다의 해안·해안할·사주 등은 파도·해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바다는 영양염 순환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11) 해상 교통 및 운송 서비스: 바다는 해상 교통과 물류 활동을 지원한다.

1) 귀하에게 중요한 정도

귀하에게 중요한 정도	중요도 낮음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중요도 높음						
(1) 수산물 생산	0	1	2	3	4	5	6	7	8	9	10
(2) 관광자원 제공	0	1	2	3	4	5	6	7	8	9	10
(3) 에너지 생산	0	1	2	3	4	5	6	7	8	9	10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0	1	2	3	4	5	6	7	8	9	10
(5) 오염 물질 정화	0	1	2	3	4	5	6	7	8	9	10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0	1	2	3	4	5	6	7	8	9	10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8) 기후 조절 기능	0	1	2	3	4	5	6	7	8	9	10
(9) 재해 및 위험 관리	0	1	2	3	4	5	6	7	8	9	10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11) 교통 및 운송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2)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도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도	중요도 낮음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중요도 높음						
(1) 수산물 생산	0	1	2	3	4	5	6	7	8	9	10
(2) 관광자원 제공	0	1	2	3	4	5	6	7	8	9	10
(3) 에너지 생산	0	1	2	3	4	5	6	7	8	9	10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0	1	2	3	4	5	6	7	8	9	10
(5) 오염 물질 정화	0	1	2	3	4	5	6	7	8	9	10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0	1	2	3	4	5	6	7	8	9	10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8) 기후 조절 기능	0	1	2	3	4	5	6	7	8	9	10
(9) 재해 및 위험 관리	0	1	2	3	4	5	6	7	8	9	10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11) 교통 및 운송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PART B. 부산의 주요 해양활동 간 갈등

주요 해양활동에 대한 설명

-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바다를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때로는 서로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양공간 정보를 분석해서 바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요를 조정하고, 갈등들을 최소화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이번 질문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 중 주로 어떤 활동들이 서로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갈등의 일어나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 활동	설명/사례
어업 활동	<p>우리 생활에 깊게 이용할 수 있는 수산물을 바다에서 잡거나 기르는 활동을 말한다.</p> 
공해-폐차광물 자원 채취	<p>공해-폐차광물 채취는 해저의 석유 및 지질구조에 존재하는 모래, 자갈, 석유 및 천연가스, 해수에 녹아있는 소금, 마그네슘, 금, 은 등을 채취하는 활동을 말한다.</p> 
신재생에너지 개발	<p>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해양의 바람, 파도, 조석, 열도, 온도차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활동을 말한다.</p> 
해양관광	<p>해양관광 활동은 해수욕, 바다낚시, 해양레저 활동, 야생동식물 관찰 등 바닷물에서 벗어나 해양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가 및 휴식 활동을 말한다.</p> 

주요 활동	설명/사례
환경·생태	<p>해양환경과 생태 보호 활동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 해양서식지 복원, 오염 관리 등을 말한다.</p> 
연구·교육	<p>연구 및 교육 활동은 바다를 대상으로 해양조사, 학술적 연구 등을 통해 얻는 정보와 지식과 관련한 활동과 바다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말한다.</p> 
항만·항행	<p>항만·항행활동은 항만의 개발, 유지, 운영하는 활동과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는 활동을 말한다.</p> 
군사활동	<p>군사 활동은 해상에 있는 국방·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과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p> 
안전관리	<p>안전관리는 해양 시설을 보호하고,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 등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p> 

Q08. 귀하께서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부산의 바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게 이용 2) 조금 적게 이용 3) 변화 없음 4) 조금 많이 이용 5) 매우 많이 이용

Q09. 부산의 바다를 이용하는 방식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복잡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단순해졌습니까?

- 1) 매우 단순해짐 2) 조금 단순해짐 3) 변화 없음 4) 조금 복잡해짐 5) 매우 복잡해짐

Q10. 아래의 표는 사람들이 바다를 이용하는 여러 활동을 중 몇 가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 활동은 다시 더 세부적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활동의 합이 100%가 되도록 세부 활동들의 중요한 정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업활동은 어선어업과 양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어선어업과 양식업이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각각 50%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구분	세부 활동	비율(%)
1) 여업활동	(1) 어선어업	%
	(2) 양식	%
	합계	100%
2) 에너지 개발	(1) 풍력 및 조류 등	%
	(2) 조력발전	%
	합계	100%
3) 해양관광	(1) 해안관광	%
	(2) 낚시·유람	%
	합계	100%
4) 환경생태	(1) 보육구역	%
	(2) 우수한 생태계	%
	합계	100%
5) 항만 유형	(1) 항만구역	%
	(2) 항로 등 항행구역	%
	합계	100%

Q11. 아래의 표는 해양을 이용·개발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활동들 중 어떤 활동들이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갈등이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표입니다. 각 활동 간의 갈등 정도를 1-5점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은 갈등이 없거나 낮은 경우이고, 5는 갈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뜻합니다.

예) 어업활동과 공채광물 채취 활동이 같은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질 때 갈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5점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1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양공간·용도	어업 활동	공채 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 생태	연구 교육	항만 항해	군사 활동
(A) 어업활동								
(B) 공채광물	() 점							
(C) 에너지개발	() 점	() 점						
(D) 해양관광	() 점	() 점	() 점					
(E) 환경생태	() 점	() 점	() 점	() 점				
(F) 연구교육	() 점	() 점	() 점	() 점	() 점			
(G) 항만항해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H) 군사활동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I) 연안관리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PART C. 해양공간계획제도 및 부산 해양공간관리 방향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바다를 이용 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해양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양공간계획제도는 다양한 해양공간 정보를 분석해서 주요한 해양활동별로 사전에 공간을 할당하는 것으로, 육상의 도시이용계획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해양활동별로 공간을 할당하면 해양공간을 더욱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는 해양공간계획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4월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앞으로 지자체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본 설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부산의 해양공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Q12. 귀하께서는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1) 모른다 2) 들어는 보았다 3) 내용을 알고 있다

Q13.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양공간계획제도가 해양공간의 다양한 활동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기여 못 함 2) 대체로 기여 못 함 3) 보통 4) 대체로 기여 5) 매우 기여

Q14. 다음은 해양공간계획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각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크해주시시오.

평가 항목	중요도				
	낮음	<<<	보통	>>>	높음
1) 해양공간계획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1	2	3	4	5
2) 행정 조직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행을 위한 조직 정비 등)	1	2	3	4	5
3) 해양공간정보(해양공간정보의 수집·가공·관리 등)	1	2	3	4	5
4) 법률 및 제도의 정비·시행 등 세부적인 규정 정비	1	2	3	4	5
5)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참여·주민 설명회, 지역협의회 등	1	2	3	4	5
6) 관련 계획·제도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1	2	3	4	5

Q19. 다음은 부산의 해양활동과 관련된 현안입니다. 이 중 해양공간관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항만 건설, 재개발 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추진
- 2) 낙동강 하구 보강과 지역 개발 간의 갈등
- 3) 해양레저활동 공간 확대
- 4)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관련한 갈등
- 5) 바다목장,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 조성 확대

Q19-1. 이외에 부산의 해양활동과 관련된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20. 귀하께서 Q19에서 부산의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1) 갈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
- 2) 바다 환경이나 생태계에 변화를 줄 우려가 있음
- 3) 이용 및 개발 수요가 집중
- 4)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 사항
- 5) 기타

PART D. 응답자 특성 문항

DQ1. 귀하께서는 부산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하십니까?

- 1) 5년 미만
- 2) 5-10년 미만
- 3) 10-20년 미만
- 4) 20-30년 미만
- 5) 30년 이상

DQ2. 귀하의 직업을 무엇입니까?

- 1) 농업/양업/어업
- 2) 자영업
- 3) 판매/영업/서비스직
- 4) 기술/숙련직
- 5) 생산/노무직
- 6) 사무직
- 7) 전문/자유직
- 8) 가정주부
- 9) 학생
- 10) 무직/퇴직
- 11) 기타

DQ3.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재학 포함)

- 1) 중졸 이하
- 2) 고졸
- 3) 대졸
- 4) 대학원 졸업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 부산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부록표 3-1〉 2019년도 부산 지역협의회 위원

(기준 : 2019년 12월)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분야	추천기관
1	민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수산	부산시
2	민	강신현	의창수협	지도상무	수산	부산시
3	민	김종열	부산시수협	지도상무	수산	부산시
4	관	박진서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수산자원팀장	수산(수산자원)	부산시
5	관	이대인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연구사	환경(해역이용평가)	부산시
6	관	이국진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해양환경팀장	환경(해양환경)	부산시
7	민	이영근	바다살리기국민운동 부산본부	본부장	환경(보전)	부산시
8	민	최상순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	지부장	해양관광	부산시
9	학	양위주	부경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소장	해양관광	부산시
10	학	김철우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사업단장	해양관광(레저)	부산시
11	관	김종한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과	해양레저관광 팀장	관광레저(해양레저)	부산시
12	연	임학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안전(연안관리)	부산시
13	연	김응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안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해양안전	부산시
14	학	이한석	해양대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	개발(해양건축)	부산시
15	학	안용희	해양대 해양공간건축학부	부교수	개발(해양건축)	부산시
16	연	김경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계획(도시계획)	부산시
17	연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계획(해양계획)	부산시
18	연	지창환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계획(해양공학)	부산시
19	관	박창률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	연안개발팀장	관리(연안관리)	부산시
20	관	나은영	사하구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계장	관리(연안관리)	부산시
21	관	전대수	강서구 해양수산과	연안개발계장	관리(연안관리)	부산시
22	군	이정우	53사단	해안작전장교	국방	부산시
23	군	김희철	해군작전사령부	군사시설보호 담당	국방	부산시
24	산	연정흠	부산항만공사	물류연구부장	해운항만	부산시
25	연	황태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산본부 에너지환경센터	센터장	에너지	부산시
26	관	강동수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산업과	클린에너지 보급팀장	에너지	부산시
27	산	석종민	부산테크노파크	과장	에너지(해상풍력)	에너지공단
28	산	신봉철	효천산업(주)	대표이사	골재	골재협회

부록 4 : 부산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1)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업무협의회('18.4.17~18.)

□ 개요

○ 부산광역시 업무협의회

- 일자 및 장소 : 2018.4.17., 부산광역시 수산자원과
- 참석자 : 부산광역시(수산자원과,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협회

○ 경상남도 업무협의회

- 일자 및 장소 : 2018.4.18.,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 참석자 : 경상남도(해양수산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협회

□ 주요 내용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부산광역시)

- 국가 차원의 기존 규제도 많은 상황에서 해양공간계획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될 우려
- 연안관리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해양공간계획제도 역시 유사한 문제를 낳을 수 있음
- 해양공간계획법이 특별법으로서 타법에 우선하는 지위를 갖지 않는 한 다양한 해양공간 이용행위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법적 근거로서 한계 우려

○ 지자체별 해양공간계획 관련 주관 업무부서 지정 필요(부산광역시)

- 해양수산 관련 다양한 하위분야들이 있으므로 지자체별 해양공간계획 관련 주무부서 지정 필요. 부산시의 경우 해양산업과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 주도 하의 계획 수립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하나, 지역별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별 정책기획실 주도로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권한 강화 필요

○ 해상경계 미비로 인해 계획 수립 시 지자체 간 갈등 우려(부산광역시, 경상남도)

- 지자체 간 해상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채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경우 큰 갈등 발생 우려. 해양공간계획법에서 필요 시 지자체 간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임(부산광역시)

- 지자체 간 해상경계 문제가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해상경계 문제는 결국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이므로 지역 협의체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에 기반하여 조정해야 하며, 공동조업구역 등 동일 용도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됨(경상남도)
- 해양공간관리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근거 마련 필요(경상남도)
 - 향후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해 용도구역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제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련부서 또는 다양한 해양 공간 이용자들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 목적 및 효용성을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함.

〈부록그림 4-1〉 경상남도 해양수산물 업무협의회(18.4.18)



2)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협의회(18.5.18.)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8. 5.18. / 부산역 대회의실(509호)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부산시(수산자원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과, 클린에너지추진단), 경상남도(해양수산물, 항만정책과),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과학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해양수산물환경과, 항만물류과), 부산발전연구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연구진(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올포랜드, 한국연안협회, 삼우소프트) 등

□ 주요 내용

○ 해양공간특성평가 및 갈등 조정 방법 등 질의·응답

- (질의 ①)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개발 사업 시행 가능 여부
- (답변) 항만·항행구역으로 설정되더라도 항만·항행구역에 해당하는 활동만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에너지개발구역)와 같이 해양공간의 특정 보존·이용·개발 시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을 통해 사업적합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추진
- (질의 ②) 해양공간특성평가 항목 변경 또는 대체 가능 여부
- (답변) 해양공간특성평가 방법 및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평가항목은 개별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가능
- (질의 ③) 해양공간의 기능 및 용도의 상충 조정 수단의 실효성 여부
- (답변) 상충 분석을 위해 생태계 기반 해양공간분석기술을 개발 중이며, 다양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지역협의회를 통해 조정하는 등 다양한 조정 기제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강화

○ 지역협의회 구성 관련

-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므로, 지역에서 추천한 인력과 우리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력풀을 공유하여 선정

○ 해양공간 정보 수집 및 관리 관련

- 해양용도구역 지정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이 중요하고, 수집된 정보의 표준화, 수집경로, 정확성, 정밀도 등 입체적 관리가 필요

〈부록그림 4-2〉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협의회('18.5.18)



3)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18.8.10.)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10 / 부산 크라운하버호텔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부산광역시(사하구 도시정비과, 강서구 해양수산과), 경상남도(창원시 수산과, 통영시 해양관리과, 사천시 해양수산과, 고성군 해양수산과, 남해군 해양수산과), 부산광역시 수협, 대형기저조합, 바다살리기국민운동 부산본부,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 한국해양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진해수협, 남해수협, 경남어류양식협회, 한국자율관리어업 경남연합회,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남동해수산연구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연안협회, 올포랜드, 삼우이머션) 등
- 주요 내용
 - 과학적인 정보 외에 지역어민 등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 필요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확고한 정책의지, 명확한 권한과 책임에 따른 제도 집행 및 용도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평가 필요
 - 9개 용도구역에 대해 '지역', '지구' 등 하위 세부 Zone을 지정하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별도 지정 필요. 또한, 해양경관 및 해양문화 보호를 위해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외에 '문화구역'을 추가하고 행위제한을 명시
 - 해양공간계획 수립 후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소요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추진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작성
 - 정부부처 간 해양공간 수요 조정 및 이익단체 간 갈등 조정이 해양공간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
 -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합의하기 위해 지역협의회 등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하며 계획 수립에 활용된 데이터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함
 - 낚시는 대표적인 해양레저활동의 하나로 어업활동과 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유어선협의회 등 낚시 관련 이해관계자를 지역협의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

〈부록그림 4-3〉 부산경남지역 제2차 사전협의회('18.8.10.)



4)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18.11.1.)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1.1 / 부산·경남 일부해역
- 참석자(총 16명) : 해양수산부(4명), 부산광역시(4명), 경상남도(3명), 해양환경공단(2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2명), (사)한국연안협회(1명)

○ 주요 일정

-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현안 소개
-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시설 및 해양환경조사연구원 건축현장 점검
- 현장답사* : 수산양식시설 밀집 해역(통영 부근), 외해 가두리양식 해역(거제도 부근), 선박운항 및 묘박(가덕도 서측 및 묘박지), 신항만 예정지역 등

*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선 아라미2호 이용

□ 부산·경남 해역 해양공간관리 주요 현안

○ 부산해역 주요 현안

- 부산항 신항(강서구 일원 및 경남 창원시 해역) 항만시설 용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진행 중
- 낙동강 하구에 다양한 보호구역 및 레저활동, 지역개발 수요 집중으로 이용·개발-보전 간 갈등 증가 추세

- 낙동강 하구는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특별관리해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다대포해수욕장 개발, 해안도로 및 교량 건설, 항만 개발 등 지역개발 수요가 집중
- 최근에는 수상 레포츠, 드론, 낚시, 사진 촬영 등 철새 서식에 위협이 되는 레저 활동 증가 추세
- 해운대를 중심으로 요트, 카누 등 체험형 해양레저활동 증가로 기존 해역이용행위와 상충 및 해양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 기장군~해운대 해안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어업, 해양관광 등 기존 해양이용 행위와 갈등 심화 우려
 - 남부발전(주)이 기장에서 해운대에 이르는 해역을 대상으로 총 108기, 54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
 - 대상 해역은 어항 및 어업권이 집중된 해역으로, 기장군 등 인근 지역 어민들이 어업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반대
 - 또한 동 해역은 해양경관을 기반으로 한 관광 수요 및 지역개발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 크루즈 관광 거점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연계사업의 확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관광단지 조성
 - 크루즈 관광 거점화를 위한 연안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전용항 및 고급 해양레포츠 활동을 위한 마리나항만 개발 등 인프라 구축
-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과 군락 단지 조성사업 추진
 - 기장군을 중심으로 연안 바다의 특성에 따른 해저 군락지 개발, 어류 특화 군집지, 어장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현장답사 지역 주요 현황

〈부록그림 4-4〉 현장답사 코스



- ① 부산항 ② 오륙도(해양보호구역, 군사지역) ③ 광안대교(해수욕장, 마리나항만) ④ 가덕도(신항만 건설 예정지역), ⑤통영 ~ 거제(수산양식시설 밀집해역) ⑥ 부산 남외항(선박 운항 및 묘박지)

○ 오륙도 및 주변해역

- 오륙도는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 등 6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28,189㎡임
- 육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이용가능무인도서로, 해역은 문화재보호구역 및 해양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 오륙도 및 주변해역(총 0.35km²)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안의 수직암반 생물상 보호 및 주변 육역의 개발압력에 따른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3-98호(2003.12.31.))
- 해중경관지구 지정 수요, 주변 해역 유람선 운항

〈부록그림 4-5〉 오륙도 전경(좌) 및 해양보호구역 지정 지역(우)



○ 광안대교 주변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

- 수영강 하구 해역에는 육지와 광안대교 사이에 위치한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항, 광안대교 동측의 수영요트계류장 등 다양한 구조물과 이용 행위가 집중
- 부산지역에 지정된 마리나항만은 총 6개소로 이 중 수영만 마리나항 1개소를 제외한 5개소는 미개발 상태로 마리나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이 필요
- 부산수영요트계류장은 이용선박의 수와 크기 증가로 기존 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공유수면매립을 추진 중

〈부록그림 4-6〉 광안대교 전경(좌) 및 수영만요트경기장지구(우)



○ 가덕도 북측 신항만 건설 예정지

- 부산항 신항은 강서구 일원과 경남 창원시 해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항만시설 용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진행 중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20년까지 개발 원료 예정이며, 총 사업 규모는 부두 45선석, 뱃파제 3.89km, 호안 40.3km, 도로 37.7km, 철도53.5km, 부지조성 11백만㎡, 준설 1식, 유류중계기지 및 수리조선 1식임

〈부록그림 4-7〉 가덕도 북측 신항만 건설 예정지 현황 및 계획도



○ 통영~거제 및 낙동강 하구 주변해역 양식 해역

- 고성군-통영시-거제시 사이에 위치한 진동만은 해역 대부분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양식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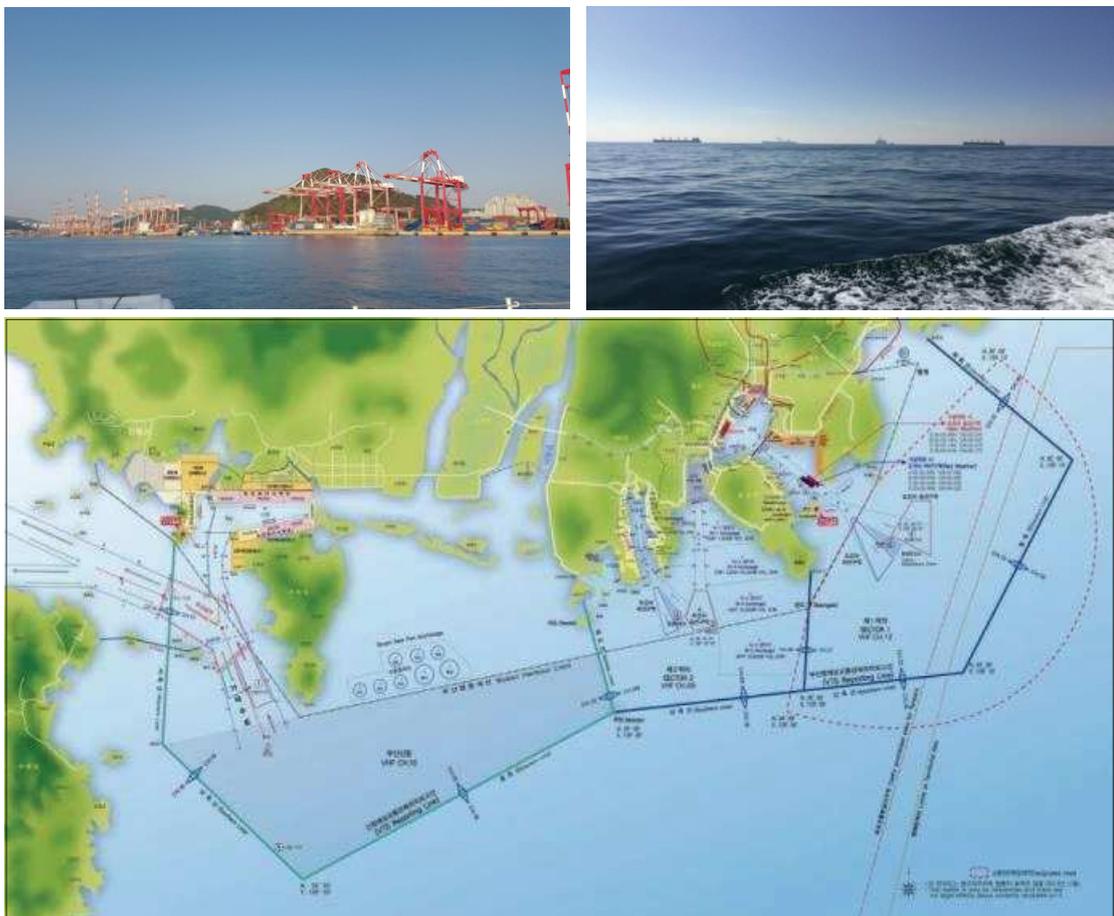
〈부록그림 4-8〉 진동만 해역 전경



○ 부산 남외항 선박 운항·묘박 해역(영도 서편)

- 부산항 항만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선박들이 부두 접안을 위해 대기하는 해역과 지정항로가 집중
- 특히 영도와 감천항 사이에 위치하는 남외항에는 좁은 해역에 항로와 묘박지가 집중

〈부록그림 4-9〉 부산 남외항 선박 운항·묘박 해역



〈부록그림 4-10〉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



5)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8.11.30.)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8.11.30., 부산 아스티 호텔 소연회장
- 참석자 : 해양생태과, 부산 지자체 해양공간·자원의 이용·개발 또는 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 참여연구진 등
- (목적)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마련과 관련하여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및 해양용도구역(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협의회 개최
- 주요 내용
 - '18년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추진 현황
 - 해양공간특성평가 및 해양용도구역(안) 검토 및 논의

□ 지역협의회 주요 논의 사항

- ① (수산) 인공어초 지역과 어족자원의 산란장 등과 관련하여서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필요
 - 특히 낚시활동이 행해지는 인공어초 투하지역은 해양관광구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해상풍력단지는 반영하면 안 됨
 - ☞ 인공어초 지역 중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공간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반영, 인공어초 투하 지역 중 어업활동, 낚시활동이 양립하는 공간은 현재 수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 ② (해상풍력) 향후 해상풍력단지 조성 시 송전케이블이 지나가는 곳에 대한 용도구역 지정 또는 우선순위 등 고려 필요
 - ☞ 해상풍력단지 관련 계획의 수요 반영 여부의 결정에 따라 발전 관련 기반 시설은 해양용도구역(안전관리구역 혹은 해양에너지구역)으로 반영 가능
- ③ (환경)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타 용도와 공존 가능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배타적으로 지정 필요
 - ☞ 낙동강 하구 연안·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관리 수준이 높은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를 반영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반영

- ④ (격자크기 및 가중치) 용도구역별, 해역별로 평가에 사용하는 격자 크기를 차등적용하고, 필요시 평가항목별로 가중치 반영 필요
- ☞ 해양공간특성평가 시 해양활동과 물리환경 특성에 따라 가변 격자 활용과 가중치 반영은 평가지침에 반영
- ⑤ (홍보확대 등) 제도시행 전 「해양공간계획법」에 대한 설명과 제도의 필요성 등 지자체 홍보 확대 필요
- 또한 태종대, 수영 등에서 운영하는 유람선 항로와 이기대공원 등 둘레길 전면 해양을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필요
 - 다음 협의회 시 해역별 세부지도(1:25,000 축척) 제공 요청
 - ☞ 향후 부산시에 해당하는 연안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예정

6)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설명회('19.5.14.)

□ 개요

- 일자 및 장소: '19.5.14., KMI 1층 대회의실
- 참석자: 해수부, 부산청, 부산시 및 시·군·구(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등) 관련 업무 담당자, 해양공간 이용 관련 이해관계자, KMI 등
- (목적) 해양공간계획체제 제도 설명 및 의견청취, '19년 해양공간계획(안) 수립계획, 부산해역 현안사항 논의, 자료 협조사항 등
- 주요 내용
 -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규제 및 행위 제한 여부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범위
 - 해양공간계획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수급 등
 -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 설명회 주요 논의 사항

- ①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규제 및 행위 제한 여부) 해양공간계획은 해양 관련 계획과 해양공간 계획의 전반적인 부합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해양의 이용·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행위에 관한 사안은 관련 개별법에 따름

- ②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범위) 시행령 별표 1의 48개 국가계획을 대상으로 함
 - 법 제정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은 적합성협의 대상에서 제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역시 대상계획에 미포함
 - 실시계획 승인 전에 적합성협의 절차를 추진해야하며, 해양공간계획은 에너지 개발이 등의 적절한 입지를 선정하는 제도가 아님
 - 항만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며, 적합성협의 요청 주체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임
 - 현재 부산시는 부유식해상풍력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이며,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 계획 수립 예정

- ③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인력수급 등
 - 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 지자체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 사례가 적음
 - 해양공간관리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지자체에 이관할 경우 지자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④ 해역이용 협의 등 관련 제도와 해양공간계획과의 관계
 - 해역이용협의 시 해양공간계획법 상 용도구역 반영 여부 논의
 - 해역이용협의와 적합성협이는 별도로 추진

- ⑤ 미지정 해역 관련
 - 해양용도구역관리지침에는 일반적인 개별 구역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미지정 해역에서 이용·개발을 제한한 것은 아님

- ⑥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 5월 중에 광역시에서 지역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예정
 - 지역협의회 의원 추천 시 분야별 형평 및 대표성 등을 고려 필요

7) 2019년 제1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8.6.)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9.8.6.,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1
- 참석자 : 부산 해양공간지역협의회 위원(28명 중 21명 참석, 7명 불참), 해수부, 부산시 및 군·구 관련 업무 담당자, KMI, KIOST, KOEM 등 52명
- (목적) 부산 해양공간계획 수립현황 설명, 의견수렴 등
- 주요 내용
 - 부산해역 해양공간관리 현안 논의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용도구역 지정의 적절성 검토 및 상충문제 논의

□ 지역협의회 주요 논의 사항

① 수산 관련

- 해양공간계획이 국토를 보전하는 방안이 되어야 함
- 현재 부산의 수산 현황은 어려운 상태이며, 어업인들이 해당 문제를 많이 고민
-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

② 골재·광물자원 관련

- 부산시 관내의 경우,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없음
- 현재 단계적으로 바다모래 채취를 줄여가는 추세
-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바다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구역을 개발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음

③ 해양에너지 개발 관련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경우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어려움
- 해상풍력의 경우, 지역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며, 지역수용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해당 사업 계획이 해양공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협의 절차 후에 개발사업 구역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변경 혹은 지정 가능

④ 해양관광 관련

- 가덕도 서쪽과 동쪽해역 일부를 해양관광구역으로 편입시킬 필요
- 해안누리길은 육상에 존재하며, 해안누리길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주변 해양공간을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
- 해안선 인접한 해양공간과 이용·개발이 많은 항만 등은 대축척 지도로 제작할 필요
- 향후 미래 수요를 공간계획에 담기 위한 별도의 연구와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러한 수요 중 사업이 구체화된 경우, 즉 사업의 규모와 위치가 명확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반영함. 예를 들면 해운대 운촌 마리나항만 개발구역은 해양관광구역으로 반영
- 해양관광과 마을어장 두 개의 공간이 상충되는 부분은 해수욕장의 경우 주변에 500미터 버퍼를 두고 해양관광구역을 지정
- 해양관광 관련, 육상과 해상을 연계시키는 부분도 중요함. 마리나항만 주변과 묶어서 해양관광구역으로 연동시키는 것도 고려

⑤ 환경 및 생태계보호 관련

- 해양공간특성 확인 시 자연, 인문적인 부분, 법정조사, 각 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며, 가용 가능한 데이터를 모두 활용.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나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
-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지자체의 계획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더 꼼꼼히 검토할 필요

⑥ 연구 및 교육 관련

- 영도와 감만 사이에 연구교육보전구역이 하나 더 있으므로 추가 필요

⑦ 항만·항행 관련

- 부산은 항계가 넓으므로 항만항행이 우선 지정되는 경우가 많음. 김양식장 등 항계 내에서 항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항로가 아니라면 어업활동이 우선할 수 있도록 수정 반영

⑧ 안전관리 관련

- 현재 부산의 안전관리구역은 위험이 예상되는 공간 위주로 지정. 자연재해 혹은 침식의 위험이 높은 공간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반영 예정

⑨ 미지정 해역 관련

- 기본적으로 용도구역 지정하지 않은 구역은 특정 활동의 빈도가 많지 않아 지정하지 않은 것. 용도가 미지정된 구역에 다른 활동이나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적합성협의를 거쳐서 가능

⑩ 해양공간계획체제 관련

- 실제적인 해역이용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보았더니, 해역이용은 계속적인 증가추세이며 부산만 하더라도 많게는 170건임
- 해양공간계획과 관련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업무 담당자 인력 증원 추진
-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는 해양수산정보공동플랫폼을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 중

8) 2019년 제2차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9.)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9.9.4., KOEM 해양환경조사연구원 1층 회의실
- 참석자 : 부산 해양공간지역협의회 위원(28명 중 21명 참석, 7명 불참), 해수부, 부산시 및 군·구 관련 업무 담당자, KMI, KIOST, KOEM 등 52명
- (목적) 부산해역 해양공간관리 현안 논의를 통한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의 검토, 용도구역 지정의 적절성 검토 및 상충문제 논의 등
- 주요 내용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검토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용도구역 지정의 적절성 검토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용도구역 상충문제 논의

9)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관련 공청회 개최('19.10.)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9.10.16., KOEM 해양환경교육원 1층 대강당
- 참석자 : 해수부, 부산시 및 군·구 관련 업무 담당자, KMI, KIOST, KOEM, 사업시행자, 전문가패널 및 지역주민 등
- (목적)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주요 내용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검토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용도구역 및 관리구역에 대한 의견수렴

부록 5 : 공청회 결과

□ 공청회 개요

- 회의명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관련 공청회 개최
- 일자 및 장소 : '19.10.16., KOEM 해양환경교육원 1층 대강당
- 참석자 : 해수부, 부산시 및 군·구 관련 업무 담당자, KMI, KIOST, KOEM, 사업시행자, 전문가패널 및 지역주민 등
- (목적)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주요 내용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검토
 -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용도구역 및 관리구역에 대한 의견수렴

□ 공청회 의견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1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해양수산팀)	○ 어업활동보호구역(관내 해조류·복합양식장 및 마을어장 : 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구역)이 다른 용도의 구역과 겹치지 않도록 추진 요청 ※참고1 : 공문 의견 제출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70133(2019.10.8.)	○ 해운대구 해양공간의 11건 어업면허구역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기 반영	수용
2	해운대구 관광문화과 (해양관광팀)	○ 해운대구의 해안선은 수영2호교~송정천으로 17.16km으로 육역에서 해역방향으로 1km 전면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필요 ※참고2 : 공문 의견 제출 해운대구 관광문화과-21640(2019.10.8.)	○ 해안선에서 1km 전면은 대부분 마을어장으로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안선에 인접하여 지정된 해양관광구역(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등) 외 공간을 일률적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	미수용
3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 현재 한일어업협정 미타결로 인한 연근해 어업인 피해가 큰 상황이며, 개발행위에 따른 서식·산란지 파괴가 지속되어 어획량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 따라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어업인들의 의견 반영 및 협의 진행이 중요함 ○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나 우리나라는 사업자의 입지선정이 선행되어 협의절차가 미흡함	○ 동 계획에서 해양용도구역 지정은 계획의 구체성, 지역수용성 확보 등을 고려함. 부산 경남의 경우, 해상풍력 개발 수요는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규모, 위치 등이 확정되지 않고, 지역 수용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미반영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협의회(수산분야 4명 포함) 2차례 개최 등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한 협의 절차와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음.	수용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4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사업처 장광수	<p>※참고3 : 공문 의견 제출 서남(초본)-00668(2019.1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계획(안)은 기존 법정구역을 단순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제도의 필요성이 모호함. 해상구역 관리/개발 및 어업자원 보호 등을 위한 실질적 제도라기보다는 행정적 관리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 것으로 이해됨. ○ 현재 에너지 관련 사업자들은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없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상에서도 에너지개발구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듯이 해양에서도 관련 구역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의 에너지개발구역은 정부의 개입에 따라 주민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점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점이 우려스러움. <p>※참고4 : 이메일 의견 제출(2019.1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계획은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임 ○ 이를 위하여 9개 해양용도구역을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토대로 결정함. ○ 참고로, 동 제도는 육상의 국토이용계획체제와 유사하나 해양공간의 이용방식은 토지의 이용방식과 달라 법률 제정 시 관리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9개 해양용도를 중심으로 용도구역체계를 마련하였음. 	동 계획(안)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내용
5	한국풍력산업 윤의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의 효율적 관리와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 ○ 다만, 한시적 허가를 내주는 광업권이나 해상풍력이 해양공간계획에 포함될 경우 주민보상이나 합의 없이 정부가 에너지 개발을 강제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통해 갈등을 단기간 내 해소하기는 어려우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개발사업자가 계획과 관련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자는 별도의 절차가 추가되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주장하지만, 용도구역을 지정해 놓음으로써 	동 계획(안)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내용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 또한 사업자 측면에서는 개별법으로 전기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군전파영향평가, 어업피해보상 등 각 부처의 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간계획수립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p> <p>- 따라서 한시적인 허가를 주는 광업권과 해상풍력(20년)을 Negative규제 방식으로 바꾸어 최종주민동의를 얻어 개별법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만 해양공간계획에 포함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p> <p>※참고5 : 이메일 의견 제출(2019.10.17.)</p>	<p>이용·개발 가능공간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사전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일 수 있음.</p> <p>- 아울러 사업자는 「해양공간적합성협약」을 통해 추진하려는 해양이용·개발계획이 해양공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용·개발주체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p> <p>-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갈등이 제도적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점차 해소되어 갈 것으로 예상</p> <p>○ 현재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은 권한 설정 여부, 계획의 구체성, 지역수용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반영토록 되어 있음.</p>	
6	(주)지윈드스카이 이용우	<p>○ 해기 청사포 해상풍력(40MW)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요청</p> <p>- 본 사업은 2020년 착공예정이며 현재 사업 불가나 장기 표류 가능성은 없으며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다만, 청사포 해상풍력의 경우 에너지개발구역 금번</p>	<p>○ 동 계획(안)에 청사포 해상풍력은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미반영된 상황임</p> <p>- 에너지개발구역은 위치·규모·추진시기 등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인근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p> <p>- 제출한 자료 중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p>	미수용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미반영 시 향후 반영 방안 및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없이 사업 진행 가능 여부를 전달</p> <p>※참고6 : 공문 의견 제출 GWS-00182(2019.10.15.)</p>	<p>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공사계획인가와 관련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및 인근 어촌계와 수협 등과 협의가 진행 중인바, 현지점에서 용도구역으로 반영하기 어려움.</p> <p>○ 현 상황에서 사업을 위한 향후 절차는 개별 법률에 따른 협의 및 평가 완료 후,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을 거쳐 해양용도구역 변경 등을 통해 가능</p>	
7	해운대구 건설과(연안개발팀)	<p>○ 해운대해수욕장-미포-청사포-송정해수욕장까지 연안구간에 전망대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양빈, 잠제, 돌제 설치를 위한 연안보전사업과 방파제 설치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중</p> <p>○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p> <p>※참고7 : 공문 의견 제출 해운대구 건설과-18904(2019.10.16.)</p>	<p>○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공간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음.</p> <p>○ 사업추진 주체는 동 사업 준비 시, 해당 해양공간의 활동·영향과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합성협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p>	-
8	전국연안 어업인연합회	<p>○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을 위한 “해양용도구역” 지정이 어업인을 위한 것인지</p>	<p>○ 해양공간통합관리의 목적은 생태친화적 정책방향 설정 및 어업인 등 우리나라민이 해양공간을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개발 및 보전 하는 것임</p> <p>- 그간 바다는 공유재로 선점식 해양활동이 많았음, 이에 해양의 특성을 고려한 합의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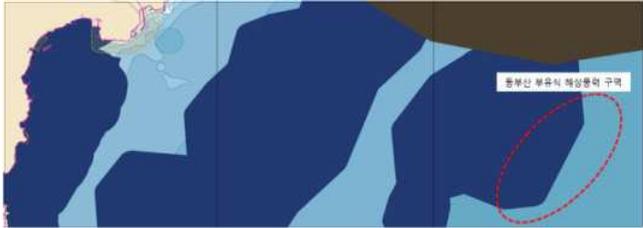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어업활동보호구역”을 70% 이상을 지정	○ 부산·경남 해역은 관할해역이 좁은데 비해 어업의 의존도 높음을 고려, '18년 초안을 마련하고, 수차례 지역협의회를 통해 어업활동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 하였음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수립 이후 시·도지사가 변경 추진가능 하므로 수요에 따라 변경 및 추가 지정 등 유연하게 대응 가능	
		○ 해양용도구역(안)에서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배제	○ 본 제도시행에 따른 부산·경남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는 새로이 지정된 골재·광물자원 구역은 없으며 , - 기 시행된 골재채취법, 광업법에 의해 지정 운영 중인 구역만 의제처리 된 사항임 - 또한, 남해 EEZ 바다골재채취단지에 따른 구역의 경우 지정기간 만료 시('20.8) 용도구역 유지·변경 검토 후 조치 하도록 관리계획(안)에 명시	
		○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재구성 요청	○ 지역협의회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9개 용도구역별 관계자를 골고루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부산 지역협의회는 부산시에서 소속 시·군, 수협중앙회,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협회 등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으며, 지역협의회 민간위원 8명 중 수협 관계자를 3명 포함하여 오히려 어업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p> <p>○ 공간계획 수립 과정 및 최초 수립 이후에도 지역협의회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협의회 위원 추가 등을 부산시와 협의하겠음</p>	
		○ “해상풍력발전” 바다 설치 반대	<p>○ 해양공간계획은 특정 <u>개발행위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u></p> <p>○ 현재 부산과 경남의 <u>공간계획(안)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이 미반영되어 있음</u></p>	
		<p>※참고8 : 공문 의견 제출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사무국-55(2019.10.18.)</p>		

부록 6 : 관계기관 의견조회('19.10.16.~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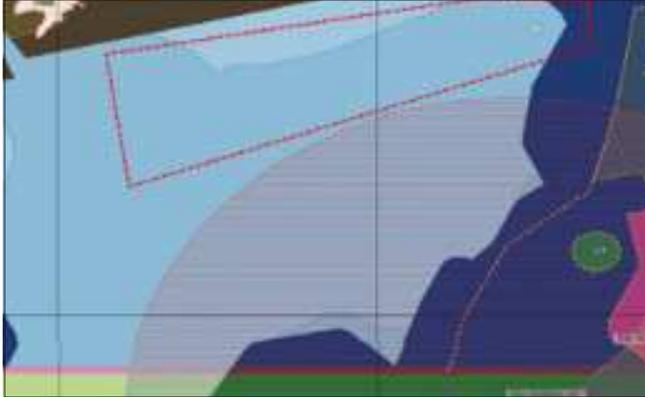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 리 경제 과	○ 해운대구 마을어업 면적 미반영 - 관리계획(안) 26p <표 2-11> 부산연안 면허어업현황(면적)중 해운대구 마을어업 0.0ha를 마을어업 172.2ha으로, 합계 88.8ha를 합계 261ha로 변경 필요 (해당수치 변경으로 전체 합계 및 비율 수정 필요)	○ 반영	수용
2	해군작전사령부	○ 해양공간기본계획 부산 근해 군사활동구역 자료 통보	○ 기 반영 자료와 동일 여부 검토 후 반영함 - R-72, R-99, R-100 구역, 진해군항은 기 반영 자료와 동일하며, 부산 기지 검토 후 반영함	수용	
3	한국수산자원공단 자원관리본부 자원관리팀	○ 부산경남 인근EEZ에서, “영해 내측의 경우, 멸치 어획 량이 높으며, 영해 외측의 경우 붕장어, 고등어(이하 생 략)”->“영해 내측의 경우, 멸치, 붕장어, 갈치 어획량이 높으며, 영해 외측의 경우 고등어(이하 생략)”으로 수정 - 보고서 P.20 <그림 2-9> 참조	○ 반영	수용	
4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 에너지개발구역 중첩 지정 <사유> - 해양공간에 대한 위치정보, 규모, 용도 등 구체적 개 발 계획 마련됨 - 개발계획이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부합됨 - 주민수용성 확보로 사회적 갈등이 작을 것으로 예측됨 (※붙임자료 참고)	○ 에너지개발구역 중첩 지정 불가 -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해역이용협의 등)가 진행 중이며, 지역주 민 수용성 및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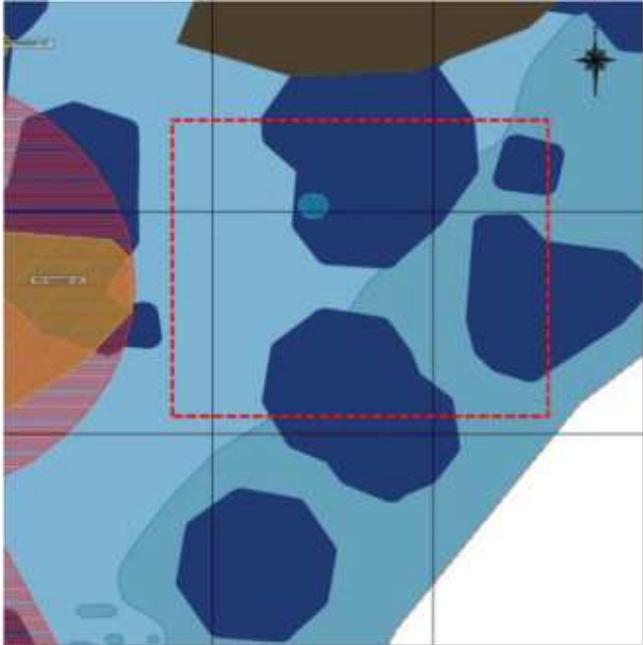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신재생에너지정책(3020: '30년 재생에너지 전력 20%)에 부응한 부산시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및 해양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시스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따라 '50년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50% 달성을 위한 해양 구역 ▶ 해운대 청사포 고정식 해상풍력 개발구역 ▶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구역 ▶ 해당구역: NI52-02-29(FH520229-01, EC-520229-0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개발구역 	○ 에너지개발구역 중첩 지정 불가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사유〉 : 동부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개발잠재 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신재생에너지정책(3020: '30년 재생에너지 전력 20%)에 부응한 부산시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및 해양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시스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따라 '50년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50% 달성을 위한 해양 구역 ▷ 동부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개발 잠재 구역으로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중첩 지정되어야 함 ▷ 해당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개발구역은 개발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 여부, 인근 주민·어업인 등 수용성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 - 해양에너지 개발사업(동부산 부유식 해상풍력, 서부산 해상태양광, 청사포 부유식 해상풍력, 서부산 고정식 해상풍력, 서부산 부유식 해상풍력)은 구상 단계로 사업의 규모, 위치, 시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동 제도에서 단지 개발 잠재 수요만을 가지고 용도 구역으로 구획할 수 없음. - 아울러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은 기존 활동, 용도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용도구역 지정 시 수용성 확보 여부 고려 예정 <p>※ 이하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동일</p>	
6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 에너지개발구역 <사유> : 서부산 해상태양광 개발 잠재 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신재생에너지정책(3020: '30년 재생에너지 전력 20%)에 부응한 부산시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및 해양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시스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따라 '50년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50% 달성을 위한 해양 구역 ▶ 가덕도 서쪽 해상 일원 해상태양광발전 개발 잠재 구역으로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중첩 지정되어야 함 ▶ 해당구역 		
7		<p>• 에너지개발구역 <사유> :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잠재 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신재생에너지정책(3020: '30년 재생에너지 전력 20%)에 부응한 부산시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및 해양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시스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따라 '50년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50% 달성을 위한 해양 구역 ▶ 청사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개발 잠재 구역으로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중첩 지정되어야 함 ▶ 해당구역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8		<p>• 에너지개발구역 <사유> : 서부산 고정식 해상풍력 개발 잠재 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신재생에너지정책(3020: '30년 재생에너지 전력 20%)에 부응한 부산시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및 해양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시스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따라 '50년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50% 달성을 위한 해양 구역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산권 고정식 해상풍력발전 개발 잠재 구역으로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중첩 지정되어야 함 ▷ 해당구역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개발구역 <p>〈사유〉</p> <p>: 서부산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잠재 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신재생에너지정책(3020: '30년 재생에너지 전력 20%)에 부응한 부산시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 및 해양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시스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따라 '50년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50% 달성을 위한 해양 구역 ▷ 나무섬 우측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개발 잠재 구역으로서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중첩 지정되어야 함 		

번호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 해당구역</p> 		
10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	<p>112쪽 : 어업활동보호구역(안) 추가 지정</p> <p>- (의창수협) 부산항 신항건설로 인하여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된 어업인들이 가덕도 인근 연안에서 소형 선박으로 어업활동을 영위 중이므로 가덕도 연안은 어업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함</p>	<p>○ 가덕도 인근 마을어장이 분포하고 있는 공간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기 지정</p> <p>- 관련 용도구역의 지정기준과 법적 권한 등을 고려하여 지정. 소형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공간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불가</p>	미수용